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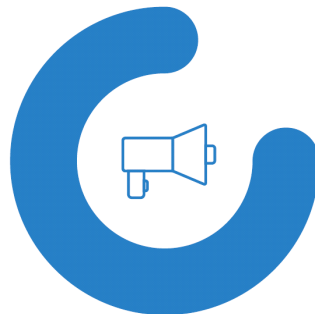
2020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시정권고 사례집



국민과 언론의 귀와 눈이 되는
언론중재위원회



2020

시정권고 사례집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 ✓ 본 사례집은 2020년도 한 해 동안 2,631개 매체를 대상으로 심의한 시정권고 결정현황 및 사례를 수록함
- ✓ 주요 시정권고 사례로 법익침해 유형별 시의성·대표성이 높은 총 30건의 사례를 선정해 「**시정권고 심의기준**」에 규정된 조항 순에 따라 수록함
- ✓ 시정권고 전체 목록은 전체 결정건을 의결번호 순으로 수록하되,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이 2건 이상 연속된 경우, 첫 건에 한해 권고이유를 포함한 결정내용을 표시하고 나머지 건은 별도 목록표로 요약함
- ✓ 수록 사례에 개인정보·단체명 등 특정 주체에 관한 정보 또는 기타 법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 유명인 또는 공적 인물에 관한 것이거나 이미 널리 알려진 내용 등을 제외하고는 식별 불가하도록 편집함
- ※ 본 사례집은 사례의 설명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원문 내용을 변조 없이 수록하였으므로 이용자가 이를 인용 또는 재가공하는 경우, 법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의 비식별 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차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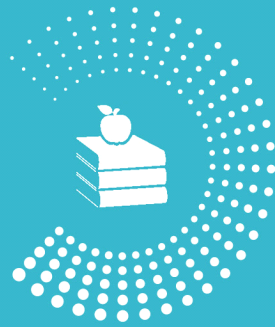
제1부	시정권고 현황	7
	시정권고 현황	9
	연도별 시정권고 현황	12
제2부	주요 시정권고 사례	15
	개인적 법익 침해	17
	제 1 장 사생활 침해 등	18
	사례 1. 제2020-71호	18
	사례 2. 제2020-105호	20
	사례 3. 제2020-469호	22
	사례 4. 제2020-694호	24
	사례 5. 제2020-244호	26
	사례 6. 제2020-483호	28
	사례 7. 제2020-245호	29
	제 2 장 피의자, 피고인 신원공개	31
	사례 8. 제2020-428호	31
	제 3 장 고소·고발사건 보도	32
	사례 9. 제2020-875호	32
	제 4 장 성폭력피해자 보호 위반	34
	사례 10. 제2020-142호	34
	사례 11. 제2020-619호	36

사회적 법익 침해	39
제 1 장 보도 윤리 위반	40
사례 12. 제2020-144호	40
사례 13. 제2020-246호	42
제 2 장 차별 금지 위반	43
사례 14. 제2020-145호	43
사례 15. 제2020-146호	44
사례 16. 제2020-247호	45
제 3 장 음란·포악·잔인 범죄 묘사	46
사례 17. 제2020-497호	46
제 4 장 성관련 보도	47
사례 18. 제2020-38호	47
사례 19. 제2020-500호	49
제 5 장 자살 보도	50
사례 20. 제2020-350호	50
사례 21. 제2020-447호	51
사례 22. 제2020-802호	53
제 6 장 마약·약물관련 보도	55
사례 23. 제2020-877호	55
제 7 장 폭력 묘사	57
사례 24. 제2020-534호	57
사례 25. 제2020-721호	59
제 8 장 충격·혐오감	61
사례 26. 제2020-636호	61
사례 27. 제2020-911호	63
제 9 장 여론조사 보도	65
사례 28. 제2020-544호	65
제10장 기사형 광고	66
사례 29. 제2020-394호	66
제11장 기사 제목	68
사례 30. 제2020-918호	68
제3부 시정권고 전체 목록	71
시정권고 전체 목록	73



제 1 부

시정권고 현황



시정권고 현황

시정권고소위원회는 2020년 한 해 동안 총 935건의 시정권고를 결정했다. 시정권고를 위한 심의 대상매체는 2,631개였으며 이 중 393개 매체를 대상으로 시정권고 결정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정권고 결정을 매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터넷 기반 매체인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에 대한 결정이 90.9%를 차지했던 반면 지면 및 방송 매체에 대한 결정은 9.1%에 그쳤다.

법익침해 유형별로는 '사생활 침해 등' 188건(20.1%), '기사형 광고' 157건(16.8%), '자살 보도' 112건(12.0%)의 순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은 유형은 '차별 금지' 110건(11.8%)으로 전년에 비해 12배 증가했는데 이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차별·경멸적 표현을 사용한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시정권고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시정권고 결정문 양식을 개선했다. 언론 환경이 인터넷 중심으로 이동한 점을 고려하고 시정권고 결정내용에 대한 언론사의 이해도를 보다 높이기 위해 결정문 상의 '권고사항'에 기사수정 등 권고하는 조치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1 침해 유형별 현황

935건의 시정권고 결정 중 개인적 법익 침해를 이유로 한 시정권고 결정건수는 240건, 사회적 법익 침해 보도에 대한 결정은 695건으로 사회적 법익 침해 유형이 개인적 법익 침해 유형의 3배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예년에 비해 개인적 법익 침해 유형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사생활 침해 등' 유형은 감소한 반면 '차별 금지' 및 '자살 관련 보도' 등을 이유로 한 시정권고가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개인적 법익 침해 유형 중에서는 '사생활 침해 등'이 188건(20.1%)으로 감소하긴 하였으나 여전히 가장 많았다. 주요 사례로는 공적 인물·유명인 등에 관해 보도하면서 사인(私人)인 가족의



초상 등을 공개한 보도, 사건·사고 소식을 전하면서 관련 인물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공개한 보도 등이 있었다. 다음으로는 ‘피의자·피고인 신원공개’ 28건(3.0%), ‘성폭력 가해자 범행수법 등 묘사’ 24건(2.6%)이었다.

사회적 법익 침해에서는 ‘기사형 광고’ 157건(16.8%), ‘자살 관련 보도’ 112건(12.0%), ‘차별 금지’ 110건(11.8%) 등의 순이었다. 이 중 ‘자살 관련 보도’ 사례로는 자살자의 신원 등을 공개하거나 유명인의 자살에 관해 보도하면서 독자로 하여금 자살을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해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포함한 사례 등이 있었다.

표 1 최근 3년간 침해 유형별 시정권고 현황

(2018. 1. 1. ~ 2020. 12. 31.)

연도	계	개인적 법익 침해										사회적 법익 침해										국가적 법익 침해	
		사생활 침해 등	명예 훼손	피의자 피고인 신원 공개	피해자 목격자 신원 공개	성폭력 피해자 신원 공개	성폭력 가해자 범행수법 등 묘사	이동 청소년의 보호	정신 질환자 신원 공개	북한 이탈 주민 신원 공개	보도 윤리	차별 금지	음란 포와 잔인 범죄 묘사	범죄 수법 상세 묘사	성 관련 보도	자살 관련 보도	미약 및 약물 보도	폭력 묘사	충격 혐오감	여론 조사 보도	기사형 광고		기사 제목
2018	1,275 (100)	230 (18)		108 (8.5)	1 (0.1)	54 (4.2)	285 (22.4)		4 (0.3)	2 (0.2)	7 (0.5)	21 (1.6)	31 (2.4)	13 (1.0)	287 (22.5)		23 (1.8)	73 (5.7)		136 (10.7)			
2019	1,288 (100)	458 (35.6)	25 (1.9)	101 (7.8)		19 (1.5)	47 (3.6)	1 (0.1)		12 (0.9)	1 (0.1)	9 (0.7)	21 (1.6)	68 (5.3)	27 (2.1)	77 (6.0)	42 (3.3)	12 (0.9)	105 (8.2)	123 (9.5)	132 (10.2)	8 (0.6)	
2020	935 (100)	188 (20.1)		28 (3.0)			24 (2.6)					17 (1.8)	110 (11.8)		2 (0.2)	43 (4.6)	112 (12.0)	30 (3.2)	37 (4.0)	66 (7.1)	102 (10.9)	157 (16.8)	19 (2)

※ () 안의 숫자는 %

2 매체 유형별 현황

2020년 시정권고 결정 중 인터넷신문에 대한 결정이 793건(84.8%)으로 가장 많았고, 일간지 대상 결정이 77건(8.2%)으로 뒤를 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뉴스통신 57건(6.1%), 방송 6건(0.6%), 주간지 2건(0.2%) 순으로 많았다.

인터넷 기반 매체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향이 지속되는 것은 전체 정기간행물 등록 매체 중 인터넷매체의 비중이 높고 이에 따라 매체 간 경쟁도 치열한 점, 지면매체보다 기사의 전파가 용이한 점 등 때문으로 풀이된다.

표2 최근 3년간 매체 유형별 시정권고 현황

(2018. 1. 1. ~ 2020. 12. 31.)

구분 연도	총 계	매 체 유 형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뉴스 통신	인터넷 신문	방송
		중앙 일간지	지역 일간지					
2018	1,275 (100)	38 (3.0)	52 (4.0)	2 (0.2)	1 (0.1)	62 (4.9)	1,102 (86.4)	18 (1.4)
2019	1,288 (100)	34 (2.6)	60 (4.7)	5 (0.4)	2 (0.2)	73 (5.7)	1,101 (85.5)	13 (1.0)
2020	935 (100)	12 (1.3)	65 (6.9)	2 (0.2)		57 (6.1)	793 (84.8)	6 (0.6)

※ () 안의 숫자는 %



연도별 시정권고 현황

표 3 연도별 시정권고 현황

(1981. 3. 31. ~ 2020. 12. 31.)

구분	침 해 유 형																									
	개인적 법익 침해											사회적 법익 침해														
연도	권고 건수	사생활 침해 등	명예 훼손	피의자 피고인 신원 공개	피해자 목격자 신원 공개	고소 고발 보도	성폭력 피해자 신원 공개	성폭력 가해자 범행 수법 등 묘사	이동 청소년 의 보호	정신 질환자 신원 공개	북한 이탈 주민 신원 공개	보도 윤리	차별 금지	재난 보도	음란 포악 잔인 범죄 묘사	범죄 수법 상세 묘사	성 관련 보도	자살 관련 보도	미약 및 약물 보도	폭력 묘사	총격 혐오감	여론 조사	기사형 광고	기사 제목	공중 도덕 및 사회 윤리 침해	기타
1981	-	-	-	-	-	-	-	-	-	-	-	-	-	-	-	-	-	-	-	-	-	-	-	-	-	-
1982	-	-	-	-	-	-	-	-	-	-	-	-	-	-	-	-	-	-	-	-	-	-	-	-	-	-
1983	3	-	-	-	-	-	-	-	-	-	-	-	-	-	-	-	-	-	-	-	-	-	-	-	-	3
1984	-	-	-	-	-	-	-	-	-	-	-	-	-	-	-	-	-	-	-	-	-	-	-	-	-	-
1985	-	-	-	-	-	-	-	-	-	-	-	-	-	-	-	-	-	-	-	-	-	-	-	-	-	-
1986	3	3	-	-	-	-	-	-	-	-	-	-	-	-	-	-	-	-	-	-	-	-	-	-	-	-
1987	6	4	-	-	-	2	-	-	-	-	-	-	-	-	-	-	-	-	-	-	-	-	-	-	-	-
1988	37	16	-	3	-	9	-	-	-	-	-	-	-	-	-	-	-	-	-	-	-	-	-	-	-	9
1989	180	36	-	92	-	52	-	-	-	-	-	-	-	-	-	-	-	-	-	-	-	-	-	-	-	-
1990	311	67	-	169	12	63	-	-	-	-	-	-	-	-	-	-	-	-	-	-	-	-	-	-	-	-
1991	264	34	-	140	16	70	-	-	-	-	-	-	-	-	-	-	-	-	1	-	-	-	-	-	-	3
1992	390	34	-	227	3	123	-	-	-	-	-	-	-	-	-	-	-	-	-	-	-	-	-	-	-	3
1993	344	10	-	228	-	106	-	-	-	-	-	-	-	-	-	-	-	-	-	-	-	-	-	-	-	-
1994	204	7	-	132	-	58	-	-	-	-	-	-	-	-	-	-	-	-	7	-	-	-	-	-	-	-
1995	282	-	-	131	-	29	-	-	-	-	-	-	-	-	-	-	-	-	121	-	-	-	-	-	-	1
1996	310	11	-	122	22	26	-	-	8	-	-	-	-	-	-	-	-	4	117	-	-	-	-	-	-	-
1997	469	2	-	76	182	21	-	-	78	-	-	-	-	-	-	-	-	-	109	-	-	-	-	-	-	1
1998	348	-	-	29	151	16	-	-	14	-	-	-	-	-	-	-	-	1	137	-	-	-	-	-	-	-
1999	240	-	-	20	126	17	-	-	11	-	-	-	-	-	-	-	-	-	66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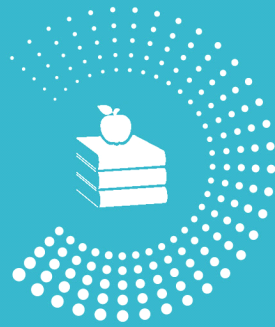
구분	침 해 유 형																										
	개인적 법익 침해											사회적 법익 침해															
연도	권고 건수	사생활 침해 등	명예 훼손	피의자 피고인 신원 공개	피해자 목격자 신원 공개	고소 고발 보도	성폭력 피해자 신원 공개	성폭력 가해자 범행 수법 등 묘사	아동·청소년의 보호	정신 질환자 신원 공개	북한 이탈 주민 신원 공개	보도 윤리	차별 금지	재난 보도	음란 포악 진인 범죄 묘사	범죄 수법 상세 묘사	성 관련 보도	자살 관련 보도	미약 및 약탈 보도	폭력 묘사	총격, 혐오감	여론 조사	기사형 광고	기사 제목	공중도덕 및 사회윤리 침해	기타	
2000	234	2	-	8	67	-	54	-	-	6	-	-	-	-	-	-	-	-	97	-	-	-	-	-	-	-	
2001	231	1	-	9	70	-	22	-	-	10	-	-	-	-	-	-	-	-	119	-	-	-	-	-	-	-	
2002	142	1	-	-	88	-	9	-	-	-	-	-	-	-	-	-	-	-	44	-	-	-	-	-	-	-	
2003	237	2	-	41	153	-	13	-	-	1	-	-	-	-	-	-	-	-	20	-	-	-	-	-	-	7	
2004	283	2	-	114	68	-	7	-	-	1	-	-	-	-	-	-	-	21	52	-	-	-	-	-	-	18	
2005	278	10	-	88	24	-	11	-	-	-	-	-	-	-	-	-	-	85	47	-	-	-	-	-	-	12	1
2006	190	3	-	68	23	-	4	-	-	2	-	-	-	-	-	6	-	73	10	-	-	-	-	-	-	-	1
2007	202	14	-	80	21	-	1	-	-	2	-	-	-	-	-	-	-	44	30	-	7	-	-	-	-	-	3
2008	289	30	-	48	8	-	4	-	-	-	-	-	-	-	-	62	7	97	27	-	4	-	-	-	-	-	2
2009	253	14	-	98	6	-	-	-	-	1	-	-	-	-	-	2	-	93	-	-	2	2	-	-	-	-	35
2010	284	10	-	49	2	-	2	-	-	-	-	-	-	-	-	17	-	199	4	-	-	1	-	-	-	-	-
2011	426	36	-	100	-	-	2	-	-	-	-	-	-	-	-	4	-	189	95	-	-	-	-	-	-	-	-
2012	259	5	-	40	-	-	5	-	-	3	-	1	-	-	-	40	-	49	116	-	-	-	-	-	-	-	-
2013	289	23	-	35	-	-	-	-	-	1	-	-	-	-	-	31	-	78	89	-	32	-	-	-	-	-	-
2014	302	25	-	16	-	-	5	-	-	-	-	-	-	29	9	51	4	73	75	-	13	2	-	-	-	-	-
2015	438	92	-	5	-	1	-	-	-	10	-	-	-	-	-	16	8	62	135	-	14	-	95	-	-	-	-
2016	912	134	-	43	4	262	20	-	-	4	75	-	-	-	4	22	5	124	28	-	14	-	173	-	-	-	-
2017	1,034	217	4	280	70	-	-	27	-	5	2	3	-	-	57	2	1	84	13	1	70	-	198	-	-	-	-
2018	1,275	230	-	108	1	-	54	285	-	4	2	7	-	-	21	31	13	287	-	23	73	-	136	-	-	-	-
2019	1,288	458	25	101	-	-	19	47	1	-	12	1	9	-	21	68	27	77	42	12	105	123	132	8	-	-	-
2020	935	188	-	28	-	-	-	24	-	-	-	17	110	-	-	2	43	112	30	37	66	102	157	19	-	-	-
계	13,172	1,721	29	2,728	1,117	263	824	383	1	161	91	29	119	29	112	354	108	1,752	1,631	73	400	230	891	27	12	87	-
%	100.0	13.1	0.2	20.7	8.5	2.0	6.3	2.9	0.0	1.2	0.7	0.2	0.9	0.2	0.9	2.7	0.8	13.3	12.4	0.6	3.0	1.7	6.8	0.2	0.1	0.7	-

* () 안의 숫자는 %



제 2 부

주요 시정권고 사례



- ✓ 개인적 법익 침해
- ✓ 사회적 법익 침해





개인적 법익 침해

제 1 장 | 사생활 침해 등

제 2 장 | 피의자, 피고인 신원공개

제 3 장 | 고소·고발사건 보도

제 4 장 | 성폭력피해자 보호 위반

제 1 장 | 사생활 침해 등

사례 1

의결번호	제2020-71호
매 체 명	놀라운뉴스
보도일 및 위치	2020년 1월 14일 NEWS면
기사제목	제목없음

1. 보도내용

「제목없음」 제하의 사진



1/10(금) 1시 40분경 B1F
 에서 30대 여성고객이
 다른 고객에게 소리지르고 있다는 내용으로 안전실로
 컴플레인이 접수되어
 안전 부소장이
 현장에 가서 고객에게 자제를 요청.

※ 원 보도에는 가림 처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가림 처리함

2.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백화점 내 패스트푸드점에서 한 여성이 보안요원을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그대로 게재하면서 보안요원의 초상, 성명 및 여성의 초상을 공개하여 당사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2

의결번호	제2020-105호
매체명	족구뉴스
보도일 및 위치	2020년 2월 20일 종합뉴스면
기사제목	한상헌 하차설, 아나운서 부인, 딸, 사진?, 잠자리, 아내와 불화 고백?, 상처를...받아... '울먹'

1. 보도내용

「한상헌 하차설, 아나운서 부인, 딸, 사진?, 잠자리, 아내와 불화 고백?, 상처를..받아.. '울먹」
제하의 사진



※ 원 보도에는 가림 처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가림 처리함

2.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특정 아나운서가 유희주점에서 거액의 협박을 당한 남자라는 한 유튜브 채널의 주장을 보도하면서 해당 아나운서의 미성년자 자녀 초상 및 성명을 게재하여 자녀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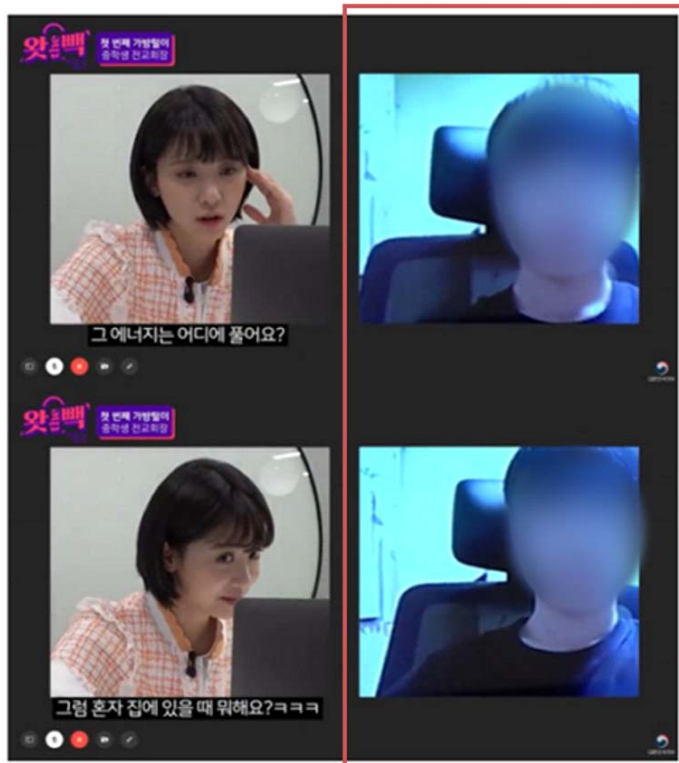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3

의결번호	제2020-469호
매체명	싱글리스트
보도일 및 위치	2020년 7월 1일 연예면
기사제목	“혼자있을 때 뭐해?” 김민아, 중학생 성희롱 논란→영상 삭제

1. 보도내용

「“혼자있을 때 뭐해?” 김민아, 중학생 성희롱 논란→영상 삭제」 제하의 사진



※ 원 보도에는 가림 처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가림 처리함

2. 권고사항

언론은 사인의 초상을 공개하여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특정 방송인 겸 기상캐스터가 미성년자 성희롱 논란에 휩싸였다고 보도하면서 해당 성희롱 피해자의 초상을 공개하였다.

이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볼 때 당사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4

의결번호	제2020-694호
매체명	인터넷 파이낸스투데이
보도일 및 위치	2020년 8월 16일 뉴스 일반면
기사제목	광화문시위 중 시민이 경찰버스에 낀 사고, “후속 조치는?”

1. 보도내용

「광화문시위 중 시민이 경찰버스에 낀 사고, “후속 조치는?”」 제하의 사진



경찰버스 사이에 끼어 있는 시민이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



버스사이에 끼었다가 극적으로 살아나서 기절해 있는 모습. 이미지=영상 캡처

※ 원 보도에는 가림 처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가림 처리함

2. 권고사항

언론은 사인의 초상을 공개하여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지난 8월 15일에 열린 광화문 집회에 대해 보도하면서 경찰버스에 끼인 상태와 바닥에 쓰러진 상태의 집회 참가자 초상을 공개하였다.

이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볼 때, 비록 집회 참가자라 하더라도 사고 당시의 모습을 부각하여 보도하는 것은 당사자의 초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5

의결번호	제2020-244호
매 체 명	말산업저널
보도일 및 위치	2020년 4월 2일 네트워크면
기사제목	○○○ 재학생 민폐 강남 모녀의 제주도 여행기

1. 보도내용

「딸은 이중국적을 가진 한국계 미국인(韓國系美國人, Korean Americans)으로 현재 강남에 거주하고 ○○○에 있는 명문 공대인 ○○○ 재학생인걸로 밝혀졌다. 서울 ○○고 출신으로 재학 시절 ○○○올림픽아드 대표도 역임했고 졸업 후 ○○○대 의대에 입학했으나 1학기만 마치고 자퇴한 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그녀의 아버지는 중소기업의 높은 직위에 있다고 한다. (후략)」

2.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음에도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강남 유학생 모녀에 대해 보도하면서 딸의 국적 및 거주 지역, 현 소속 대학 및 이전에 재학하던 학교, 과 등의 이력을 상세히 공개하였다.

비록 그가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돼 이동동선의 공개는 공익적 가치가 있으나, 방역 등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고 보기 어려운 확진자의 신상 정보를 지나치게 상세히 공개하는 것은 본인과 가족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6

의결번호	제2020-483호
매 체 명	인터넷 충청타임즈
보도일 및 위치	2020년 7월 23일 종합II면
기사제목	청주시내 아파트 동대표 '갑질 횡포'

1. 보도내용

「청주시내 한 아파트가 동 대표 한 명의 '갑질' 횡포로 주민 등 구성원들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중략)

문제가 발생한 곳은 ○개동 ○세대 규모의 청주시 흥덕구 ○○동 ○○○아파트다.

갈등은 2년 여전, 이 아파트 ○동에 사는 ○모씨(○○)가 동 대표로 선출되면서 시작했다. (후략)」

2.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적 정보를 공개하여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청주 시내 한 아파트가 동 대표의 갑질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해당 동 대표의 성, 나이 및 그가 거주 중인 아파트명, 동명 등을 공개하였다.

이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당사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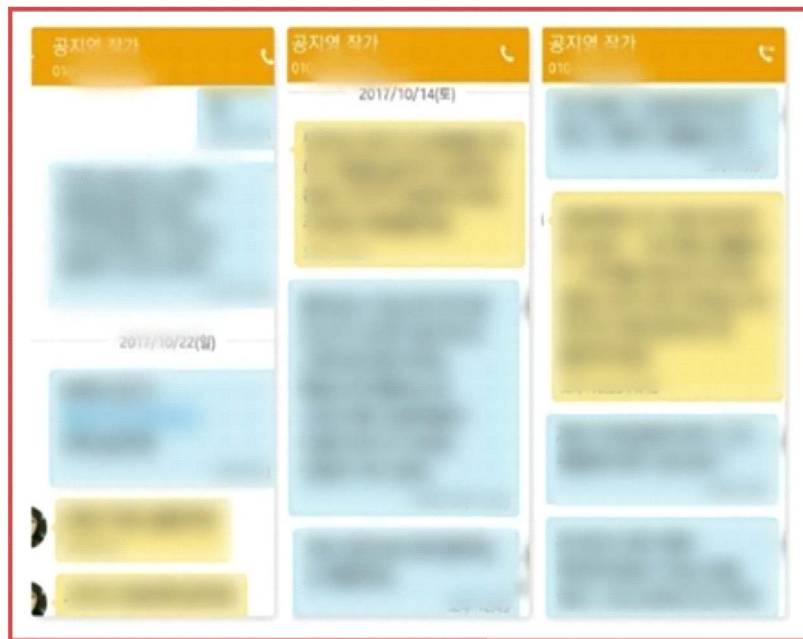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7

의결번호	제2020-245호
매 체 명	위키트리
보도일 및 위치	2020년 4월 8일 사회면
기사제목	[단독] 공지영 작가, 돈으로 '봉침목사' 하드디스크 무단입수 복원 매수

1. 보도내용

「[단독] 공지영 작가, 돈으로 '봉침목사' 하드디스크 무단입수 복원 매수」 제하의 사진



공지영 작가가 김모 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 원 보도에는 일부 가림 처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가림 처리 추가함



2. 권고사항

언론은 사적인 전화나 통신내용 등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일명 '전주 봉침 사건'과 관련하여 소설가 공지영 씨가 이민주 목사의 사무실에 있던 하드디스크를 복원하고자 특정인에게 돈을 지불했다가 돌려받은 정황이 문자메시지를 통해 확인됐다고 보도하면서 공지영 씨와 특정인 간의 사적대화내용 캡처본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였다.

이는 동의 없이 개인 간의 통신내용을 공표하는 것으로 통신비밀 보호법 제16조제1항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 2 장 | 피의자, 피고인 신원공개

사례 8

의결번호	제2020-428호
매 체 명	전남일보
보도일 및 위치	2020년 6월 19일 4면
기사제목	여직원기숙사 '몰카' 의혹 ○○ “사실 아니다” 부인

1. 보도내용

「○○자동차 광주공장 간부가 여직원 숙소에 무단침입해 ‘몰카’를 설치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서부경찰에 따르면, ○○자동차 광주공장 ○○팀장 A씨가 여직원 방에 몰래 들어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후략)」

2.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의 혐의자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반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여직원 기숙사 내 불법촬영 혐의자의 전 소속 직장 및 직책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 3 장 | 고소·고발사건 보도

사례 9

의결번호	제2020-875호
매 체 명	위키트리
보도일 및 위치	2020년 11월 9일 엔터면
기사제목	'30살 남자' 돈 뜯어낸 걸그룹 멤버, 카톡 대화까지 뽐뽐했다 (제보+증거)

1. 보도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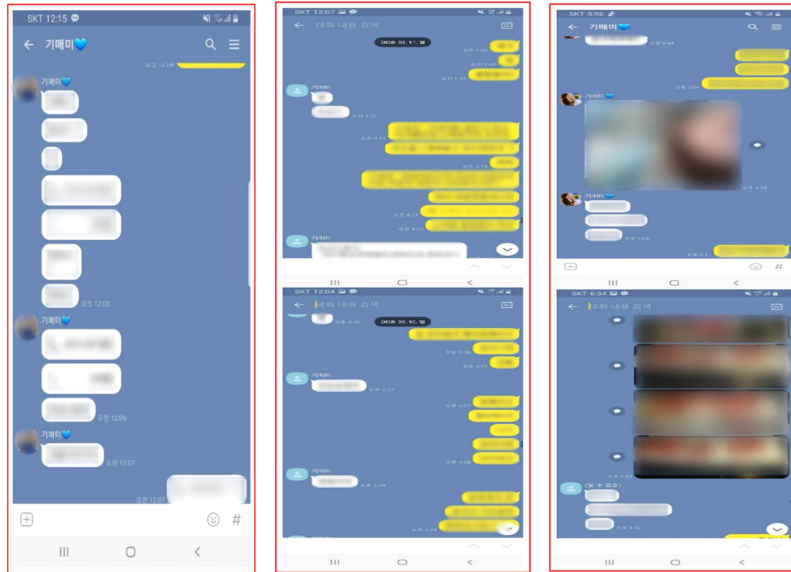
「'30살 남자' 돈 뜯어낸 걸그룹 멤버, 카톡 대화까지 뽐뽐했다 (제보+증거)」의 제목
 「피해자 돈으로 호스트바 남자들과 흥청망청
 블랙스완 김혜미, 사기죄로 고소당해

유명 걸그룹 출신 가수가 사기죄로 고소당했다. 피해자는 위키트리에 카카오톡 캡처본을
 전해왔다.

지난 6일 남성 박 모 씨가 위키트리에 제보를 해왔다. 그는 블랙스완 김혜미 씨에게 4973만
 3271원을 빌려주고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그룹 라니아 멤버로도
 활동했다. (중략)

그렇게 총 4973만 3271원이 될 때까지 생활비, 월세 등을 빌려줬는데 김 씨가 지난 5월
 다른 남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밤을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더욱이 박 씨가 구해준 집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화가 난 박 씨는 “지금까지 빌려준 돈 모두 갚고 집에서도 나가라”라고 했지만
 김 씨는 오히려 박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박 씨 회사로 찾아가 신상을 공개하겠다는
 협박까지 했다. (후략)

「'30살 남자' 돈 뜯어낸 걸그룹 멤버, 카톡 대화까지 뽐뽐했다 (제보+증거)」 제하의 사진



※ 원 보도에는 가림 처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가림 처리함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고소고발 사건의 구체적 내용 및 사적 통신내용 등을 공개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특정 가수의 성명 및 초상을 공개하여 그가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실을 보도하였다.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확정되지 않은 혐의를 보도한 것은 독자들로 하여금 피고소인이 실제 관련 범죄를 행한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사기 피해를 주장하는 남성과 특정 가수 간 사적대화가 담긴 통신내용 캡처본을 공개하였다. 이는 「헌법」 제18조에 근거하여 볼 때, 당사자 일방의 통신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 및 제1조제2항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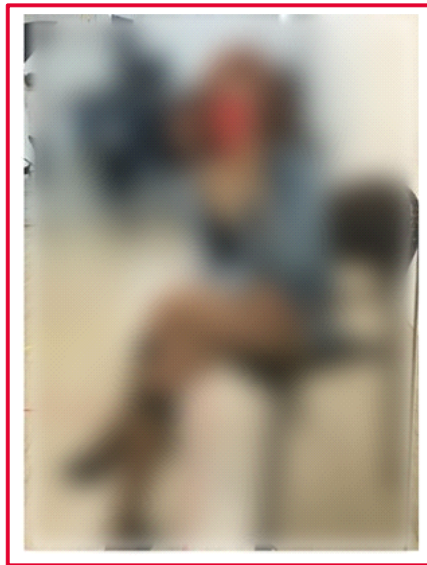
제 4 장 | 성폭력피해자 보호 위반

사례 10

의결번호	제2020-142호
매 체 명	족구뉴스
보도일 및 위치	2020년 1월 20일 종합뉴스면
기사제목	김건모 성추행 추가 폭로, 가수 이설아?...아찔한 몸매?, 과감한 노출까지?

1. 보도내용

「김건모 성추행 추가 폭로, 가수 이설아?...아찔한 몸매?, 과감한 노출까지?」의 제목
 「김건모 성추행 추가 폭로, 가수 이설아?...아찔한 몸매?, 과감한 노출까지?」 제하의 사진



※ 원 보도에는 가림 처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가림 처리함

「김건모 성추행 추가 폭로로 가수 이설아가 주목받으면서 명품몸매가 재조명되고 있다. (중략) 이설아는 과거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아슬아슬한 섹시미를 맘껏 발산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당시 이설아는 검정색 반 스타킹을 신고 속옷을 연상시키는 민소매 패션을 입고 있어 더욱 주목받았다고 한다. (후략)」

2.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보도하거나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유명 가수 김건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추가 폭로한 여성 가수의 과거 사진을 게재하면서 기사 제목 및 본문에 해당 사진 관련 선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는 성폭력피해자 보호에 미흡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11

의결번호	제2020-619호
매 체 명	조선닷컴
보도일 및 위치	2020년 7월 28일 사회면
기사제목	[단독] “한번 만진게 큰죄냐” 박원순 피해자 조롱 ‘클리앙’ 압수수색

1. 보도내용

「경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여성 A씨와 관련해, 인터넷을 통해 A씨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단 ‘2차 가해’를 수사하기 위해 국내 대표적인 친문(親文) 성향 커뮤니티인 ‘클리앙’ 등 4개 웹사이트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중략)

경찰에 고소된 글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때도 그렇고. 여비서 X탱이 한번 만진게 큰 죄냐. X나 웃기네’ ‘만약에 기분 나빴으면 진작 퇴사하지. 기분 좋으니까 퇴사를 안했지 X신인가. 아니 그러니까 비서도 즐겼겠지’ ‘2차 가해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진짜 2차 가해가 두려운 사람이면 이목을 끌지 않고 조용히 움직이지. 고인 발인하는 날 서둘러서 기자회견하냐’ 등이다.」

「[단독] “한번 만진게 큰죄냐” 박원순 피해자 조롱 ‘클리앙’ 압수수색」 제하의 사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여성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에 '2차 가해' 혐의로 고소한 글. / 인터넷 캡처

2.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를 자세히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침해하는 보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이 자신을 비방하는 게시글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하면서 해당 여성을 조롱하는 게시글을 그대로 게재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피해상태나 정황에 대해 게시자가 추측 또는 상상한 내용을 여과 없이 공표한 것으로, 해당 여성에게 2차 가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사회적 법익 침해

제 1 장 | 보도 윤리 위반

제 2 장 | 차별 금지 위반

제 3 장 | 음란·포악·잔인 범죄 묘사

제 4 장 | 성관련 보도

제 5 장 | 자살 보도

제 6 장 | 마약·약물관련 보도

제 7 장 | 폭력 묘사

제 8 장 | 충격·혐오감

제 9 장 | 여론조사 보도

제10장 | 기사형 광고

제11장 | 기사 제목

제 1 장 | 보도 윤리 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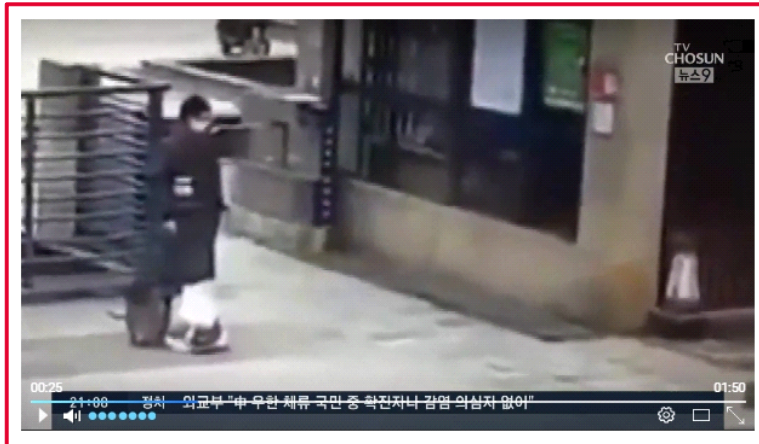
사례 12

의결번호	제2020-144호
매 체 명	TV조선
보도일 및 위치	2020년 1월 24일 뉴스9 프로그램
기사제목	'우한 폐렴'에 쓰러지는 환자들...中, 자금성 닫고 봉쇄 도시 확대

1. 보도내용

「'우한 폐렴'에 쓰러지는 환자들...中, 자금성 닫고 봉쇄 도시 확대」의 제목

「'우한 폐렴'에 쓰러지는 환자들...中, 자금성 닫고 봉쇄 도시 확대」 제하의 영상



「리포트 : 마스크 차림으로 서 있던 남성. 갑자기 쓰러집니다. 쓰러진 사람들을 실어가려는 앰블런스가 보이고, 병원은 몰려든 환자들로 북새통입니다. 소셜 미디어에 올라온 폐렴의 발원지, 우한의 풍경이 사태의 심각성을 말해줍니다.」

2. 권고사항

언론은 객관적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진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하여 독자를 혼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한 남성이 길에서 쓰러지는 사진 및 영상을 게재하면서 그가 우한 폐렴 환자라고 보도하였다. 해당 사진 및 영상 속 인물이 우한 폐렴 환자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독자를 혼동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도 윤리 준수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13

의결번호	제2020-246호
매 체 명	통일뉴스
보도일 및 위치	2020년 4월 26일 북한소식면
기사제목	김정은 위원장, 25일 서거...김여정 계승

1. 보도내용

「김정은 위원장, 25일 서거...김여정 계승」의 제목

「-“현지지도 길에서 급변으로 서거” <중통>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0시 30분에 현지지도 길에서 급변으로 서거했다고 <조선중앙TV>가 26일 오전 보도했다.

이어 “김여정 동지께서 계승하신다”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 완수할 수 있는 결정적 담보”라고 발표했다.」

2. 권고사항

언론은 객관적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진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하여 독자를 혼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월 25일 서거했다’는 보도내용을 담고 있으나 김정은 위원장이 5월 초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등 사실과 다른 보도로 밝혀졌다.

비록 북한 최고지도자의 사망 여부는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북한 관련 보도는 사실 확인에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남북 및 국제 관계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과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 2 장 | 차별 금지 위반

사례 14

의결번호	제2020-145호
매 체 명	헤럴드경제
보도일 및 위치	2020년 1월 29일 5면
기사제목	상인들 “손님들 불안할까 마스크 안써요...복불복이죠 뭐”

1. 보도내용

「마스크 대란에도 한국 체류 중국인들이 위생에 둔감한 현실을 반영하듯, 역 주변 차이나타운으로 들어서자 우한 폐렴을 무색하게 하는 비위생적인 행태가 준비했다. (중략)

일부 행인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만 중국인 또는 화교처럼 보이는 사람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비율이 극히 낮았다. (후략)」

2. 권고사항

언론은 인종, 국적, 지역, 성별, 종교, 나이,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등을 이유로 편견적 또는 경멸적 표현을 삼가야 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중국인 밀집지역인 대림동 차이나타운을 스케치하는 보도를 하면서 중국인들의 비위생적인 행태가 준비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는 특정 국적과 지역이 특별히 비위생적인 것처럼 여겨지도록 하여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15

의결번호	제2020-146호
매 체 명	인사이트
보도일 및 위치	2020년 1월 30일 사회면
기사제목	‘우한 폐렴’ 유행인데 무상 보급한 마스크 안 쓰고 지하철서 대놓고 기침하는 노인들

1. 보도내용

「‘우한 폐렴’ 유행인데 무상 보급한 마스크 안 쓰고 지하철서 대놓고 기침하는 노인들」의 제목 「이런 가운데 일부 노인들은 답답하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있다. 지하철 및 공공장소에서도 마스크를 미착용한 노인들이 보이곤 하는데 기침을 할 때면 입을 가리지 않고 하는 광경도 종종 목격된다. (중략)

하지만 일부 노인들은 “숨쉬기도 답답한데 마스크를 어떻게 끼고 다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중략) 그러나 노인들은 우한 폐렴 및 미세먼지 등 현 상황에 대한 인지와 경각심이 부족해 이같은 현상이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 (중략)

이러한 상황에 노인들의 안일한 경각심은 전염성을 누그러뜨리기는커녕 2차 전염으로 인한 피해까지 우려시키고 있다. (후략)」

2. 권고사항

언론은 인종, 국적, 지역, 성별, 종교, 나이,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등을 이유로 편견적 또는 경멸적 표현을 삼가야 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유행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지하철에서 기침을 하여 2차 전염 우려가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는 마스크 미착용자가 노인층에만 있는 것처럼 여겨지도록 하는 편향된 표현으로서 특정 연령대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16

의결번호	제2020-247호
매 체 명	인터넷 국민일보
보도일 및 위치	2020년 5월 7일 시사면
기사제목	[단독] 이태원 게이클럽에 코로나19 확진자 다녀갔다

1. 보도내용

「[단독] 이태원 게이클럽에 코로나19 확진자 다녀갔다」의 제목
 「이태원 게이클럽에 지난 2일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다. (중략)
 이태원 게이클럽 ○은 이날 SNS에 “지역사회 확진자가 2일 00:20~03:00 ○에 방문한 사실을 확인해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후략)」

2. 권고사항

보도 과정에서 그 표현이 사안의 설명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한, 인종, 국적, 지역, 성별, 종교, 나이,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과도하게 보도하여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이태원의 클럽이 게이클럽이라고 보도하였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자의 이동동선 공개 등은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안이라 할 수 있으나, 해당 클럽을 게이클럽이라고 공개한 것은 방역 등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세부 사항을 과도하게 보도한 것은 독자들로 하여금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 3 장 | 음란·포악·잔인 범죄 묘사

사례 17

의결번호	제2020-497호
매 체 명	일요신문
보도일 및 위치	2020년 7월 3일 월드컵
기사제목	동성 성폭행 피해 미군들 “우린 ‘전쟁’에서 살아남은 생존자”

1. 보도내용

「최근 독일 시사주간 ‘슈테른’은 미군부대 내에서 성폭행을 당한 군인들이 속속 입을 열기 시작했다고 말하면서 이들에 대한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보도했다. 실제 그동안 피해 사실을 숨긴 채 고통 속에 살던 많은 퇴역 군인들이 용기를 내서 진실을 알리기 시작하면서 이들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중략)

“그들은 다음번에는 변기청소 솔을 항문에 삽입하는 식으로 나를 괴롭혔다”고 말하면서 “나는 별거벗은 채 도망쳤다. 항문에서 피를 흘리면서 대령에게 달려갔다”라고 회상했다. (중략)
한번은 삼푸 병을 항문에 억지로 쑤셔넣는 식의 성폭행을 자행하기도 했다. (후략)»

2. 권고사항

언론은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 방법을 필요이상으로 설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미국의 부대 내 동성 성폭행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 수법을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제1항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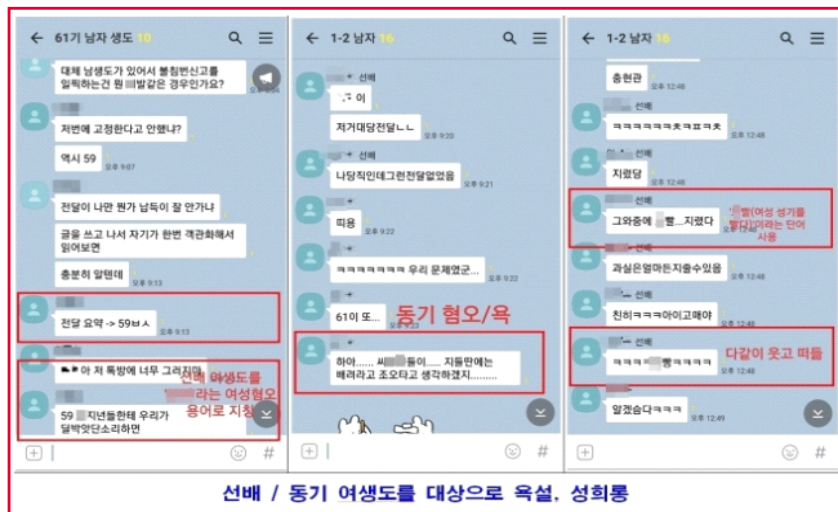
제 4 장 | 성관련 보도

사례 18

의결번호	제2020-38호
매 체 명	부산닷컴
보도일 및 위치	2019년 11월 25일 사회면
기사제목	○○○학교 男생도 단독방, 성희롱 발언에도 솜방망이

1. 보도내용

「○○○학교 男생도 단독방, 성희롱 발언에도 솜방망이」 제하의 사진



선배 / 동기 여성도를 대상으로 욕설, 성희롱

「이들은 단독방에서 선배 기수 여성도들을 향해 “59(기수) XXX들은...” “XX년들이 지들 땀에는 배려라고 좋다고 하겠지” “X발 지렸다”고 했다. 상관인 훈육 장교들에게까지 “훈육관 이년들은 저질러놓고 뒤편이 우리가 다 한다” “훈육관님 ‘X리동절(여성을 비하하는 단어와



어리둥절을 합친 말) 개꿀잼” “XX이는 허수아비 소령, 세워만 놓은 듯 꼬추도 아니고” 같은 발언도 했다.

여생도들의 간호실습을 빗대 “회음부 간호를 X되게 하겠다” “(실습 나가서) 고추 빠는 거 아니냐”고 했다. 동기 여생도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클럽에서 엉덩이를 비비는 게 백배 낫겠다. XX 어째 화장으로 여드름 자국이 안 지워지냐”라며 외모를 비하하는 말도 했다. 일부 여생도들의 페미니즘 관련 발언을 캡처해 “페미에 취한다” “보이루”라며 여성혐오 발언을 했다. (후략)」

2. 권고사항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학교 일부 남학생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여자 동기들을 대상으로 한 성적 발언을 고발한 게시물의 상당 부분을 게재하여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을 독자들에게 노출하였다.

이는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19

의결번호	제2020-500호
매 체 명	오편 디스커스
보도일 및 위치	2020년 7월 8일 월드뉴스면
기사제목	백화점 화장실에서 대낮에 XX하다 '망신' 당한 커플 (사진)

1. 보도내용

「백화점 화장실에서 대낮에 XX하다 '망신' 당한 커플 (사진)」 제하의 사진



2. 권고사항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기사는 베트남의 백화점 내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가진 커플이 화제라고 전하면서 해당 성관계 모습으로 보이는 사진을 게재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제1항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제 5 장 | 자살 보도

사례 20

의결번호	제2020-350호
매 체 명	경기신문
보도일 및 위치	2020년 5월 28일 19면
기사제목	20대 소방관, “힘들다” 극단적 선택

1. 보도내용

「20대 소방관이 일이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7일 ○○소방학교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 작은 방에서 해당 기관 소속 A(○○)소방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중략) A소방사는 최근 인사발령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소방학교에서 ○○ 업무를 담당해왔다. (후략)」

2. 권고사항

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한 소방관의 자살 사건을 보도하면서 그의 소속, 직급, 직무, 나이, 인사발령 시기 등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은 보도는 자살자 및 가족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21

의결번호	제2020-447호
매 체 명	뉴스워치
보도일 및 위치	2020년 5월 28일 사회면
기사제목	['○○전자' 女직원 사망 미스터리 '추적'] '엘리트' 직원 왜 스스로 목숨 끊었나

1. 보도내용

「['○○전자' 女직원 사망 미스터리 '추적'] '엘리트' 직원 왜 스스로 목숨 끊었나」의 제목 「앞서 지난 27일 ○○전자 직원 A(○○)씨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빌딩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유서는 따로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전자 내 한 ○○본부 ○○○팀 부서에서 근무하는 소위 '엘리트 사원'이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이날도 별다른 이상 조짐은 없었으며 이날 오전 사무실에 출근해 근무를 하다가 오후 12시34분께 17층 사무실로 활용되지 않은 빈 공간에서 신발을 벗어 놓은 채 투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략)

사고현장을 둘러본 결과, 사고가 일어났다고는 전혀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청소됐다. A씨가 투신했다는 장소도 직접 살펴본 결과 물청소로 깨끗하게 원래대로 복원됐다.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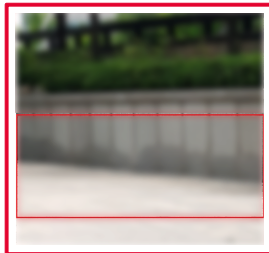
본지가 접촉한 관계자는 “(당시 사고현장 상태는) 회사 측 지시로 사고현장에 가보니 시신이 크게 손상돼 보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참혹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일부 구역은 빌딩을 관리업체 직원을 총 동원해 대대적으로 물청소하는 데만 3~4시간이 걸렸다”면서 “일부 구간은 복구가 너무 어려워 타일을 새로 갈아야 할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후략)

「[‘OO전자’ 女직원 사망 미스터리 ‘추적’] ‘엘리트’ 직원 왜 스스로 목숨 끊었나」 제하의 사진



지난 27일 ■ 전자 직원 A씨가 이날 오후 ■ 빌딩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서울 중구 ■ 일대 ■ 빌딩 외관 전경. 사진=■



28일 ■ 빌딩을 방문했을 당시 시멘트 벽면에는 ■ 물청소 흔적이 고스란히 보인다. 사진=■



■ 전자 ■ 본부에서 근무한 A씨가 ■ 뛰어내린 지점. 사진=■



시멘트 바닥은 물청소로 흔적이 깨끗하게 지워져 있다. 빨간색 부분이 A씨가 ■ 빌딩 본사사옥(정문 기준) 서쪽 인근에 떨어져 쓰러진 지점. 사진=■

※ 원 보도에는 가림 처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가림 처리함

2. 권고사항

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자살 장소를 묘사하는 보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나이, 성별 및 근무했던 회사명, 위치, 부서 등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고 그가 건물에서 뛰어내린 지점 및 떨어져 쓰러진 지점 등의 현장사진을 여러 장 게재하여 자살 장소를 상세히 묘사하였다.

이와 같은 보도는 자살자 및 가족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1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22

의결번호	제2020-802호
매 체 명	MBN
보도일 및 위치	2020년 10월 28일 MBN 프레스룸 프로그램
기사제목	[MBN프레스룸] 음독이나, 백신이나, 소년의 사망 원인 논란

1. 보도내용

「[MBN프레스룸] 음독이나, 백신이나, 소년의 사망 원인 논란」 제하의 영상



※ 원 보도에는 가림 처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가림 처리함

「○○○은 햄이나 소시지 같은 육가공품을 만들 때 고기의 선홍빛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이지만, 독성이 강해 0g 넘는 양을 한 번에 섭취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은 소년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후략)」



2. 권고사항

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에 사용된 약명 또는 치사량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경찰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는 자의 죽음을 보도하면서 부검결과에서 검출된 약명과 치사량을 언급하였다.

이는 자살 수단에 대한 구체적 보도로 모방 자살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1항제3호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제 6 장 | 마약·약물관련 보도

사례 23

의결번호	제2020-877호
매 체 명	아시아일보
보도일 및 위치	2020년 11월 12일 13면
기사제목	목포해경, 마약류 투약 매매 베트남 선원 등 구속

1. 보도내용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는 베트남 산 신종 마약류인 합성대마(○○○)를 비롯해 필로폰 성분이 포함된 합성마약(속칭 ‘○○○’, ○○○ 종류)을 투약·매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선원 등 8명을 체포해 마약을 판매한 종업원과 투약자 등 3명을 구속하고 5명은 불구속 의견으로 목포지청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중략)

목포해경은 A씨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실제 유흥업소에서 신종 대마 및 마약류의 매매·투약 사실을 확인하고,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유흥업소에서 합성대마(○g, 시가 ○만원 상당)와 ○○○(○정, 시가 ○만원 상당) 등을 발견하고 전량 압수했다. (중략)

해경에 따르면, 선원들에게 합성마약 등을 판매한 베트남 국적의 종업원 B씨(20·남)는 현재 ○○대학교 유학생 신분으로, 1년여 전부터 상기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중간 판매책 으로부터 합성마약 등을 구매한 뒤, 이를 찾는 베트남 손님들에게 합성대마는 1개피(○g)당 ○~○만원에, ○○○는 1정당 ○~○만원에 판매하는 등 지금까지 총 7회에 걸쳐 판매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번에 투약한 신종 마약류 합성마약의 경우, 마약류 관리법에서 규정하는 ‘JWH-018 및 그 유사체’에 해당하는 흡연용 환각제로서, 담배가루나 차 가루 등에 섞어 담배 형태로 말아



흡연하는 마약류이며, 일반 대마초보다 5배 이상의 환각효과로 그 위험성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후략)」

2. 권고사항

향후 보도 시 마약의 명칭, 구입가격, 사용방법, 환각적 효능 등이 상세히 언급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마약의 명칭, 구입가격, 사용방법, 환각적 효능 등을 상세히 보도하였다.

이는 독자에게 마약 사용의 동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5조제1항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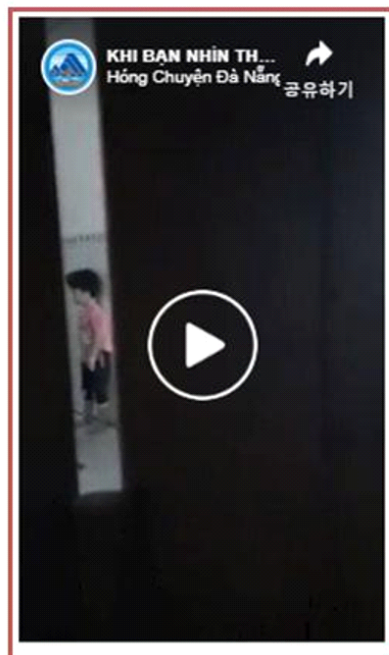
제 7 장 | 폭력 묘사

사례 24

의결번호	제2020-534호
매 체 명	디스패치뉴스
보도일 및 위치	2020년 7월 1일 A1면
기사제목	3살 의붓딸 머리 내려치고 목조른 계부...현재 베트남서 난리난 아동학대 사건

1. 보도내용

「3살 의붓딸 머리 내려치고 목조른 계부...현재 베트남서 난리난 아동학대 사건」 제하의 영상





2. 권고사항

언론은 가학적인 내용, 폭력 장면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베트남에서 계부가 아이를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그대로 게재하였다.

이는 가학적인 폭력 장면을 필요 이상으로 드러나도록 함으로써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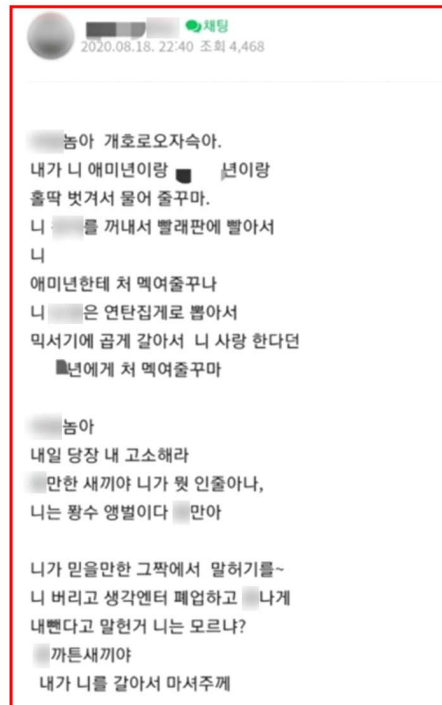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6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25

의결번호	제2020-721호
매 체 명	인터넷 제민일보
보도일 및 위치	2020년 8월 24일 Culture면
기사제목	권영찬, 112 신고 “김호중 향해 네 XX 곱게 갈아서 먹여주겠다” 잔인한 협박 때문에…

1. 보도내용

「권영찬, 112 신고 “김호중 향해 네 XX 곱게 갈아서 먹여주겠다” 잔인한 협박 때문에…」
제하의 사진



※ 원 보도에는 일부 가림 처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가림 처리 추가함



2. 권고사항

언론은 언어폭력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특정 가수가 협박을 당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해당 협박글 캡처사진을 상세히 게재하였다.

이는 언어폭력적 내용이 담긴 캡처사진을 필요 이상으로 드러나도록 한 것으로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6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제 8 장 | 충격·혐오감

사례 26

의결번호	제2020-636호
매 체 명	인사이드
보도일 및 위치	2020년 7월 23일 사건사고면
기사제목	브레이크인 줄 알고 ‘엑셀’ 뺐은 택배 트럭에 3살 아들 깔리자 2초 만에 엄마가 한 행동

1. 보도내용

「브레이크인 줄 알고 ‘엑셀’ 뺐은 택배 트럭에 3살 아들 깔리자 2초 만에 엄마가 한 행동」
제하의 영상



※ 원 보도에는 가림 처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가림 처리함



2. 권고사항

언론은 지나친 충격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노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보도하면서 택배 화물차에 3살 아이가 깔리는 사고 당시 영상을 그대로 게시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27

의결번호	제2020-911호
매 체 명	인터넷 F.E TIMES(F.E 타임스)
보도일 및 위치	2020년 11월 4일 FAM ISSUE면
기사제목	1자로 펼쳐진 고양이 창자...‘김해 나래공원 길고양이 학대 사건’ 엄중수사 촉구

1. 보도내용

「1자로 펼쳐진 고양이 창자...‘김해 나래공원 길고양이 학대 사건’ 엄중수사 촉구」 제하의 사진



※ 원 보도에는 일부 가림 처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가림 처리 추가함



「지난달 경상남도 김해에 위치한 한 공원에서 길고양이 사체와 함께 1자로 펼쳐진 창자가 발견돼 누리꾼들의 큰 충격을 안겼다.

공원 한 가운데에 1자로 펼쳐진 창자는 바로 옆 죽은 길고양이의 창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략)

캠타미 그 고양이에게 가까이 다가가 보니 누워있는 고양이는 이미 죽은 상태였고 그 옆에는 창자가 가지런히 놓여져 있었다.

일부러 보란 듯이 전시해둔 것처럼 가지런히 1자로 펼쳐져있어 학대로 의심되어 경찰에 신고했다. (후략)」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는 사진이 게재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한 공원에서 고양이 사체와 함께 창자가 발견됐다고 보도하면서 사체와 창자 사진을 게재하고 발견 당시 모습을 묘사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이들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제 9 장 | 여론조사 보도

사례 28

의결번호	제2020-544호
매 체 명	아시아투데이 ASIATODAY
보도일 및 위치	2020년 7월 27일 1면
기사제목	수술실 CCTV, 권리인가 감시인가

1. 보도내용

「최근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에 찬성한다는 여론 조사가 나오면서 찬반 논란이 다시 점화되고 있다. 수술실 내 범죄행위 방지와 신뢰도 제고 등의 이유로 찬성한다는 측과, 사생활 침해 및 의료행위 위축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후략)」

2. 권고사항

언론은 국민적 관심사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에는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등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국민적 관심사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관한 찬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하면서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등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하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는 독자들에게 해당 조사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판단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제 10 장 | 기사형 광고

사례 29

의결번호	제2020-394호
매 체 명	경기일보
보도일 및 위치	2020년 5월 25일 16면
기사제목	관절·척추질환 전문 '성남 ○○○병원' 오픈

1. 보도내용

「관절·척추질환 전문 '성남 ○○○병원' 오픈」 제하의 사진



※ 원 보도에는 가림 처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가림 처리함

「성남 ○○○병원(병원장 ○○○, ○○○)이 성남을 비롯해 용인, 광주, 여주, 이천 등 경기남부 지역의 관절, 척추 치료 여건 개선에 나선다.

지하철 ○호선 ○○역 ○번 출구와 연결되고 탄천, 송파 IC는 직선거리로 각각 ○km씩 떨어져 있다. (중략)

척추신경팀은 전신 척추스캔과 체내조직의 특성, 성분분석이 가능한 독일 지멘스사의 최신형 MRI를 비롯한 여러 첨단영상의학 장비 도입으로 모호한 진단에 따른 수술 시행을 최소화한다. 비수술 치료는 스테로이드를 이용한 단순한 신경차단 치료가 아니다. 실시간 영상의학 장비와 초소형 척추신경 내시경과 같은 학계 최신 지견 치료를 시행해 시술만으로도 수술에 준하는 치료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 기자」

2.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특정 의료기관을 홍보하는 등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0호에 반하는 의료기관의 위치 정보 등을 게재하였고,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독자로 하여금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0호,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0호 및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 11 장 | 기사 제목

사례 30

의결번호	제2020-918호
매 체 명	뉴시안
보도일 및 위치	2020년 10월 19일 사회면
기사제목	외국인 건보료 안내고 '먹튀'...최근 5년간 69억원

1. 보도내용

「외국인 건보료 안내고 '먹튀'...최근 5년간 69억원」의 제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국외체류자가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부정수급액이 최근 5년 7개월 동안 6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중략)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음과 동시에 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규정돼 있다. (후략)」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기사 본문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제목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부정수급자가 국외 체류자임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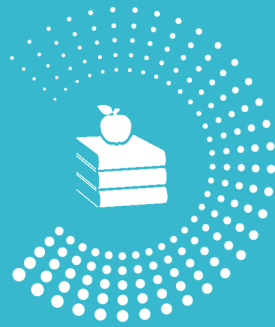
외국인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제목을 사용하였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제 3 부

시정권고 전체 목록



시정권고 전체 목록

의결번호	제2020-1호	언론사명	(주)펜앤드마이크
대상 보도	펜앤드마이크 2019년 11월 21일 사회면 「고려대는 '조민 입학취소' 미적지근, 연세대는 '조○ 검찰조사' 불응... '조국 가족 비리' 덮어주기도 라이벌?」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의 아들 초상과 실명을 공개하였다. 비록 조국 전 장관이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해당 보도가 공적 관심 사안과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사인(私人)인 아들의 초상과 성명을 공개한 것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2020-1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5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2호	뉴스코리아	1월 7일	정치면	"조국아들 인턴증명 허위발급"...한국당, 최강욱 靑비서관 고발	뉴스통신
제2020-3호	뉴스프리존	1월 7일	사회면	최강욱 靑비서관 "소환불응때 실명 적시" 협박... 檢 "소환 불응땐 공소장에 실명 명시 협박"	인터넷신문
제2020-4호	뷰스앤뉴스	1월 7일	정치면	곽상도 "최강욱, 조국 아들 허위인턴 발급 혐의로 고발"	인터넷신문
제2020-5호	인터넷 스페셜 경제	2019년 12월 23일	정치면	② [송년특집-2019 정치권 하반기 결산] 조국으로 시작해 조국으로 끝나는 文 정권 하반기	인터넷신문
제2020-6호	쿠키뉴스	1월 7일	-	한국당, '조국 아들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 발급' 최강욱 靑 공직기강비서관 고발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0-7호	언론사명	(주)남도일보
대상보도	인터넷 남도일보 2019년 12월 5일 뉴스면 「전남 ○○○고 감독 폭언 논란」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p>위 기사는 전남의 모 ○○고등학교 감독이 학생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일삼아 논란이 일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해당 학교명 및 직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제2020-7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8호	호남일보	2019년 12월 16일	10면	“○○○고 감독교사, 학생들에 막말 일삼아”	지역일간지
제2020-9호	아시아경제닷컴	2019년 12월 12일	사회면	○○○고 교사, 학생에게 욕설·상습 폭언 의혹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0-10호	언론사명	(주)씨비에스아이
대상보도	노컷뉴스 2019년 11월 26일 사회면 「구하라 죽음, 경기 관전하듯 방관한 사회 책임 크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 (보도 윤리)		
권고사항	언론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침해하는 보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p>위 기사는 가수 구하라 씨의 자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크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면서 기사내용과 관계없는 모 인터넷 게시판 내 망자와 고(故) 노무현 전(前)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영정사진을 합성한 사진을 게재하였다.</p> <p>이러한 내용을 보도를 통해 전달하는 것은 고인들에 대한 추모 감정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도윤리 준수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의결번호	제2020-11호	언론사명	(주)내외뉴스
대상보도	내외방송 2019년 12월 9일 사회면 「강용석, 오늘 '성폭행 혐의'로 김건모에 고소장 제출 [전문]」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 (성관련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언론은 성행위를 현저하게 노골적으로 묘사한 내용으로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유명 가수인 김건모의 성폭행 혐의로 인한 고소사건을 다루면서 사건의 과정이 지나치게 선정적이고 자세히 묘사되어 있는 피해자의 공식입장 전문을 게재하였다. 이는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고 성행위를 현저하게 노골적으로 묘사한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2020-11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3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12호	조선닷컴	2019년 12월 9일	연예면	강용석, 김건모 성폭행 혐의 고소 "피해자 의사 반해 강제 성행위" [공식입장]	인터넷신문
제2020-13호	STN SPORTS	2019년 12월 9일	연예면	강용석 "김건모 유희주점서 접대부 강간...성폭행 혐의 고소" [전문]	인터넷신문
제2020-14호	포스트저널	2019년 12월 9일	연예면	강용석, '성폭행 의혹' 김건모 검찰에 고소...김건모 "사실무근 법적 대응"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0-15호	언론사명	(주)에스티엔
대상보도	STN SPORTS 2019년 12월 18일 연예면 「[st&포커스] "물건 작았다" 김건모 향한 도 넘은 폭로...진실을 넘어선 가십」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 (성관련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결번호	제2020-15호	언론사명	(주)에스티엔
이유	<p>위 기사는 유명 가수인 김건모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다루면서 가수의 내밀한 특정 부위에 대해 피해자가 묘사한 표현을 그대로 전달하고 이를 특히 기사 제목으로 사용하는 등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p> <p>이는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제2020-15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1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16호	오픈 디스크스	2019년 12월 18일	인플루 언서면	"피아노 옆 쇼파에 누워 성기 보여줘... 작았다" 김건모 "3번째" 피해 주장 나왔다 (영상)	인터넷신문
제2020-17호	싱글리스트	2019년 12월 18일	사회면	김건모에 '성추행 피해 주장' 女 "본인 바지내리고 좋아하냐고" 추가폭로	인터넷신문
제2020-18호	뉴시스	2019년 12월 18일	연예면	김건모 둘러싼 성추행 또 폭로... "선정성 경계해야"	뉴스통신
제2020-19호	놀라운뉴스	2019년 12월 18일	HUMOR /INFO면	신체적 비밀 강제 폭로당한 김건모 화제	인터넷신문
제2020-20호	스타뉴스	2019년 12월 17일	엔터테인먼트면	'가세연', 김건모 추가 성추행 폭로.. 피해자 인터뷰	인터넷신문
제2020-21호	스타투데이	2019년 12월 18일	-	가세연, 김건모 세번째 피해자 인터뷰 공개 "작업실서 지퍼 내려..."	인터넷신문
제2020-22호	인터넷 스포츠한국	2019년 12월 17일	-	"김건모, 작업실 불러 지퍼 내렸다" 가로세로연구소, 3차 피해자 공개	인터넷신문
제2020-23호	시사플러스	2019년 12월 18일	연예면	김건모, 3번째 피해자의 추가 폭로 "바지 지퍼 열어 본인 XX 보여줘"	인터넷신문
제2020-24호	아시아경제닷컴	2019년 12월 18일	일반면	'무고 고발' 김건모 강수에도 더 자극적으로 이어지는 성추행 폭로	인터넷신문
제2020-25호	엑스포츠뉴스	2019년 12월 18일	가요면	"바지 지퍼 열고 보여줘" 세 번째 피해 여성 등장...김건모, 희대의 성추문 ing [종합]	인터넷신문
제2020-26호	엠케이스포츠 (MK스포츠)	2019년 12월 18일	-	김건모 3차 피해자 '작업실에서 바지 지퍼 내렸다' 폭로 [MK 이슈]	인터넷신문
제2020-27호	위키트리	2019년 12월 17일	엔터면	김건모 피해 주장 여성 "피아노 옆쪽 쇼파에 누워 성기 보여줬다"	인터넷신문

▶ 제2020-15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1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28호	이코리아	2019년 12월 18일	사회면	“김건모에게 당했다” 세번째 여성 등장	인터넷신문
제2020-29호	인사이트	2019년 12월 17일	엔터테인먼트면	김건모 세 번째 피해 주장 여성 “바지 지퍼 열고 본인 것 보여줬다”	인터넷신문
제2020-30호	인터넷 국민일보	2019년 12월 18일	사회면	“소파에서 본인 걸 보여주고...” 김건모 세번째 피해자의 말	인터넷신문
제2020-31호	인터넷 세계일보	2019년 12월 18일	연예면	김건모 성 추문 이어지자 누리꾼 일각 젠더 이슈화 “술집아가 미투하는 시대”	인터넷신문
제2020-32호	인터넷 전남일보	2019년 12월 18일	TV·연예·바둑면	강용석 가세연, 김건모 둘러싼 성추행 또 폭로	인터넷신문
제2020-33호	투스타뉴스	2019년 12월 18일	셀럽면	김건모, 3번째 피해자의 추가 폭로 “바지 지퍼 열어...”	인터넷신문
제2020-34호	e머니에스(e money S)	2019년 12월 17일	연예/스포츠면	김건모 3번째 피해자, ‘가세연’ 인터뷰 “바지내려 보여주기도”	인터넷신문
제2020-35호	sportschosun.com	2019년 12월 17일	연예면	‘가세연’ 측, 김건모 피해 추가 폭로 “바지 지퍼 열어 본인 것 노출”[종합]	인터넷신문
제2020-36호	위키트리	2019년 12월 22일	엔터면	“여자들과 합석하면...” ‘무도’ 출연했던 김건모 ‘절친 가수’가 한 말 (영상)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0-37호	언론사명	(주)소셜뉴스
대상보도	위키트리 2019년 11월 26일 사회면 「“XX 빠는 거 아니냐” 여자 동기들 ‘집단 성희롱’한 ○○○학교 남자 생도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 (성관련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학교 일부 남학생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여자 동기들을 대상으로 한 성적 발언을 고발한 게시물의 상당 부분을 게재하여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을 독자들에게 노출하였다. 이는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2020-37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4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38호	부산닷컴	2019년 11월 25일	사회면	○○○학교 男생도 단독방, 성희롱 발언에도 솜방망이	인터넷신문
제2020-39호	인터넷 경향신문	2019년 11월 25일	사회면	○○○학교에서도 '단독방 성희롱' 발생... "X리동절" "화장해도 여드름 자국"	인터넷신문
제2020-40호	인터넷 국민일보	2019년 11월 25일	시사면	또 적발된 '단독방 성희롱'... 이번엔 ○○○학교 男생도들	인터넷신문
제2020-41호	인터넷 서울신문	2019년 11월 25일	사회 최선면	○○○학교 단독방서 여생도·상관 성희롱 논란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0-42호	언론사명	(주)인사이트컴퍼니
대상보도	인사이트 2019년 12월 13일 사건사고면 「"옆에 임신 시키자"···교양 수업 때마다 단독방 켜 옆자리 여학생 성희롱한 ○○대 남학생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 (성관련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특정 대학 남학생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같은 교양 수업을 듣는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적 발언을 고발한 게시물의 상당 부분을 게재하여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을 독자들에게 노출하였다. 이는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2020-42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43호	허핑턴포스트코리아 (The Huffingtonpost Korea)	2019년 12월 17일	보이스면	○○대학교 남학생 17명이 같은 수업 듣는 학생들 상대로 나눈 대화들 (이미지)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0-44호	언론사명	임준협(놀라운뉴스)
대상보도	놀라운뉴스 2019년 11월 29일 NEWS면 「허경영 밀회 녹취록 공개 “가수 최사랑과 XXX”」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 (성관련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언론은 성행위를 현저하게 노골적으로 묘사한 내용으로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모 당 대표와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폭로한 녹취내용 중 성행위 묘사 등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이 독자들에게 노출되도록 하였다. 이는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고 성행위를 현저하게 노골적으로 묘사한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의결번호	제2020-45호	언론사명	한겨레신문(주)
대상보도	인터넷 한겨레 2019년 12월 30일 전국면 「파출소에서 경찰이 극단적 선택」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 (자살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나이, 소속, 직위, 근무지 등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은 보도는 자살자 및 가족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2020-45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9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46호	인터넷 중앙일보	2019년 12월 29일	-	파출소 혼자 근무하던 40대 경찰관 총상 입고 숨진채 발견	인터넷신문



▶ 제2020-45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9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47호	세계일보	2019년 12월 30일	8면	혼자 파출소 지키던 경찰 숨진 채 발견	중앙일간지
제2020-48호	인터넷 세계일보	2019년 12월 30일	사회면	홀로 근무하던 경찰 숨진 채 발견... 극단적 선택 추정	인터넷신문
제2020-49호	경남매일	2019년 12월 31일	4면	진해서 파출소 근무 경찰관 총상 숨져	지역일간지
제2020-50호	인터넷 경남매일	2019년 12월 30일	사회면	진해서 파출소 근무 경찰관 총상 숨져	인터넷신문
제2020-51호	뉴스핌통신	2019년 12월 29일	전국면	파출소 근무하던 경찰관 총상 입고 숨진 채 발견	뉴스통신
제2020-52호	아시아투데이AS IATODAY닷컴	2019년 12월 29일	사회면	파출소서 혼자 근무하던 경찰관 머리 총상 입고 숨진채 발견	인터넷신문
제2020-53호	e머니에스 (e money S)	2019년 12월 30일	정치/사회면	홀로 근무하던 40대 경찰관 머리 총상 입고 숨진 채 발견	인터넷신문
제2020-54호	ilyoseouli	2019년 12월 30일	경남면	혼자 근무하던 40대 경찰관 머리 총상 입고 숨진 채 발견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0-55호	언론사명	(주)인사이트컴퍼니
대상보도	인사이트 2019년 12월 19일 동물면 「“경기도 시흥서 온몸에 ‘화상’ 입고 둔기에 맞은 채 떠돌아다니던 강아지 ‘유미’를 도와주세요”」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 (충격·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온 몸에 화상 입은 개의 사진을 게재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의결번호	제2020-56호	언론사명	파이낸셜뉴스신문(주)
대상보도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2019년 12월 5일 반려동물면 「동물자유연대 “잔혹한 길고양이 토막살해사건 발생..고발조치”」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 (충격·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고양이가 토막난 채 죽어있는 모습을 게재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의결번호	제2020-57호	언론사명	(주)인사이트컴퍼니
대상보도	인사이트 2019년 11월 23일 사건사고면 「“차에 치여 날아갔는데 ‘살짝 스쳤다’고 진술했다”는 8살 어린이 교통사고 CCTV 영상」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 (충격·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횡단보도에서 아이가 차에 치이는 모습의 영상을 그대로 게재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의결번호	제2020-58호	언론사명	(주)뉴스1
대상보도	뉴스1코리아 2019년 12월 12일 월드면 「“트럼프, 북한 아닌 남한을 협박하고 있다”-美언론」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뉴스통신		



의결번호	제2020-58호	언론사명	(주)뉴스1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 (여론조사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국민적 관심사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에는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주요 질문내용 등을 밝혀야 한다.		
이유	<p>위 기사는 국민적 관심사인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면서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을 밝히지 않았다.</p> <p>이러한 보도는 독자들에게 해당 조사결과와 신뢰성과 객관성을 판단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제2020-58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59호	Queen	2019년 12월 13일	정치면	美 외교전문지 “트럼프, 북한 아닌 남한 협박...외교적 실패 귀결 될수도”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0-60호	언론사명	(주)동아닷컴
대상보도	동아닷컴 2019년 12월 11일 IT/의학면 「○○○, ‘○○○ 클리닉’으로 변경」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 (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p>위 기사는 특정 의료기관의 위치 등 홍보성 정보를 게재하였고,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독자로 하여금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p> <p>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0호,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0호 및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제2020-60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0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61호	동아일보	2019년 12월 11일	C04면	○○○, '○○○ 클리닉'으로 변경	중앙일간지
제2020-62호	인터넷 서울신문	2019년 12월 5일	-	네트워크 병원 '○○○ 클리닉' 강남본점 개원	인터넷신문
제2020-63호	인터넷 중앙일보	2019년 12월 2일	라이프 스타일면	네트워크 병원 '○○○ 클리닉' 강남본점 개원...9일 ○○점, 20일 ○○○점 오픈	인터넷신문
제2020-64호	라포르시안	2019년 12월 5일	의료와 사회면	○○○의원 개원, 피부질환·미용성형 분야 나눠 진료	인터넷신문
제2020-65호	오가닉라이프 신문	2019년 11월 28일	4차산업 경제면	○○○의원 개원, 여드름치료와 피부 미용성형 중점	인터넷신문
제2020-66호	Queen	2019년 12월 4일	권경제면	시흥시 ○○○의원 개원, 피부치료와 미용 중점	인터넷신문
제2020-67호	메디칼트리뷴	2019년 12월 20일	-	피부과 ○○○ 의원 대전점 개원	인터넷신문
제2020-68호	메디칼타임즈	2019년 12월 27일	병원·개 원가면	"따뜻한 온돌방으로 차별화...환자도 의료진도 행복"	인터넷신문
제2020-69호	인터넷 강원일보	2019년 12월 17일	라이프면	[우리지역 병·의원]의원급 중 최초 전문의 4인 진료 척추·관절 치료 최신 설비 갖춰	인터넷신문
제2020-70호	대전일보닷컴	2019년 11월 26일	라이프면	지역의사들 토의·협업 통해 환자쏠림 막아야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0-71호	언론사명	임준협(놀라운뉴스)
대상보도	놀라운뉴스 2020년 1월 14일 NEWS면 「제목없음」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p>위 기사는 백화점 내 패스트푸드점에서 한 여성이 보안요원을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그대로 게재하면서 보안요원의 초상, 성명 및 여성의 초상을 공개하여 당사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p> <p>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의결번호	제2020-72호	언론사명	(주)조선일보사
대상보도	조선닷컴 2020년 2월 5일 사건사고면 「○○百 ○○○ 지점장 아파트에서 우크라이나 여성 댄서 숨진채 발견」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생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p>위 기사는 한국의 특정 백화점 해외 지점장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우크라이나 여성이 숨진채 발견됐다고 보도하면서 해당 아파트 거주자의 소속, 직책, 나이, 파견 연도 등 신원과 사고 정황을 공개하여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p> <p>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제2020-72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9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73호	조선일보	2월 5일	14면	○○百 ○○○ 지점장 아파트에서 우크라이나 여성 댄서 숨진채 발견	중앙일간지
제2020-74호	무등일보	2월 6일	8면	○○百 ○○○ 지점장 숙소서 20대 현지 여성 숨진 채 발견	지역일간지
제2020-75호	뉴스1코리아	2월 4일	국제면	○ ○○쇼핑 지점장 숙소서 20대女 나체로 숨진 채 발견	뉴스통신
제2020-76호	뉴스스	2월 5일	국제면	○○百 ○○○ 지점장 숙소서 현지 여성 숨진 채 발견	뉴스통신
제2020-77호	연합뉴스	2월 4일	최신뉴스면	"○○○ ○○쇼핑 지점장 아파트서 현지 20대여성 숨진 채 발견"	뉴스통신
제2020-78호	뉴스락 (NewsLock)	2월 5일	경제면	○○○ ○○쇼핑 주재원 자택서 우크라이나 20대女 숨져...왜?	인터넷신문
제2020-79호	데이터숨	2월 6일	경제뉴스면	○○백화점 ○○○ 지점장 숙소 욕조서 20대 여성 숨져...마약 가능성 대두	인터넷신문
제2020-80호	인터넷 데일리한국	2월 5일	글로벌면	○○쇼핑 ○○○ 지점장 숙소서 무슨 일아...현지女 숨진채 발견	인터넷신문
제2020-81호	디스패치뉴스	2월 4일	세면	"○○○ ○○쇼핑 지점장 아파트서 현지 20대여성 숨진 채 발견"	인터넷신문
제2020-82호	매경닷컴	2월 4일	국제면	"○○○ ○○쇼핑 지점장 아파트서 현지 20대여성 숨진 채 발견"	인터넷신문

▶ 제2020-72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9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83호	부산닷컴	2월 5일	사회면	○○○ ○○플라자 한인 자점장 아파트서 20대 우크라이나 여성 숨진 채 발견	인터넷신문
제2020-84호	아시아경제닷컴	2월 5일	국제면	○○○ ○○백화점 자점장 숙소서 20대 여성 숨진 채 발견	인터넷신문
제2020-85호	아시아타임즈	2월 5일	생활경제면	○○쇼핑 ○○○ 자점장 아파트서 현지 여성 나체로 숨진채 발견	인터넷신문
제2020-86호	에이티엔뉴스	2월 5일	사회면	러 ○○쇼핑 자점장 숙소서 20대女 나체로 숨진 채 발견	인터넷신문
제2020-87호	여권뉴스	2월 4일	사회면	○○쇼핑 ○○○ 자점장 숙소...20대女 나체로 숨진 채 발견	인터넷신문
제2020-88호	위키트리	2월 5일	월드면	○○백화점 해외간부 숙소서 외국여성이 발견됐다, 별거벗은 시신으로	인터넷신문
제2020-89호	인터넷 국민일보	2월 5일	시사면	○○○ ○○플라자 자점장 아파트서 20대 여성 사망	인터넷신문
제2020-90호	인터넷 뉴스엔뷰	2월 5일	사회면	러 ○○쇼핑 자점장 숙소에서 20대 여성 숨진 채 발견	인터넷신문
제2020-91호	인터넷 문화일보	2월 5일	국제면	○○百 ○○○ 자점장 숙소서 20대女 숨진채 발견	인터넷신문
제2020-92호	인터넷 서울경제	2월 4일	국제면	“○○○ ○○쇼핑 자점장 숙소서 ○○○ 여성 숨진 채 발견”	인터넷신문
제2020-93호	인터넷 서울신문	2월 4일	국제 최신면	“○○○ ○○쇼핑 자점장 아파트서 현지 20대여성 숨진 채 발견”	인터넷신문
제2020-94호	인터넷 세계일보	2월 4일	국제면	○○○ ○○쇼핑 한국인 자점장 자택서 우크라이나 여성 숨진 채 발견	인터넷신문
제2020-95호	인터넷 주택건설신문	2월 5일	산업면	○○百 ○○○ 자점장 숙소서 현지 여성 숨진 채 발견	인터넷신문
제2020-96호	인터넷 중앙일보	2월 4일	국제면	○○○ ○○쇼핑 자점장 아파트 옥실서 현지 20대여성 사망	인터넷신문
제2020-97호	인터넷 한국일보	2월 4일	국제면	국내 백화점 ○○○ 주재원 숙소서 20대 현지 댄서 숨진 채 발견	인터넷신문
제2020-98호	증권경제신문	2월 5일	산업면	○○百 ○○○ 자점장 숙소서 현지 20대女 숨진 채 발견... 범죄 흔적 없어	인터넷신문
제2020-99호	쿠키뉴스	2월 5일	-	○○○ ○○백화점 자점장 숙소에서 우크라이나 여성 숨진 채 발견	인터넷신문
제2020-100호	투스타뉴스	2월 5일	-	○○쇼핑 자점장 집서 우크라 20대 女 알몸 시신 발견 (+해명)	인터넷신문
제2020-101호	e글로벌 이코노믹	2월 5일	글로벌비즈면	○○백화점 ○○○ 자점장 숙소에서 현지 여성 숨진 채 발견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0-102호	언론사명	(주)미디어인그램
대상보도	오픈 디스커스 2019년 12월 26일 Net.이슈면 「딸을 집단 성폭행한 '단역배우 두 자매 사건' 가해자 12명 '신상 공개'한 어머니 유튜브 (영상)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p>위 기사는 딸이 집단 성폭행을 당한 후 자살했다는 내용을 공개하고 있는 단역배우 모친의 유튜브 영상을 그대로 게재하여 해당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초상 및 성명, 자택 주소를 노출함으로써 그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p> <p>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제2020-102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103호	위키트리	2019년 12월 26일	사회면	“지옥불에 떨어질 거다” 딸을 집단 성폭행한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어머니 (영상)	인터넷신문
제2020-104호	인사이트	2019년 12월 26일	엔터테인먼트면	억울하게 죽은 단역배우 딸들 위해 가해자 '신상' 전부 공개한 유튜브 어머니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0-105호	언론사명	김경민(족구뉴스)
대상보도	족구뉴스 2020년 2월 20일 종합뉴스면 「한상헌 하차설, 아나운서 부인, 딸, 사진?, 잠자리, 아내와 불화 고백?, 상 처를... 받아... '울먹'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p>위 기사는 특정 아나운서가 유흥주점에서 거액의 협박을 당한 남자라는 한 유튜브 채널의 주장을 보도하면서 해당 아나운서의 미성년자 자녀 초상 및 성명을 게재하여 자녀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p> <p>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제2020-105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106호	이비엔(EBN)뉴스센터	2월 19일	종합면	한상헌 아나운서 '딸바보'... '일신상의 이유' 어떨 때 쓰이나, 주의점은	인터넷신문
제2020-107호	인터넷 세계일보	2월 20일	연예면	한상헌, 사생활 논란 탓? 비공개 SNS 계정 돌연 '폐쇄'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0-108호	언론사명	(주)뉴스와사람들
대상보도	뉴스프리존 2020년 2월 18일 사회일반면 「스트레이트, “나경원은 5개월 동안 10여차례 고발에도 수사안해..?”」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p>위 기사는 나경원 전(前)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딸과 아들의 실명을 공개하였다. 비록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해당 보도가 중대한 공적 관심 사안과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사인(私人)인 자녀들의 성명을 공개한 것은 당사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p> <p>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제2020-108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109호	국민뉴스	2월 19일	뉴스종합면	누가 왜? 나경원 아들 예일대 입학·딸 해외 연수 발 벗고 뛰었나 10여차례 고발에도 태산처럼 꿈쩍 않는 윤석열 검찰!!	인터넷신문
제2020-110호	고발뉴스닷컴	1월 21일	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면	안진걸 “나경원 10차 고발, 또 검찰 수사 안하면 경찰에 고발”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0-111호	언론사명	(주)아시아경제
대상보도	아시아경제닷컴 2020년 1월 23일 사회면 「진중권 “최강욱, 추태 그만 부리고 물러나라...결백은 법정서 증명하시길”」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0-111호	언론사명	(주)아시아경제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p>위 기사는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의 아들 실명을 공개하였다. 비록 조국 전 장관이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해당 보도가 공적 관심 사안과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사인(私人)인 아들의 성명을 공개한 것은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p> <p>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제2020-111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3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112호	매일일보	1월 8일	6면	한국당, 최강욱 靑 공직기강비서관 고발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혐의	지역일간지
제2020-113호	인터넷 매일일보	1월 7일	정치면	한국당, 최강욱 靑 공직기강비서관 고발...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혐의	인터넷신문
제2020-114호	일간투데이	1월 9일	6면	與 영입인재 오영환 조국발언에 야권 못매	지역일간지
제2020-115호	인터넷 일간투데이	1월 8일	정치면	민주당 영입 인재 오영환 '조국' 발언에 야권 못매	인터넷신문
제2020-116호	뉴데일리	1월 14일	포토·정치·사회면	[영상] "조국 일가 살리자고, 100년 교육 죽일 셈인가"...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의 절규	인터넷신문
제2020-117호	뷰스앤뉴스	1월 23일	사회면	진중권 "추미애 막 나가네요, 정권붕괴 말기에나 일어날 현상"	인터넷신문
제2020-118호	인터넷 국민일보	1월 8일	시사면	민경욱, '관행 발언' 오영환에 "영입돼서 고생이 많다"	인터넷신문
제2020-119호	인터넷 금강일보	1월 8일	정치면	오영환 관행 발언에... 민경욱 "대리시험이 관행?"	인터넷신문
제2020-120호	인터넷 매일신문	1월 7일	정치면	한국당, 최강욱 靑비서관 고발 "공범·청탁금지법 위반"	인터넷신문
제2020-121호	인터넷 서울경제	2월 7일	사회면	진중권 "조국 자녀 스펙 모두 위조" vs 김호창 "입시 비리 절대 아냐"	인터넷신문
제2020-122호	인터넷 충청신문	1월 8일	정치면	오영환 비판한 민경욱 "엑스맨 잘한다" 야권 비판 이어져	인터넷신문
제2020-123호	인터넷뉴스신문고	1월 1일	사회면	'조국' 미 조지워싱턴대 업무방해 기소는 '검찰 흑역사로 남을것'	인터넷신문
제2020-124호	인터넷 세계일보	1월 24일	사회면	진중권 "최강욱 기소는 날치기? 윤석열 고발은 펌치기"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0-125호	언론사명	(주)세계일보
대상 보도	인터넷 세계일보 2020년 1월 28일 정치면 「'미투 논란' 원종건 누구? 과거 '소년 심청이'라고 불린 사연」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p>위 기사는 특정 정당의 영입인재가 데이트 폭력 가해자로 지목 당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모친의 초상과 성명, 나이를 게재하였다. 비록 해당 보도가 중대한 공적 관심 사안과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해당 사건과 무관하고 사인(私人)인 모친의 초상과 성명, 나이를 공개한 것은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p> <p>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제2020-125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6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126호	스포츠투데이M	1월 28일	연예면	원종건 누구 #민주당 영입인재 #‘느낌표’ 소년 심청이 #데이트 폭력 의혹	인터넷신문
제2020-127호	족구뉴스	1월 28일	종합뉴스면	원종건 미투 의혹, 어머니 눈물, 심경?, 프로필, 학력?, 가스라이팅?, 진실은?... '충격'	인터넷신문
제2020-128호	문화뉴스	1월 28일	정치면	'미투 파문' 민주당 영입인재 '원종건' 누구? 원종건 학력, 과거 '엄지 장갑' 프로젝트 진행	인터넷신문
제2020-129호	로톡뉴스	1월 28일	이슈면	"원종건에 가스라이팅 당했다" 폭로 모두 사실이어도 처벌은 불가능, 대체 왜?	인터넷신문
제2020-130호	브레이크뉴스 (break news)	1월 28일	사회면	'미투 폭로' 가해자 원종건... "민주당 인재 영입 철회해야"	인터넷신문
제2020-131호	인터넷 금강일보	1월 29일	방송/연예면	페미니즘이란?·원종건 "자격 반납하겠다" 성폭행과 가스라이팅 등 미투 논란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0-132호	언론사명	녹색경제신문(주)
대상보도	녹색경제신문 2020년 1월 27일 정치면 「민주당 ‘청년 영입인재 2호’ 원종건, ‘미투 폭로’ 파문... “성노리게 취급·여혐·가스라이팅 당했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 (성폭력피해자 보호), 제13조 (성관련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보도하거나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특정 정당의 영입인재가 데이트 폭력 가해자로 지목 당한 사건을 전하면서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폭로한 인터넷 게시물 전문을 게재하여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고 해당 사건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2020-132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6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133호	인터넷 시사포커스	1월 27일	정치면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2호 원종건, ‘미투 폭로’ 터졌다... “성노리게 취급 당해”	인터넷신문
제2020-134호	인터넷 금강일보	1월 28일	사회면	“페미니즘 운운할 사람 아니다” ... 페미니즘 뜻 뭐길래?	인터넷신문
제2020-135호	인터넷환경일보	1월 27일	사회·문화면	원종건 발목 잡은 미투, 영입 철화說까지 확산.	인터넷신문
제2020-136호	펜앤드마이크	1월 27일	사회면	[단독] 민주당 영입인재 2호 원종건, ‘미투 폭로’ 터졌다...전 여자친구 “성노리게 취급 당해”	인터넷신문
제2020-137호	OBC 더원방송	1월 28일	정치일반면	민 영입인재 2호 원종건, 페미니즘의 역설 ‘미투 폭로’의 가해자?! 폭로’... “여혐, 가스라이팅”	인터넷신문
제2020-138호	인터넷뉴스신문고	2월 6일	사회면	‘원종건’ 굶어 부스럼(?)... 전 여친 “범죄행위 반드시 처벌시켜야”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0-139호	언론사명	유동임(세종의소리)
대상보고	세종의소리 2020년 1월 17일 사회면 「학생 상습 성추행..세종시 태권도사범 '법정 구속'」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 (성폭력피해자 보호), 제13조 (성관련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보도하거나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태권도장 내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사건에 대해 전하면서 가해자의 범행수법을 자세히 묘사하여 해당 사건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2020-139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140호	뉴스시	1월 18일	사회면	미성년 제자 상습 성폭행, 세종시 태권도 관장 법정구속	뉴스통신
제2020-141호	인터넷 뉴스엔뉴	1월 18일	사회면	세종 판 '미투' 태권도 관장, 미성년 제자 상습 성폭행...구속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0-142호	언론사명	김경민(족구뉴스)
대상보고	족구뉴스 2020년 1월 20일 종합뉴스면 「김건모 성추행 추가 폭로,가수 이설아?...아찔한 몸매?, 과감한 노출까지?」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 (성폭력피해자 보호)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보도하거나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유명 가수 김건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추가 폭로한 여성 가수의 과거 사진을 게재하면서 기사 제목 및 본문에 해당 사진 관련 선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는 성폭력피해자 보호에 미흡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의결번호	제2020-143호	언론사명	(주)미디어인그램
대상보고	오픈 디스커스 2020년 1월 28일 월드뉴스면 「“멀쩡해보였는데 몇초만에...” 갑자기 쓰러지는 우한 폐렴 환자들 (영상)」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 (보도 윤리)		
권고사항	언론은 객관적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진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하여 독자를 혼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한 남성이 길에서 쓰러지는 사진 및 영상을 게재하면서 그가 우한 폐렴 환자라고 보도하였다. 해당 사진 및 영상 속 인물이 우한 폐렴 환자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독자를 혼동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도 윤리 준수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2020-143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144호	TV조선	1월 24일	뉴스9면	'우한 폐렴'에 쓰러지는 환자들...中, 자금성 달고 봉쇄 도시 확대	방송

의결번호	제2020-145호	언론사명	(주)헤럴드
대상보고	헤럴드경제 2020년 1월 29일 05면 「상인들 “손님들 불안할까 마스크 안써요...복불복이죠 뭐”」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중앙일간지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 (차별 금지)		
권고사항	언론은 인종, 국적, 지역, 성별, 종교, 나이,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등을 이유로 편견적 또는 경멸적 표현을 삼가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중국인 밀집지역인 대림동 차이나타운을 스케치하는 보도를 하면서 중국인들의 비위생적인 행태가 즐비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는 특정 국적과 지역이 특별히 비위생적인 것처럼 여겨지도록 하여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의결번호	제2020-146호	언론사명	(주)인사이트컴퍼니
대상보도	인사이트 2020년 1월 30일 사회면 「‘우한 폐렴’ 유행인데 무상 보급한 마스크 안 쓰고 지하철서 대놓고 기침하는 노인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 (차별 금지)		
권고사항	언론은 인종, 국적, 지역, 성별, 종교, 나이,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등을 이유로 편견적 또는 경멸적 표현을 삼가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유행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지하철에서 기침을 하여 2차 전염 우려가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는 마스크 미착용자가 노인층에만 있는 것처럼 여겨지도록 하는 편향된 표현으로서 특정 연령대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의결번호	제2020-147호	언론사명	(주)미디어인그램
대상보도	오픈 디스커스 2020년 2월 6일 정치사회면 「“연쇄전염마” 신종 코로나 3번 확진자 남성에게 ‘감염’된 또다른 확진자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 (차별 금지)		
권고사항	언론은 인종, 국적, 지역, 성별, 종교, 나이,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등을 이유로 편견적 또는 경멸적 표현을 삼가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3번 확진자에 대해 보도하면서 기사 제목 등에서 ‘연쇄전염마’라는 경멸적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의도적으로 해당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것처럼 여겨지도록 하는 편향된 표현으로서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의결번호	제2020-148호	언론사명	(주)에이치앤씨텔레그래프
대상보도	데일리그리드 2020년 2월 19일 사회면 「[속보] 대구코로나, 확진자 발생? 경북대병원 응급실 폐쇄」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0-148호	언론사명	(주)에이치앤씨텔레그래프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 (차별 금지)		
권고사항	언론은 인종, 국적, 지역, 성별, 종교, 나이,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등을 이유로 편견적 또는 경멸적 표현을 삼가야 한다.		
이유	<p>위 기사는 대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대학병원 응급실이 폐쇄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면서 “대구코로나”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p> <p>비록 해당 지역에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할지라도 바이러스명에 특정 지역명을 붙여 사용하는 것은 해당 지역에 대한 혐오 및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제2020-148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3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149호	천지일보	2월 24일	3면	대구 코로나 진원지 '중국수학여행단' 의혹 확산	중앙일간지
제2020-150호	인터넷 천지일보	2월 21일	사회면	[단독] 대구, 코로나 진원지 '중국수학여행단' 의혹 확산... "정부가 문 열어두고 국민 탓"	인터넷신문
제2020-151호	인터넷 대구일보	2월 20일	교육일반면	<대구 코로나19> 대구 초중고교·유치원 전체 일주일 개학 연기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0-152호	언론사명	(주)머니앤밸류
대상보호	e머니에스(e money S) 2020년 2월 6일 생활문화면 「신조어 공부 안하면 틀딱인가요」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 (차별 금지)		
권고사항	언론은 인종, 국적, 지역, 성별, 종교, 나이,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등을 이유로 편견적 또는 경멸적 표현을 삼가야 한다.		
이유	<p>위 기사는 신조어 현상에 대해 보도하면서 기사 제목에 '틀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틀니딱딱'의 준말로 노인을 비하하는 용어이며 노인에 대한 경멸과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의결번호	제2020-153호	언론사명	(주)시민의소리
대상보도	인터넷시민의소리 2020년 1월 6일 오피니언면 「광주시 산하 기관 ‘공직기강 해이’ 도 넘었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 (차별 금지)		
권고사항	보도 과정에서 그 표현이 사안의 설명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한, 인종, 국적, 지역, 성별, 종교, 나이,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과도하게 보도하여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특정 지자체 산하 기관 내 기관장 및 임원, 직원 간 삼각관계 및 성추행 의혹 등에 대해 보도하면서 해당 직원에 대해 이혼녀인 30대 후반의 계약직 여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는 해당 사건을 보도하는 데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서 성별, 나이대, 이혼경력 등 세부사항을 보도하여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의결번호	제2020-154호	언론사명	(주)인사이트컴퍼니
대상보도	인사이트 2020년 2월 9일 사회면 「이웃집 남성과 말다툼 하다 가족들 앞에서 ‘성기’ 옮겨친 30대 여성」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 (성관련 보도), 제10조 (보도 윤리)		
권고사항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언론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침해하는 보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이웃 간 다툼 중에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을 전하면서 성추행을 묘사하는 것으로 보이는,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선정적 자료사진을 사용하였다. 이는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의결번호	제2020-155호	언론사명	(주)뉴스핌
대상보도	뉴스핌통신 2020년 2월 12일 대구경북면 「안동시, ‘여직원 성추행 의혹’ 간부공무원 중징계 요청」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뉴스통신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 (성관련 보도), 제10조 (보도 윤리)		



의결번호	제2020-155호	언론사명	(주)뉴스핌
권고사항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언론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침해하는 보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특정 시의 간부 공무원이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하면서 성추행을 묘사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선정적 자료사진을 사용하였다. 이는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의결번호	제2020-156호	언론사명	(주)인사이트컴퍼니
대상보도	인사이트 2020년 2월 16일 국제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날아가는 유모차 바라보며 비명 지르는 아기 엄마 (영상)」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 (충격·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갓난아이가 탄 유모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날아가는 영상을 그대로 게재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의결번호	제2020-157호	언론사명	(주)소셜뉴스
대상보도	위키트리 2020년 1월 19일 월드면 「“충격...”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다... 멕시코에서 벌어진 끔찍한 일」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 (충격·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멕시코에서 아동 성폭행범이 자경단에 의해 처형 당한 모습의 사진과 이에 대한 묘사를 상세히 게재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의결번호	제2020-158호	언론사명	(주)제민일보
대상 보도	인터넷 제민일보 2020년 1월 22일 연예면 「카라타 에리카, “한국 활동한다더니...이병헌과?” 가정 파탄 루머의 심각성 눈길」 제하의 보도		
매체 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 (기사 제목)		
권고 사항	언론은 기사 본문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왜곡된 제목 또는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제목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최근 일본 내 불륜설이 제기된 일본 여배우 카라타 에리카가 배우 이병헌이 소속된 국내 회사와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면서 마치 그녀가 이병헌과 불륜 상태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도록 제목을 왜곡되게 표현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언론의 신뢰성을 저하시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의결번호	제2020-159호	언론사명	김경민(족구뉴스)
대상 보도	족구뉴스 2020년 2월 6일 종합뉴스면 「오종혁 결혼 발표, 어머니, 교도소?, ‘고아로 살게해서 미안...’여자친구, 얼굴, 나이, 집안?」 제하의 보도		
매체 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 (기사 제목)		
권고 사항	언론은 기사 본문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왜곡된 제목 또는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제목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오종혁 씨의 모친이 교도소 봉사활동을 다니느라 오종혁 씨를 고아 아닌 고아처럼 살게 했다는 인터뷰 내용을 게재하면서 마치 모친이 교도소에서 복역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제목을 사용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언론의 신뢰성을 저하시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의결번호	제2020-160호	언론사명	추광규(인터넷뉴스신문고)
대상보도	인터넷뉴스신문고 2020년 2월 4일 사회면 「원종건, “A씨 자기야 나한테 자기 교추 동영상 있으,.”」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 (기사 제목)		
권고사항	언론은 기사 본문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왜곡된 제목 또는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제목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특정 정당의 영입인재가 데이트 폭력 가해자로 지목 당한 후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고 전하면서 성적 발언을 제목으로 사용하는 등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의결번호	제2020-161호	언론사명	(주)뉴스토마토
대상보도	뉴스토마토 2020년 2월 3일 04면 「소비자 66% “타다 금지법 반대”」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중앙일간지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 (여론조사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국민적 관심사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에는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주요 질문내용 등을 밝혀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국민적 관심사인 타다 금지법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조사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을 밝히지 않았다. 또한 여론 조사 결과에 부합하지 않은 왜곡된 제목을 사용하여 독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이러한 보도는 독자들에게 해당 조사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판단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의결번호	제2020-162호	언론사명	(주)씨비에스아이
대상보도	노컷뉴스 2020년 2월 26일 정치면 「[뒤끝작렬] '코로나 무능' 공세 펴는 野…메르스는 잇었나」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 (여론조사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국민적 관심사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에는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주요 질문내용 등을 밝혀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국민적 관심사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정부 대응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면서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을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는 독자들에게 해당 조사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판단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의결번호	제2020-163호	언론사명	(주)일요신문사
대상보도	일요신문 2019년 12월 27일 정치면 「친문 핵심부, 법무부 감찰·감사원 감사 '투트랙' 윤석열 노린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 (여론조사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국민적 관심사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에는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주요 질문내용 등을 밝혀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국민적 관심사인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 검토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면서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을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는 독자들에게 해당 조사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판단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의결번호	제2020-164호	언론사명	전영준(푸른한국닷컴)
대상 보도	푸른한국닷컴 2019년 12월 16일 법치면 「비례의식 확대, 이미 배부른 고양이에게 또 생선을 안겨주는 꼴」 제하의 보도		
매체 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 (여론조사 보도)		
권고 사항	언론은 국민적 관심사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에는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주요 질문내용 등을 밝혀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국민적 관심사인 국회의원 수 증가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을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는 독자들에게 해당 조사결과와 신뢰성과 객관성을 판단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의결번호	제2020-165호	언론사명	(주)내일신문
대상 보도	내일신문 2020년 1월 14일 08면 「시험대 오르는 70년 한미동맹」 제하의 보도		
매체 구분	중앙일간지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 (여론조사 보도)		
권고 사항	언론은 국민적 관심사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에는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주요 질문내용 등을 밝혀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국민적 관심사인 한미동맹 지지도 및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을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는 독자들에게 해당 조사결과와 신뢰성과 객관성을 판단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의결번호	제2020-166호	언론사명	(주)보건의신문사
대상보도	보건뉴스 2020년 2월 24일 병·의원면 「○○○정형외과병원, 캐논 MRI 밴티지 엘란 도입」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 (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p>위 기사는 특정 의료기관의 위치 등 홍보성 정보를 게재하였고,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독자로 하여금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p> <p>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0호,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0호 및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제2020-166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4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167호	경기뉴스통신	2월 28일	사회면	○○○정형외과병원, 캐논 MRI 밴티지 엘란 도입	인터넷신문
제2020-168호	뉴스클리어	2월 28일	사회면	○○○정형외과병원, 캐논 MRI 밴티지 엘란 도입	인터넷신문
제2020-169호	땡큐굿뉴스	2월 28일	사회면	○○○정형외과병원, 캐논 MRI 밴티지 엘란 도입	인터넷신문
제2020-170호	리버럴미디어	2월 29일	사회면	○○○정형외과병원, 캐논 MRI 밴티지 엘란 도입	인터넷신문
제2020-171호	세계 타임즈	2월 24일	건강/생활 정보면	○○○정형외과병원, 캐논 MRI 밴티지 엘란 도입	인터넷신문
제2020-172호	의료기기뉴스라인	2월 24일	의료기기면	○○○정형외과병원, 캐논 MRI 밴티지 엘란 도입	인터넷신문
제2020-173호	이(e)헬스통신	2월 24일	의료기기면	캐논메디칼, ○○○정형외과병원에 MRI '밴티지 엘란' 구축	인터넷신문
제2020-174호	사이언스엠디	2월 24일	병원면	○○○정형외과병원, 캐논 MRI 밴티지 엘란 도입	인터넷신문
제2020-175호	인터넷 의료일보 (Medical Daily)	2월 24일	의료기기면	○○○정형외과병원, 캐논 MRI 밴티지 엘란 도입	인터넷신문



▶ 제2020-166호와 법의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4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176호	인터넷 의학신문	2월 24일	다국적제약/ 의료기기면	캐논, 'MR 밴티지 엘란' ○○○정형외과병원 설치	인터넷신문
제2020-177호	인터넷 파이낸셜신문	2월 24일	기업면	○○○정형외과병원, 캐논 MRI 밴티지 엘란 도입...쾌적한 진료 공간 조성	인터넷신문
제2020-178호	마을기업신문	2월 18일	통합뉴스면	여성을 위한 암요양병원 ○○요양병원	인터넷신문
제2020-179호	보건뉴스	2월 12일	병·의원면	설계부터 시공까지 여성 위한다...'○○요양병원' 개원	인터넷신문
제2020-180호	수도권지역신문	2월 18일	통합뉴스면	여성을 위한 암요양병원 ○○요양병원	인터넷신문
제2020-181호	인터넷조은뉴스	2월 13일	로컬뉴스넷면	여성을 위한 암요양병원 ○○요양병원, 10일 개원... 본격 진료 시작	인터넷신문
제2020-182호	MTN(엠티엔)	2월 12일	산업면	여성을 위한 암병원 ○○요양병원 개원	인터넷신문
제2020-183호	인터넷 스포츠한국	2월 21일	라이프면	○○○성형외과, 안락한 서비스와 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이전	인터넷신문
제2020-184호	수도권지역신문	2019년 12월 3일	보도자료면	○○○병원, 대구의 중심 ○○○으로 확장 이전	인터넷신문
제2020-185호	수도권지역신문	2월 8일	오피니언면	서울시 금천구 암센터 확장오픈 완료된 ○○○요양병원	인터넷신문
제2020-186호	인터넷 시민일보	2월 6일	생활면	○○피부과의원 확장 오픈, 보다 폭넓은 진료 가능	인터넷신문
제2020-187호	오가너라이프신문	1월 31일	경제·산업면	○동 ○○○피부과, ○○○으로 확장 이전	인터넷신문
제2020-188호	인터넷 스포츠한국	1월 7일	라이프면	○○○정형외과, 개원...급성 손상에서 재활까지 종합적 치료 진행	인터넷신문
제2020-189호	인터넷 시민일보	2월 3일	생활면	○○○병원 ○○○ 원장, 협력 병원 '○○○외과' 진료	인터넷신문
제2020-190호	오에스이엔(OSEN)	2월 5일	생활일반면	[월간 OSEN+]부친 뜻을 기린 '○○기념병원', 하남시의 중심병원이 되다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0-191호	언론사명	(주)엑스포츠미디어
대상보도	엑스포츠뉴스 2020년 3월 23일 국내연예면 「가희, 발리 바닷가 방문 논란 사과 “어리석은 글 용서해주세요, 죄송” [★해시태그]」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p>위 기사는 유명가수가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발리의 바닷가를 방문했다가 누리꾼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미성년자인 자녀의 사진을 동의 없이 게재하여 자녀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p> <p>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제2020-191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3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192호	데일리스마트 경제	3월 23일	연예화제면	가희, 발리 바닷가 방문 논란 사과 “어리석은 글 용서해주세요, 죄송”	인터넷신문
제2020-193호	위키트리	3월 19일	엔터면	“애들 핑계는...” 근황 올린 가희에게 네티즌들이 발끈했다 (사진)	인터넷신문
제2020-194호	이포커스	3월 23일	엔터테인먼트면	가희, 아이와 바다서 즐기는 사진 공개했다... '후폭풍'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0-195호	언론사명	(주)디스패치뉴스그룹
대상보도	디스패치뉴스 2020년 3월 17일 세면 「수백억대 사기 친 ‘정○○ 전남편’ 김 모 씨 근황」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p>위 기사는 특정 연구자 전 남편의 사기 논란에 대해 보도하면서 성명 및 초상을 공개하여 일반인인 당사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p> <p>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제2020-195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6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196호	위키트리	3월 16일	엔터면	수백억 사기쳐 고소 당한 정○○ 전 남편, 말도 안 되는 행방	인터넷신문
제2020-197호	투스타뉴스	4월 1일	리뷰트면	[리뷰트] “홀렸다” 정○○ 전남편 김○○에게 당한 이유…도망 전날까지 ‘사기행각’	인터넷신문
제2020-198호	인터넷 스포츠서울	3월 17일	연예가화제면	“정○○ 전 남편 사기피해 연예인A, 신용불량자 돼” 유튜브 기자왕 ‘132억 사기편취’ 김○○ 공개수배	인터넷신문
제2020-199호	인터넷 금강일보	3월 31일	문화면	정○○ 근황과 전 남편 공개수배에는 어떤 사연이? “일하는 엄마, 아이들에게 항상 미안”	인터넷신문
제2020-200호	인터넷 세계일보	3월 16일	연예면	‘100억원대 사기 의혹’ 정○○ 전 남편, 미국 도주 주장 나와	인터넷신문
제2020-201호	헤럴드POP	3월 17일	방송면	[POP이슈] “유명 연예인도 피해” 정○○ 전 남편, 수백억 사기 후 美도피설..정○○도 고소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0-202호	언론사명	(주)연합뉴스
대상보도	연합뉴스 2020년 3월 4일 최신기사면 「코로나19로 비상인데...○○시 7급 공무원 근무시간에 골프」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뉴스통신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특정 지자체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하면서 당사자의 소속, 직무, 직급, 성, 나이 등 신원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공개하여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2020-202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2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203호	서울신문	3월 5일	12면	이 와중에... 근무시간 골프 친 ○○ 공무원	중앙일간지
제2020-204호	인터넷 서울신문	3월 5일	사건·사고면	[속보] ○○시 “근무시간 골프 관련 상급자들도 문책”	인터넷신문
제2020-205호	경북매일	3월 5일	7면	이 시국에...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골프	지역일간지
제2020-206호	인터넷 경북매일	3월 4일	사회면	이 시국에...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골프	인터넷신문
제2020-207호	대경일보	3월 6일	4면	○○시장 ‘근무시간 골프 직원’ 사과	지역일간지
제2020-208호	뉴데일리 대구경북본부	3월 4일	대구경북면	○○시 공무원, 코로나19 확산 중 골프...기강 해이 ‘도 넘었다’	인터넷신문
제2020-209호	매경닷컴	3월 4일	사회면	‘정신 나간 공무원’...○○시 청소차 운전기사 평일 골프 쳐	인터넷신문
제2020-210호	인터넷 경북일보	3월 4일	○○면	○○시 공무원, 코로나19 비상에 근무시간 골프 ‘물의’	인터넷신문
제2020-211호	인터넷 중앙일보	3월 4일	사회면	코로나19 확산하는데...근무시간에 골프친 공무원 ‘중징계 방침’	인터넷신문
제2020-212호	조세일보	3월 4일	사회면	○○시청 공무원, ‘코로나19’ 비상사태 중 골프장 찾아	인터넷신문
제2020-213호	청년일보	3월 4일	Y-정치면	“비상시국에 평일골프?”...경북 ○○시청 공무원 ‘만행’	인터넷신문
제2020-214호	인터넷 한국경제	3월 4일	사회면	코로나19 사태인데...물래 골프장 간 ‘정신 나간 공무원’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0-215호	언론사명	이데일리(주)
대상보도	인터넷 이데일리 2020년 3월 24일 IT·인터넷면 「[단독] ‘n번방’ 연관 검색어 차단 안하는 구글..지우기 돌입한 누리꾼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 (보도 윤리)		
권고사항	언론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침해하는 보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로 추정되는 자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검색어 및 검색 결과 캡처 사진을 공개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보도를 통해 상세히 전달하는 것은 피해자로 추정되는 자의 2차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도 윤리 준수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의결번호	제2020-216호	언론사명	임준협(놀라운뉴스)
대상보도	놀라운뉴스 2020년 3월 23일 NEWS면 「울산에 터미네이터가 발견됐다는 속보(나체로 활보 및 폭력)」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 (보도 윤리)		
권고사항	언론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침해하는 보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p>위 기사는 한 남성이 나체 상태로 도로를 활보하며 폭력을 행사한 사건을 전하면서 전라의 모습이 담긴 사진 및 영상을 그대로 게재하였다.</p> <p>이는 해당 사건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여 사회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도 윤리 준수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제2020-216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217호	오픈 디스크스	3월 23일	네티즌화제면	[영상] 울산에 출현한 터미네이터 '차 안에 사라코너 있다'	인터넷신문
제2020-218호	인터넷 일요시사	3월 24일	일요시사TV면	<일요시사TV> '울산 터미네이터' 도로 한복판에 나타난 나체 남성, 대체 무슨 일이?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0-219호	언론사명	(주)머니앤밸류
대상보도	e머니에스(e money S) 2020년 3월 6일 부동산시장동향면 「'대구 코로나19 사태' 아파트 거래량 폭· 집값 하락세」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 (차별 금지)		
권고사항	언론은 인종, 국적, 지역, 성별, 종교, 나이,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등을 이유로 편견적 또는 경멸적 표현을 삼가야 한다.		
이유	<p>위 기사는 대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집값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대구 코로나19 사태'”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p> <p>비록 해당 지역에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할지라도 바이러스명에 특정 지역명을 붙여 사용하는 것은 해당 지역에 대한 혐오 및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의결번호	제2020-220호	언론사명	(주)인사이트컴퍼니
대상보도	인사이트 2020년 3월 28일 사회면 「'진상'이라는 이미지 각인 시킨 중국인들의 역대급 민폐 사건 4가지」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 (차별 금지)		
권고사항	보도 과정에서 그 표현이 사안의 설명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한, 인종, 국적, 지역, 성별, 종교, 나이,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과도하게 보도하여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중국에 대한 감정이 악화되고 있다고 전하면서 수년전 발생한 중국인 관광객 관련 사건사례들을 부각하여 보도하였다. 이는 특정 국가와 국민에 대한 혐오 및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의결번호	제2020-221호	언론사명	(주)천지일보
대상보도	인터넷 천지일보 2020년 3월 5일 사회면 「“허리춤 만지며 성희롱”… 체육계 종사자 ‘직장 내 괴롭힘’ 여전」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 (보도 윤리), 제13조 (성관련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언론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침해하는 보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작년부턴 시행되었으나 체육단체 및 기관 내 괴롭힘이나 성폭력 피해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선정적 자료사진을 사용하였다. 이는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의결번호	제2020-222호	언론사명	(주)인사이트컴퍼니
대상보도	인사이트 2020년 3월 17일 핫이슈면 「2년 동안 고등학교 침입해 여학생 스타킹으로 음란 행위 한 20대 남성」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 (보도 윤리), 제13조 (성관련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언론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침해하는 보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한 대학생이 여자고등학교에 침입해 음란행위를 지속적으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을 보도하면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선정적 자료사진을 사용하였다. 이는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의결번호	제2020-223호	언론사명	(주)미디어인그램
대상보도	오픈 디스커스 2020년 3월 25일 Net.이슈면 「"N번방 내가 봤냐, 참X들아" 글 공유했다가 사과한 10대 배우 김○○」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6조 (폭력 묘사 등), 제10조(보도 윤리)		
권고사항	언론은 가학적·피해적인 내용, 폭력 장면 또는 언어폭력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언론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침해하는 보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한 뮤지컬 아역 배우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하여 SNS에 공유한 사진을 그대로 게재하였다. 해당 사진에는 심한 욕설이 담겨 있으므로 이러한 언어폭력을 여과 없이 보도하는 것은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6조 및 제10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의결번호	제2020-224호	언론사명	(주)미디어인그림
대상보도	오픈 디스커스 2020년 3월 26일 Net.이슈면 「“여러분이라면 이거 피할수 있습니까?” 민식이법 블랙박스 사례 영상에 분노한 네티즌들 (영상)」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 (충격·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영상을 그대로 게재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2020-224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225호	인사이트	3월 31일	정치사회면	‘민식이법’ 시행 3일 뒤 스쿨존서 발생한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0-226호	언론사명	(주)인사이트컴퍼니
대상보도	인사이트 2020년 3월 10일 동물면 「휴대폰 깨물었다고 반려견 몸에 ‘끓는 물’ 붓고 창밖으로 던져버린 주인」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 (충격·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학대로 인해 화상을 입은 개의 사진을 그대로 게재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의결번호	제2020-227호	언론사명	(주)헤럴드
대상보도	헤럴드POP 2020년 3월 16일 화제면 「김종국, 또 터진 동료 폭행 구설수」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 (기사 제목)		
권고사항	언론은 기사 본문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왜곡된 제목 또는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제목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가수 은지원 씨가 잭스키스 시절 선배 가수인 김종국 씨에게 인사를 하지 않아 혼란적이라고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말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마치 김종국 씨가 동료를 폭행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왜곡된 제목을 사용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언론의 신뢰성을 저하시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의결번호	제2020-228호	언론사명	(주)헤럴드
대상보도	헤럴드POP 2020년 3월 18일 화제면 「신동엽, 부부관계 조건 때문에 파혼선언..충격」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 (기사 제목)		
권고사항	언론은 기사 본문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왜곡된 제목 또는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제목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방송인 신동엽 씨가 예능 프로그램에서 일본 유명 여배우의 혼전 계약서 내용 관련하여 농담조로 발언한 내용을 전하면서 마치 신동엽 씨가 부부관계 조건 때문에 파혼선언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왜곡된 제목을 사용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언론의 신뢰성을 저하시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의결번호	제2020-229호	언론사명	(주)헤럴드
대상 보도	헤럴드POP 2020년 3월 3일 화제면 「장영란 “남편이 바람, 이혼 후 방송 은퇴”」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 (기사 제목)		
권고사항	언론은 기사 본문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왜곡된 제목 또는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제목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방송인 장영란 씨가 예능 프로그램에서 남편의 불륜 현장을 목격한다면 어떤 것 같냐는 MC의 질문에 답한 것임에도 마치 장영란 씨 남편의 바람으로 이혼 후 방송을 은퇴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왜곡된 제목을 사용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언론의 신뢰성을 저하시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의결번호	제2020-230호	언론사명	한류타임즈(주)
대상 보도	인터넷 스포츠서울 2020년 3월 5일 최신뉴스면 「시대전환,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지급 주장, 정치권 공감대 확산」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 (여론조사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국민적 관심사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에는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주요 질문내용 등을 밝혀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국민적 관심사인 재난 기본소득제 도입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면서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을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는 독자들에게 해당 조사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판단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의결번호	제2020-231호	언론사명	(주)일간뉴스경남
대상보도	인터넷 뉴스경남 2020년 3월 5일 기획/특집면 「〈창간 14주년 특집〉 진주 ○○○, 아플 때나 건강할 때 늘 고마운 친구」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 (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p>위 기사는 특정 의료기관의 위치 등 홍보성 정보를 게재하였고,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독자로 하여금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p> <p>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0호,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0호 및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제2020-231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7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232호	뉴스경남	3월 6일	13면	진주 ○○○, 아플 때나 건강할 때 늘 고마운 친구	지역일간지
제2020-233호	중부매일	3월 16일	10면	“환자 아픔 함께 나누며 미소짓는 세상 꿈꿔요”	지역일간지
제2020-234호	인터넷 중부매일	3월 15일	병원·약국면	지역과 함께 걷는 ‘○○○병원’	인터넷신문
제2020-235호	산업일보	3월 26일	정책/동향면	○○○병원, 충남점 23일 진료 개시 ‘지역거점 의료서비스’ 개막	인터넷신문
제2020-236호	수도권지역신문	3월 18일	지역면	몽특한고, 매부리코 코필러로 교정	인터넷신문
제2020-237호	인터넷한경일보	3월 12일	라이프면	○○성형외과, ○○역 확장 이전	인터넷신문
제2020-238호	땡큐굿뉴스	2월 18일	사회면	여성을 위한 암요양병원 ○○요양병원, 지난 10일 개원...본격 진료 시작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0-239호	언론사명	(주)내외일보
대상보도	인터넷 내외일보 2020년 3월 26일 연예면 「박지윤 사과 “감당하기 어려워”」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p>위 기사는 유명 방송인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가족 여행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누리꾼들로부터 비판 받았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미성년자인 자녀의 사진을 동의 없이 게재하여 자녀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p> <p>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제2020-239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240호	디스패치뉴스	4월 17일	세면	뉴스 아나운서도 떠났다, 사진 한 장으로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넌 이들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0-241호	언론사명	(주)소셜뉴스
대상보도	위키트리 2020년 4월 19일 라이프면 「“내일 술 깨서 자신이 한 짓을 알면...” 벤들리를 발로 차는 남자 (영상)」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p>위 기사는 한 남성이 길거리에서 고가의 차량을 수차례 걷어차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해당 남성의 초상이 담긴 영상을 그대로 게재하여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p> <p>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제2020-241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242호	디스패치뉴스	4월 19일	새면	"3억짜리 차를"...술김에 길가의 벤틀리 발로 차는 패기 (영상)	인터넷신문
제2020-243호	오픈 디스커스	4월 20일	정치사회면	"제 차가 얼마나 상했나면..." 수원 벤틀리 피해 차주가 밝힌 입장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0-244호	언론사명	(주)미디어피아
대상보도	말산업저널 2020년 4월 2일 네트워크면 「○○○ 재학생 민폐 강남 모녀의 제주도 여행기」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p>위 기사는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음에도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강남 유학생 모녀에 대해 보도하면서 딸의 국적 및 거주 지역, 현 소속 대학 및 이전에 재학하던 학교, 과 등의 이력을 상세히 공개하였다.</p> <p>비록 그가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돼 이동동선의 공개는 공익적 가치가 있으나, 방역 등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고 보기 어려운 확진자의 신상 정보를 지나치게 상세히 공개하는 것은 본인과 가족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p> <p>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의결번호	제2020-245호	언론사명	(주)소셜뉴스
대상보도	위키트리 2020년 4월 8일 사회면 「[단독] 공지영 작가, 돈으로 '봉침목사' 하드디스크 무단입수 복원 매수」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사적인 전화나 통신내용 등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결번호	제2020-245호	언론사명	(주)소셜뉴스
이유	<p>위 기사는 일명 '전주 봉침 사건'과 관련하여 소설가 공지영 씨가 이민주 목사의 사무실에 있던 하드디스크를 복원하고자 특정인에게 돈을 지불했다가 돌려받은 정황이 문자메시지를 통해 확인됐다고 보도하면서 공지영 씨와 특정인 간의 사적대화내용 캡처본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였다.</p> <p>이는 동의 없이 개인 간의 통신내용을 공표하는 것으로 통신비밀 보호법 제16조제1항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의결번호	제2020-246호	언론사명	(주)통일뉴스
대상보도	<p>통일뉴스 2020년 4월 26일 북한소식면 「김정은 위원장, 25일 서거...김여정 계승」 제하의 보도</p>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 (보도 윤리)		
권고사항	<p>언론은 객관적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진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하여 독자를 혼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p>		
이유	<p>위 기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월 25일 서거했다'는 보도내용을 담고 있으나 김정은 위원장이 5월 초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등 사실과 다른 보도로 밝혀졌다.</p> <p>비록 북한 최고지도자의 사망 여부는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북한 관련 보도는 사실 확인에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남북 및 국제 관계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과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의결번호	제2020-247호	언론사명	국민일보(주)
대상보도	<p>인터넷 국민일보 2020년 5월 7일 시사면 「[단독]이태원 게이클럽에 코로나19 확진자 다녀갔다」 제하의 보도</p>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 (차별 금지)		
권고사항	<p>보도 과정에서 그 표현이 사안의 설명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한, 인종, 국적, 지역, 성별, 종교, 나이,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과도하게 보도하여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p>		



의결번호	제2020-247호	언론사명	국민일보(주)
이유	<p>위 기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이태원의 클럽이 게이클럽이라고 보도하였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자의 이동동선 공개 등은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안이라 할 수 있으나, 해당 클럽을 게이클럽이라고 공개한 것은 방역 등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세부 사항을 과도하게 보도한 것은 독자들로 하여금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제2020-247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72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248호	문화일보	5월 7일	10면	격리 이탈해 절도 ... 용인확진자는 클럽 3곳 다녀	중앙일간지
제2020-249호	인터넷 문화일보	5월 7일	사회면	격리 이탈해 절도... 용인확진자는 클럽 3곳 다녀	인터넷신문
제2020-250호	경대일보	5월 11일	04면	코로나19 '2차감염 우려'	지역일간지
제2020-251호	인터넷 경대일보	5월 10일	사회면	코로나19 '2차감염 우려'	인터넷신문
제2020-252호	대구광역일보	5월 11일	04면	대구시민 13명 이태원 클럽 66번 확진자 접촉	지역일간지
제2020-253호	인터넷 대구광역일보	5월 10일	사회면	대구시민 13명 이태원 클럽 66번 확진자 접촉	인터넷신문
제2020-254호	선경일보	5월 8일	04면	용인 66번 확진자 가평 남이섬 일대 다녀가	지역일간지
제2020-255호	인터넷 선경일보	5월 7일	가평군면	용인 66번 확진자 가평 남이섬 일대 다녀가	인터넷신문
제2020-256호	일간경기	5월 8일	19면	용인확진 남성... 집단감염 우려	지역일간지
제2020-257호	일간경북신문	5월 11일	08면	대구시민 13명 이태원 클럽 66번과 접촉	지역일간지
제2020-258호	인터넷 일간경북신문	5월 10일	사회면	대구시민 13명 이태원 클럽 66번과 접촉	인터넷신문
제2020-259호	충청타임즈	5월 11일	04면	청주 20대 男 백화점서 사흘 근무	지역일간지
제2020-260호	인터넷 충청타임즈	5월 10일	경제면	청주 20대 男 백화점서 사흘 근무	인터넷신문
제2020-261호	일요신문	5월 11일	17면	성소수자들 '1차 만남장소' 유명	주간지
제2020-262호	일요신문	5월 7일	특종/단독면	용인 코로나19 확진자, 이태원 게이클럽 방문	인터넷신문
제2020-263호	내외뉴스통신	5월 7일	오늘의 핫뉴스면	용인시청 66번 코로나19 확진자와 이태원 클럽 방문한 안양시청 30대 남성 23번째 지역 코로나19 확진[종합]	뉴스통신
제2020-264호	뉴스스	5월 9일	지방면	'이태원 클럽' 청주 확진자, 백화점서 사흘 근무...버스도 태(종합)	뉴스통신
제2020-265호	아시아뉴스통신	5월 7일	사회/사건/사고면	용인 확진자, 게이클럽 방문 확인...용인 단체감염 우려	뉴스통신

▶ 제2020-247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72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266호	글로벌경제신문 (GETNEWS)	5월 7일	-	[속보]이태원 게이클럽 확진자 A씨(29세 용인시) 접촉자 60명 육박	인터넷신문
제2020-267호	노컷뉴스	5월 7일	사회면	코로나19 확진자 4명 ↑... '지역발생' 나흘만에 1건	인터넷신문
제2020-268호	농업경제신문	5월 9일	핫이슈면	안양 ○○아파트 주민들 날벼락 왜?...이태원 ○클럽 방문자 23세 남성 코로나 확진판정	인터넷신문
제2020-269호	뉴스인사이드	5월 7일	사회면	용인시 '코로나19' 확진자, 이태원 게이클럽에 방문.. "방문자만 2000명"	인터넷신문
제2020-270호	더 셉템	5월 7일	문화/사회면	[코로나19 동선] 용인시-66번째 남성, 이태원 게이클럽 방문 '2차 감염' 비상	인터넷신문
제2020-271호	데일리그리드	5월 8일	사회면	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11명 발생...용인시 확진자 접촉자 추정	인터넷신문
제2020-272호	매경닷컴	5월 7일	사회면	이태원 게이클럽 간 29세 용인 확진자...동행 친구도 확진	인터넷신문
제2020-273호	매일안전신문	5월 7일	안전속보면	이태원 클럽에 코로나19 용인 확진자 다녀가...당시 500여명 방문 '2차 감염 우려'	인터넷신문
제2020-274호	법률방송뉴스	5월 7일	HOT 이슈면	이태원 클럽 간 확진자 2명으로 늘어... 연휴 방문객 등 '집단감염' 우려	인터넷신문
제2020-275호	부산닷컴	5월 7일	사회면	용인 확진자, 이태원 게이클럽 다녀온 뒤 발열...당시 500여명 방문	인터넷신문
제2020-276호	비온드포스트	5월 8일	-	용인 확진자, 연휴기간 강원도-이태원 게이바 등 주점 5곳 들러	인터넷신문
제2020-277호	비즈니스포스트	5월 7일	정치·사회면	코로나19 확진자 이태원 클럽 5곳 방문 확인, 집단감염 우려 높아	인터넷신문
제2020-278호	서울와이어	5월 7일	핫이슈면	용인 확진자 게이클럽 방문, 친구도 안양시청 23번째 확진자	인터넷신문
제2020-279호	스트레이트뉴스	5월 7일	이슈&면	용인시청, 코로나19 확진자 이태원 게이클럽 방문.. "동선 파악중"	인터넷신문
제2020-280호	시사저널e	5월 7일	사회면	게이클럽 출입 용인 확진자 여행 친구도 코로나 19 '양성'	인터넷신문
제2020-281호	싱글리스트	5월 7일	사회면	용인 확진자, 이태원 게이클럽 3곳 방문? 집단감염 우려 ↑	인터넷신문
제2020-282호	아시아경제닷컴	5월 7일	일반면	용인 확진자, 1시간 단위로 이태원 클럽 5곳 방문... '집단감염 우려 확산'	인터넷신문
제2020-283호	아시아타임즈	5월 7일	정치사회면	4주만에 나온 지역확진자 지난 2일 이태원 게이클럽 방문	인터넷신문



▶ 제2020-247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72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284호	아시아투데이ASIATO DAY닷컴	5월 7일	사회면	이태원 게이클럽 방문한 용인시 확진자, 친구도 확진 판정...안양시 거주	인터넷신문
제2020-285호	아이뉴스24	5월 7일	사회면	코로나19' 용인 확진자, 이태원 클럽 방문...집단감염 우려	인터넷신문
제2020-286호	오가나라이프신문	5월 8일	자치단체면	송파구, 이태원 클럽 방문 '용인시 확진자' 관내 동선 공개	인터넷신문
제2020-287호	오픈 디스커스	5월 7일	정치사회면	용인 확진자 20대 남성, 이태원 게이클럽 왔다갔다... "현장엔 유명 아이들도 있었다"	인터넷신문
제2020-288호	위키트리	5월 7일	사회면	아이들과 접촉한 '코로나19' 확진자...이태원 게이 클럽에 있었다	인터넷신문
제2020-289호	이코노뉴스	5월 7일	종합면	용인시청, "용인 확진자 동선 공개...이태원 게이클럽 세 곳 방문 이어 주류업체 방문까지, 게이클럽 확산 또 다시 우려"	인터넷신문
제2020-290호	이투데이	5월 7일	사회면	코로나19 확진자, 이태원 '게이클럽' 방문...용산구 "정확한 사실 파악 중"	인터넷신문
제2020-291호	인사이트	5월 7일	정치·사회면	용인 확진자와 이태원 게이클럽 같이 간 안양 친구도 코로나19 확진	인터넷신문
제2020-292호	인터넷 강원일보	5월 7일	사회면	용인 코로나19 확진자, 이태원 '게이클럽' 방문... 나흘 만에 첫 지역발생	인터넷신문
제2020-293호	인터넷 경인일보	5월 7일	사회면	용인 확진자, 클럽·식당 등 잇따라 방문... 안양 거주 접촉자 1명 확진	인터넷신문
제2020-294호	인터넷 국제신문	5월 7일	뉴스면	용인 확진자, 이태원 클럽 5곳 등 동선 공개 ... 접촉자만 2000여명	인터넷신문
제2020-295호	인터넷 금강일보	5월 7일	경제일반면	[속보] 용인 확진자, 이동 동선 살펴보니... '게이클럽' 다녀가	인터넷신문
제2020-296호	인터넷 브릿지경제신문	5월 7일	이슈&이슈면	이태원 클럽 다녀간 용인 확진자...당시 500여명 방문	인터넷신문
제2020-297호	인터넷 서울경제	5월 7일	사회면	용인 확진자 이태원 클럽 5곳 방문...접촉자만 최대 수천명 될 듯	인터넷신문
제2020-298호	인터넷 스포츠서울	5월 7일	-	이태원 게이클럽, 용인시 20대 확진자 다녀가. 3곳서 접촉자 2000명 추산	인터넷신문
제2020-299호	인터넷 아주경제	5월 7일	사회면	안양시 23번째 확진자도 '이태원 게이클럽' 방문	인터넷신문
제2020-300호	인터넷 에너지경제	5월 7일	-	용인 66번 확진자, 이태원 ○클럽 등 방문... '슈퍼전파자' 되나	인터넷신문
제2020-301호	인터넷 이뉴스투데이	5월 7일	정치사회면	'이태원 클럽 방문' 코로나19 감염자 발생...용인시 거주, 감염경로 미궁	인터넷신문

▶ 제2020-247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72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302호	인터넷 이데일리	5월 7일	지자체면	용인 코로나19 확진자, 이태원 게이클럽 방문... "명부 확보"	인터넷신문
제2020-303호	인터넷 이코노미리뷰	5월 7일	코로나19면	[코로나19] 용인 확진자 수퍼 전파자 되나 ...연휴 내내 외출	인터넷신문
제2020-304호	인터넷 크리스천투데이	5월 7일	사회면	용인 확진자, 이태원 게이 클럽 방문	인터넷신문
제2020-305호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5월 7일	정치·사회면	용인 확진자와 클럽 같이간 친구도 코로나19 확진 '감염 확산 우려'	인터넷신문
제2020-306호	인터넷 한국경제	5월 7일	사회면	용인 확진자 방문 이태원 게이 클럽... "남자들, 줄 서 있었다"	인터넷신문
제2020-307호	인터넷 한스경제	5월 7일	정치·사회면	용인 확진자, 이태원 게이클럽 등 클럽 3곳이나 방문...2000여 명 불안 증폭	인터넷신문
제2020-308호	인터넷 한국정경신문	5월 7일	사회면	이태원 게이클럽, 용인 확진자 방문 확인..3곳에 약 2000명 확인·역학조사 나서	인터넷신문
제2020-309호	인터넷 헤럴드경제	5월 7일	사회일반면	용인 확진자, 이태원 게이클럽 등 클럽 3곳 방문... '집단감염 우려'	인터넷신문
제2020-310호	인터넷365	5월 7일	시사의 발견면	용인 코로나19 확진자, 이태원 게이클럽 방문... '감염 확산 우려'	인터넷신문
제2020-311호	조선닷컴	5월 7일	사회 일반면	용인 확진자, 연휴 내내 외출... 이태원 클럽도 갔다	인터넷신문
제2020-312호	조세일보	5월 7일	사회면	용인 확진자, 이태원 게이클럽 ○·○○○ 등 방문	인터넷신문
제2020-313호	충북뉴스	5월 9일	사회면	서울 이태원클럽 다녀온 청주 20대 코로나 확진	인터넷신문
제2020-314호	투스타뉴스	5월 9일	종합면	'게이 클럽' 청주 확진자, 백화점서 사흘 근무...버스도 태(종합)	인터넷신문
제2020-315호	폴리뉴스(polinews)	5월 7일	라이프면	용인시청 용인 66번 확진자 안양시청 확진자와 게이클럽 등 이태원 클럽 방문!	인터넷신문
제2020-316호	e글로벌이코노믹	5월 9일	전국면	이태원 게이클럽 간 20대 코로나19 확진 판정... 부산 친구 거주	인터넷신문
제2020-317호	e머니에스 (e money S)	5월 7일	-	용인 확진자, 2일부터 증상 호소했는데... 대형마트·이태원 게이클럽 방문	인터넷신문
제2020-318호	Queen	5월 7일	사회/과학면	용인 거주 코로나19 확진자, 이태원 '게이클럽' 다녀가	인터넷신문
제2020-319호	sportschosun.com	5월 7일	사회면	나흘만에 발생한 용인 '지역감염자' 지난 2일 이태원 게이클럽 방문 후 확진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0-320호	언론사명	(주)인사이트컴퍼니
대상보도	인사이트 2020년 4월 6일 국제면 「“저를 죽기 직전까지 때린 남편이 ‘집안일’이라고 7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6조 (폭력 묘사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가학적·피학적인 내용, 폭력 장면 또는 언어폭력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중국의 한 가정폭력사건을 보도하면서 남편이 아내를 구타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그대로 게재하여 폭력 장면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하였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6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의결번호	제2020-321호	언론사명	(주)이름
대상보도	뉴스핌 2020년 3월 10일 동물면 「등껍질 부서진 채 내장 모두 드러나 죽은 바다거북...“보트에 치어 죽었을 것”」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 (충격·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보트에 치어 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바다거북의 사체 영상을 그대로 게재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의결번호	제2020-322호	언론사명	이학범(데일리벳)
대상보도	데일리벳 2020년 4월 13일 뉴스면 「보호자가 반려묘에 향생제 주사 놔다가··가슴 과사에 신부전까지」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 (충격·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과사성 유행염과 급성 신부전에 걸린 고양이의 병변 사진 및 영상을 그대로 게재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2020-322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323호	뉴스1코리아	4월 18일	산업면	"약국서 주사 사서 동물 자기진료...부작용 생기고 보호자만 처벌"	뉴스통신

의결번호	제2020-324호	언론사명	(주)인사이트컴퍼니
대상보고	인사이트 2020년 4월 10일 국제면 「성기에 돌덩이 묶어 나무에 매달아 흔드는 우간다의 성폭행범 처벌법」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 (충격·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우간다 내 성폭행범 처벌과 관련해 충격적이고 혐오적인 모습의 사진 및 영상을 그대로 게재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의결번호	제2020-325호	언론사명	(주)인사이트컴퍼니
대상보고	인사이트 2020년 4월 1일 국제면 「'트럭 뒷바퀴'에 얼굴 깔린 오토바이 운전자가 '헬멧'과 함께 공개한 사고 영상」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 (충격·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대형 화물트럭 바퀴에 몸이 깔리는 사고 당시 사진 및 영상을 그대로 게재하였다. 비록 헬멧의 중요성에 대해 알고자 하는 내용일지라도 사고 장면을 그대로 노출하는 것은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의결번호	제2020-326호	언론사명	(주)헤럴드
대상보고	헤럴드POP 2020년 4월 22일 화제면 「강타 전여친 오정연...“이 남자는 악마” 충격」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0-326호	언론사명	(주)헤럴드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 (기사 제목)		
권고사항	언론은 기사 본문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왜곡된 제목 또는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제목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p>위 기사는 방송인 오정연 씨가 전 연인인 강타를 악마라고 지칭한 것처럼 방송내용과 달리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왜곡된 제목을 사용하였다.</p> <p>이는 일반 독자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언론의 신뢰성을 저하시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의결번호	제2020-327호	언론사명	(주)이투데이
대상보도	이투데이 2020년 4월 13일 의료/바이오면 「○○○안과, 진료센터 확장 개원...’서비스 품질 강화」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 (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p>위 기사는 특정 의료기관의 위치 등 홍보성 정보를 게재하였고,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독자로 하여금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p> <p>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0호,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0호 및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제2020-327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5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328호	국제뉴스	4월 28일	라이프·헬스면	○○역 ○○○안과 확장 새 단장	뉴스통신
제2020-329호	메디파나뉴스	4월 28일	종합병원면	○○○안과 확장 새 단장...전문클리닉 강화	인터넷신문
제2020-330호	조세일보	4월 13일	헬스면	○○○안과, 진료센터 확장 개원	인터넷신문
제2020-331호	인터넷 경기신문	3월 29일	문화면	○○○한의원 김포지점 오픈	인터넷신문
제2020-332호	인터넷 일간스포츠	4월 1일	경제면	○○○한의원 "김포점 개원"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0-333호	언론사명	국민일보(주)
대상 보도	인터넷 국민일보 2020년 5월 9일 시사 「“결국 터졌다”... 동성애자 제일 우려하던 ‘찜방’서 확진자 나와」 제하의 보도		
매체 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 (차별 금지)		
권고 사항	언론은 보도 과정에서 그 표현이 사안의 설명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한, 인종, 국적, 지역, 성별, 종교, 나이,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과도하게 보도하여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인종, 국적, 지역, 성별, 종교, 나이,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등을 이유로 편견적 또는 경멸적 표현을 삼가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성소수자들이 이용하는 휴게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였다고 보도하면서 해당 시설과 이용자에게 대한 과도한 묘사 및 설명과 일부 네티즌의 경멸적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이러한 보도는 독자들로 하여금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제2항 및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의결번호	제2020-334호	언론사명	(주)디스패치뉴스그룹
대상 보도	디스패치뉴스 2020년 5월 10일 세면 「“기분 좋게 해줄게”·· 경악 그 자체인 ‘게이 찜방’ 체험 후기」 제하의 보도		
매체 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 (차별 금지), 제13조 (성관련 보도)		
권고 사항	언론은 보도 과정에서 그 표현이 사안의 설명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한, 인종, 국적, 지역, 성별, 종교, 나이,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과도하게 보도하여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성소수자들이 이용하는 휴게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였다고 보도하면서 해당 시설과 이용자에게 대한 과도한 설명 등을 게재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또한 해당 시설에서 벌어진 성행위 등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였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제2항 및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2020-334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335호	e머니투데이 (e money today)	5월 12일	뉴스면	커튼만 쳐진 컴컴한 방, 5년전 차마 못쓴 ○○수면방 취재기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0-336호	언론사명	김경민(족구뉴스)
대상보도	족구뉴스 2020년 5월 6일 사회면 「이재용 대국민 사과, 여자관계(?), 재혼가능성?, 이혼사유?... '안타까워」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p>위 기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딸의 어릴 적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도하였다. 비록 이재용 부회장이 공적 인물에 해당하더라도 사인(私人)인 딸의 초상을 공개한 것은 그 딸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p> <p>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의결번호	제2020-337호	언론사명	(주)아시아뉴스통신
대상보도	아시아뉴스통신 2020년 5월 14일 국내사진면 「'○○○병원 ○○○ 원장은 공사비를 즉시 지급하라」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뉴스통신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p>위 기사는 강남의 특정 병원 앞에서 한 시위자가 '공사비를 즉시 지급하라'는 시위를 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해당 병원명, 병원장의 초상 및 성명을 공개하였다.</p> <p>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의결번호	제2020-338호	언론사명	(주)뉴스와사람들
대상보도	뉴스프리존 2020년 5월 21일 사회일반면 「“윤석열 장모 허위 잔고증명서에 속았다” 법원에 소송 낸 사업가 패소」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 (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이하 같다)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실명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2020-338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3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339호	국민뉴스	5월 22일	정치면	“윤석열 장모 허위 잔고증명서에 속았다” 민사 소송 패소 이유는?... 패소를 예견한 윤석열 일가 피해자 정대택	인터넷신문
제2020-340호	인터넷 굿모닝충청	4월 25일	중앙핫클릭면	황희석 “참 후지다. 특수활동비를 제 주머니 싹짓돈으로 쓰다니...”	인터넷신문
제2020-341호	플러스코리아타임즈	4월 30일	종합뉴스면	윤석열 장모, 3~4시간씩 진 치고 앉아 “잔고 증명서 위조해 달라” 졸라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0-342호	언론사명	(주)크리스천투데이
대상보도	인터넷 크리스천투데이 2020년 5월 14일 사회면 「동성애자 청와대 국민청원 “소수의 짐승 같은 놈... 짬방 폐지해야”」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 (차별 금지)		
권고사항	언론은 인종, 국적, 지역, 성별, 종교, 나이,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등을 이유로 편견적 또는 경멸적 표현을 삼가야 한다. 또한, 보도 과정에서 그 표현이 사안의 설명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한, 인종, 국적, 지역, 성별, 종교, 나이,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과도하게 보도하여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결번호	제2020-342호	언론사명	(주)크리스천투데이
이유	<p>위 기사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내 이태원 클럽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현상과 관련하여 '찜방'을 폐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게시글에 대해 보도하면서 '소수의 짐승 같은 놈'이라는 내용 등을 그대로 인용하여 일부 동성애자들에 대한 경멸적 표현을 사용하고 성적 행동에 관한 세부 사항을 과도하게 보도하였다.</p> <p>이러한 보도는 독자들로 하여금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제1항 및 제10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의결번호	제2020-343호	언론사명	(주)에이앤드에프코리아
대상보도	<p>인터넷 시장경제신문 2020년 5월 12일 소상공·금융면 「클럽궤 확산에 금융권 다시 '혼돈'... "서터 올리기 겁난다"」 제하의 보도</p>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 (차별 금지)		
권고사항	<p>보도 과정에서 그 표현이 사안의 설명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한, 인종, 국적, 지역, 성별, 종교, 나이,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과도하게 보도하여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p>		
이유	<p>위 기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이태원의 클럽이 게이클럽이라고 보도하였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자의 이동동선 공개 등은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안이라 할 수 있으나, 해당 클럽을 게이클럽이라고 공개한 것은 방역 등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고 보기 어려운데 이러한 세부 사항을 과도하게 보도하였다.</p> <p>이러한 보도는 독자들로 하여금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제2020-343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3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344호	인터넷 일요시사	5월 18일	사건/사고면	게이, 그들만의 아지트 대해부	인터넷신문
제2020-345호	아시아투데이 ASIATODAY	5월 14일	06면	'자유업' 신고로 단속 비껴간 동성애 해방구	지역일간지
제2020-346호	뉴스스	5월 20일	사회면	성소수자 커뮤니티, 여전한 족석만남... "자제해야" 우려	뉴스통신

의결번호	제2020-347호	언론사명	(주)인사이트컴퍼니
대상보도	인사이트 2020년 5월 27일 국제면 「엄마아빠 성관계 목격한 5살 소년...다음날 유치원서 여아 성폭행을 시도했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 (성관련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유치원에서 남자 아이가 잠자는 여자 아이를 성폭행하려는 모습이 담긴 CCTV 캡처사진을 그대로 게재하여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의결번호	제2020-348호	언론사명	(주)인사이트컴퍼니
대상보도	인사이트 2020년 5월 4일 사회면 「지하철에서 성추행하다 딱 걸려 경찰 조사 받는 서울시 5급 공무원」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 (보도 윤리), 제13조 (성관련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언론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침해하는 보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서울시 공무원의 지하철 내 성추행 사건을 보도하면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선정적 자료사진을 사용하였다. 이는 해당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의결번호	제2020-349호	언론사명	(주)연합뉴스
대상보도	연합뉴스 2020년 5월 27일 최신기사면 「20대 소방관 자택서 숨진 채 발견...“일 힘들다” 글 남겨」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뉴스통신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 (자살 보도)		



의결번호	제2020-349호	언론사명	(주)연합뉴스
권고사항	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한 소방관의 자살 사건을 보도하면서 그의 소속, 직급, 직무, 나이, 인사발령 시기 등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은 보도는 자살자 및 가족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2020-349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31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350호	경기신문	5월 28일	19면	20대 소방관, "힘들다" 극단적 선택	지역일간지
제2020-351호	인터넷 경기신문	5월 27일	사회면	20대 소방관, "힘들다" 극단적 선택	인터넷신문
제2020-352호	경인일보	5월 28일	06면	일 힘들다 20대 소방관 극단적 선택	지역일간지
제2020-353호	인터넷 경인일보	5월 28일	사회면	일 힘들다 20대 소방관 극단적 선택	인터넷신문
제2020-354호	일간경기	5월 28일	19면	20대 소방관 자택서 숨진 채 발견... "일 힘들다" 글 남겨	지역일간지
제2020-355호	중부일보	5월 28일	18면	"소방학교 근무 힘들어" 소방관 극단적 선택	지역일간지
제2020-356호	인터넷 중부일보	5월 27일	사회면	"소방학교 근무 힘들어"... 20대 소방관, 자택서 유서 남기고 숨진 채 발견	인터넷신문
제2020-357호	현대일보	5월 28일	15면	20대 ○○ 소방관 자택서 숨진 채 발견	지역일간지
제2020-358호	인터넷 현대일보	5월 27일	사회면	20대 ○○ 소방관 자택서 숨진 채 발견	인터넷신문
제2020-359호	뉴스1코리아	5월 27일	지방면	○○소방학교 20대 소방관 숨진채 발견... '힘들다' 유서	뉴스통신
제2020-360호	뉴스핌통신	5월 27일	전국면	"○○소방학교 근무 힘들다"... 20대 소방관 숨진 채 발견	뉴스통신
제2020-361호	뉴시스	5월 27일	수도권면	○○소방학교 소속 20대 소방관 아파트서 숨진 채 발견	뉴스통신
제2020-362호	동아닷컴	5월 27일	사회면	○○소방학교 소속 20대 소방관 숨진채 발견... '힘들다' 유서	인터넷신문
제2020-363호	디스패치뉴스	5월 27일	시면	20대 소방관 자택서 숨진 채 발견.. "일 힘들다" 글 남겨	인터넷신문
제2020-364호	매경닷컴	5월 27일	사회면	"일 힘들다"... ○○소방학교 소방관 스스로 목숨 끊어	인터넷신문
제2020-365호	민중의소리(Voice of People)	5월 27일	사회면	"일 힘들다" 글 남기고 자택서 숨진 채 발견된 20대 소방관	인터넷신문
제2020-366호	아시아투데이ASI ATODAY닷컴	5월 27일	사회면	"일 힘들다"... 20대 소방관 자택서 숨진 채 발견	인터넷신문
제2020-367호	위키트리	5월 27일	사회면	"일어..." ○○소방학교 소속 소방관,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인터넷신문

▶ 제2020-349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31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368호	인사이트	5월 27일	찾이슈면	“일이 너무 힘들어요”...유서 남긴 채 극단적 선택한 20대 소방관	인터넷신문
제2020-369호	인천뉴스	5월 27일	사회면	○○소방학교 근무하던 20대 소방관 숨진 채 발견	인터넷신문
제2020-370호	인터넷 경향신문	5월 27일	전체면	“인사 불만”...○○서 20대 소방관 극단적 선택	인터넷신문
제2020-371호	인터넷 국민일보	5월 27일	시사면	“근무 힘들다”...20대 소방관 자택서 숨진 채 발견	인터넷신문
제2020-372호	인터넷 서울신문	5월 27일	사회면	“일 힘들다”...20대 소방관, 자택서 숨진 채 발견	인터넷신문
제2020-373호	인터넷 세계일보	5월 27일	사회면	20대 소방관 자택서 숨진 채 발견...“일 힘들다” 글 남겨	인터넷신문
제2020-374호	인터넷 아주경제	5월 27일	-	20대 소방관 숨진 채 발견 [사사건건]	인터넷신문
제2020-375호	인터넷 이데일리	5월 27일	사회면	20대 소방관 자택서 숨진 채 발견...“일 힘들다” 유서 남겨	인터넷신문
제2020-376호	인터넷 중앙신문	5월 27일	사회면	유서에 ‘내근직 힘들다’... ○○소방학교 소속 20대 소방관 자택서 숨진 채 발견	인터넷신문
제2020-377호	조선비즈	5월 27일	시사면	“일 힘들다”...20대 소방관 자택서 극단적 선택	인터넷신문
제2020-378호	청년일보	5월 27일	사건 사고면	유서 남긴 20대 소방관... 자택서 숨진 채 발견	인터넷신문
제2020-379호	투스타뉴스	5월 27일	사회면	○○소방학교 ○○ 담당 20대 소방관 자택서 숨진 채 발견...“일 힘들다” 유서 남겨	인터넷신문
제2020-380호	FPN	5월 27일	정책·행정면	20대 소방관 자택서 숨진 채 발견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0-381호	언론사명	(주)한국미디어네트웍스
대상보도	인터넷 스포츠한국 2020년 5월 27일 경제면 「○○전자 직원 투신해 사망...사망 원인 조사중」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 (자살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자살자가 근무했던 회사명 및 위치, 부서, 성, 나이 등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은 보도는 자살자 및 가족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의결번호	제2020-382호	언론사명	(주)소셜뉴스
대상보도	위키트리 2020년 5월 13일 사회면 「“안구적출까지...” 식당에서 끔찍한 폭행 당한 아버지 (영상)」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6조 (폭력 묘사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가학적·피학적인 내용, 폭력 장면 또는 언어폭력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식당 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을 보도하면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구타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그대로 게재하고 폭력 장면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하였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6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2020-382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383호	인사이트	5월 13일	사건 사고면	동네 건달에게 폭행당해 ‘두개골 골절·안구 적출’ 위기 놓인 피해자 딸이 공개한 당시 CCTV (영상)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0-384호	언론사명	(주)세계일보
대상보도	인터넷 세계일보 2020년 5월 22일 사회면 「사지가 찢겨 죽어간 새끼돼지의 비명...2007년 ‘이천 특전사 이전 반대 집회」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 (충격·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특전사 이전 이전 반대 집회’에서 행해진 새끼돼지 거열에 대해 보도하면서 이를 촬영한 영상 및 사진을 그대로 게재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의결번호	제2020-385호	언론사명	(주)동양미디어
대상보도	인터넷 동양일보 2020년 5월 6일 사회면 「조영제로 인한 의료사고 주장 피해자…해당 병원 “도의적 책임을 다해 치료”」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 (충격·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조영제 투여 후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의 팔 사진을 그대로 게재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2020-385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386호	동양일보	5월 7일	03면	'조영제 투여 후 이상증세' 의료사고 책임은?	지역일간지

의결번호	제2020-387호	언론사명	(주)헤럴드
대상보도	헤럴드POP 2020년 5월 26일 화제면 「김구라, 나이 50에 둘째를..혼전임신 민망」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 (기사 제목)		
권고사항	언론은 기사 본문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왜곡된 제목 또는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제목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방송인 김구라의 여자친구가 마치 혼전임신을 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왜곡된 제목을 사용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언론의 신뢰성을 저하시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의결번호	제2020-388호	언론사명	(주)헤럴드
대상보도	헤럴드POP 2020년 5월 15일 화제면 「백종원, 충격의 사업실패 빛 17억..소유진 어쩌나」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 (기사 제목)		
권고사항	언론은 기사 본문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왜곡된 제목 또는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제목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외식사업가 백종원이 과거 사업 실패로 17억 원의 빚이 있었다고 보도하면서 마치 현재 빚을 진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왜곡된 제목을 사용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언론의 신뢰성을 저하시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의결번호	제2020-389호	언론사명	(주)헤럴드
대상보도	헤럴드POP 2020년 5월 18일 화제면 「이효리, 폭행 가해자로 감옥에..충격적 사건」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 (기사 제목)		
권고사항	언론은 기사 본문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왜곡된 제목 또는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제목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가수 이효리가 데이트 폭력에 대한 경험을 고백한 과거 방송이 화제라고 보도하면서 마치 폭행 가해자로 수감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왜곡된 제목을 사용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언론의 신뢰성을 저하시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의결번호	제2020-390호	언론사명	(주)헤럴드
대상보도	헤럴드POP 2020년 5월 1일 화제면 「현빈, 이나영 때리고 욕설까지..충격적 과거」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0-390호	언론사명	(주)헤럴드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 (기사 제목)		
권고사항	언론은 기사 본문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왜곡된 제목 또는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제목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배우 현빈이 과거 극중에서 상대 배우인 이나영을 때리는 장면이 화제라고 보도하면서 극중 연기를 실제 발생한 사건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왜곡된 제목을 사용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언론의 신뢰성을 저하시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의결번호	제2020-391호	언론사명	(주)로이슈
대상보도	로이슈 2020년 5월 27일 정치면 「조경태 “이해찬 대표는 윤미향 당선자를 감쌀게 아니라 이용수 할머니의 눈물부터 닦아줘야”」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 (여론조사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국민적 관심사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에는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주요 질문내용 등을 밝혀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국민적 관심사인 윤미향 당선자의 국회의원직 사퇴 찬반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면서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을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는 독자들에게 해당 조사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판단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2020-391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392호	인터넷 중앙일보	5월 27일	정치면	진중권 “민주당, 유치한 판타지...윤미향 지켜야 한다 생각”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0-393호	언론사명	(주)데일리메디
대상보도	데일리메디 2020년 5월 11일 의원/병원면 「관절·척추질환 등 전문 성남 ○○○병원 오픈」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 (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p>위 기사는 특정 의료기관을 홍보하는 등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0호에 반하는 의료기관의 위치 정보 등을 게재하였고,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독자로 하여금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p> <p>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0호,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0호 및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제2020-393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32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394호	경기일보	5월 25일	16면	관절·척추질환 전문 '성남 ○○○병원 오픈	지역일간지
제2020-395호	인터넷 경기일보	5월 24일	건강·의학면	경기남부지역 관절, 척추 전문 성남 ○○○병원 개원	인터넷신문
제2020-396호	세계뉴스통신	5월 13일	사회면	성남 ○○○병원, 전문·체계적 치료 위해 무릎 전담팀 도입	뉴스통신
제2020-397호	경기뉴스신문	5월 14일	경제면	성남 ○○○병원, 전문·체계적 치료 위해 무릎 전담팀 도입	인터넷신문
제2020-398호	골든타임즈 (goldentimes)	5월 14일	지역면	성남 ○○○병원, 전문·체계적 치료 위해 무릎 전담팀 도입	인터넷신문
제2020-399호	동아닷컴	5월 14일	사회면	성남 ○○○병원 개원, 첨단장비 통한 '비수술 척추치료' 주목	인터넷신문
제2020-400호	분당뉴스	5월 18일	창업개업면	성남 ○○○병원, 전문·체계적 치료 무릎 전담팀 도입	인터넷신문
제2020-401호	분당신문	5월 13일	건강면	성남 ○○○병원, 전문·체계적 치료 위해 무릎 전담팀 도입...○○역 ○○○에 정식 개원	인터넷신문
제2020-402호	시민PRESS	6월 13일	종합면	성남 ○○○병원, 전문·체계적 치료 위해 무릎 전담팀 도입	인터넷신문
제2020-403호	웰빙뉴스	5월 13일	보건/의료면	성남 ○○○병원, 전문·체계적 치료 위해 무릎 전담팀 도입	인터넷신문
제2020-404호	인터넷 경기남부신문	5월 14일	지역뉴스면	성남 ○○○병원, 전문·체계적 치료 위해 무릎 전담팀 도입	인터넷신문

▶ 제2020-393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32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405호	인터넷 로컬 (LOCAL)세계	5월 14일	라이프면	성남 ○○○병원, 전문·체계적 치료 위해 무릎 전담팀 도입	인터넷신문
제2020-406호	명탐정티브이	5월 13일	의료/건강면	성남 ○○○병원, 전문·체계적 치료 위해 무릎 전담팀 도입	인터넷신문
제2020-407호	인터넷 의계신문	5월 13일	병원면	성남 ○○○병원 11일 개원	인터넷신문
제2020-408호	인터넷 의료일보 (Medical Daily)	5월 14일	뉴스(병/의 원의대)면	성남 ○○○병원, 전문·체계적 치료 위해 무릎 전담팀 도입	인터넷신문
제2020-409호	중부투데이	5월 14일	수도권뉴스면	성남 ○○○병원, 전문·체계적 치료 위해 무릎 전담팀 도입	인터넷신문
제2020-410호	탐뉴스투데이	5월 14일	지역뉴스면	성남 ○○○병원, 전문·체계적 치료 위해 무릎 전담팀 도입	인터넷신문
제2020-411호	헤모필리아 라이프	5월 14일	의료보건면	성남 ○○○병원, 전문·체계적 치료 위해 무릎 전담팀 도입	인터넷신문
제2020-412호	e머니투데이 (e money today)	5월 13일	중기면	성남 ○○○병원, 무릎 전담팀 도입...“전문·체계적 치료”	인터넷신문
제2020-413호	뉴스에이	5월 7일	생활·건강면	○○○ 성형외과 “○○ 클리닉” 확장 이전 오픈	인터넷신문
제2020-414호	뉴스브라이트	5월 7일	라이프면	○○○ 성형외과 “○○ 클리닉” 확장 이전 오픈	인터넷신문
제2020-415호	로이슈	5월 7일	의료제약면	○○○ 성형외과 ‘○○ 클리닉’ 확장 이전 오픈	인터넷신문
제2020-416호	이투데이	5월 7일	의료/바이오면	○○○ 성형외과 ‘○○ 클리닉’ 확장 이전 오픈	인터넷신문
제2020-417호	인사이트	5월 7일	헬스면	○○○ 성형외과, ‘○○ 클리닉’ 확장 이전 오픈	인터넷신문
제2020-418호	인터넷 이지경제	5월 7일	생활경제면	○○○ 성형외과, ‘○○ 클리닉’ 확장 이전...비수술 진료 강화	인터넷신문
제2020-419호	인터넷 제민일보	5월 19일	라이프면	○○○병원 개원...관절·척추 중점 진료	인터넷신문
제2020-420호	인터넷 Business Korea	5월 19일	스타일/ K-Culture면	‘관절·척추’ 맞춤 치료 중심 ○○○병원 개원	인터넷신문
제2020-421호	헤모필리아 라이프	5월 19일	경제일반면	관절·척추 ○○○병원, 5월 18일 개원	인터넷신문
제2020-422호	인터넷 기호일보	5월 27일	보건/의료면	전날 관장약 복용 없이 내시경 검사 환자 불편 덜고 ‘건강한 웃음’ 선물	인터넷신문
제2020-423호	기호일보	5월 27일	14면	전날 관장약 복용 없이 내시경 검사 환자 불편 덜고 ‘건강한 웃음’ 선물	지역일간지
제2020-424호	부산닷컴	5월 19일	전체면	○○한방병원 김해점, 확장 이전 진료 개시	인터넷신문
제2020-425호	부산닷컴	5월 14일	전체면	○○한방병원, 부산의 ‘심장’ ○○에 문 열다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0-426호	언론사명	(주)동아일보사
대상보도	인터넷 주간동아 2020년 5월 29일 사회면 「윤미향 딸, 정대협 유럽 행사에 참여한 사실 드러나」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사인의 초상, 성명 등을 공개하여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p>위 기사는 윤미향 국회의원 딸의 초상과 성명을 공개하였다. 비록 윤미향 의원이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해당 보도가 공적 관심 사안과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사인(私人)인 딸의 초상과 성명을 공개한 것은 그 딸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p> <p>이는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의결번호	제2020-427호	언론사명	(주)여성신문사
대상보도	인터넷 여성신문 2020년 6월 18일 사회면 「무단침입 맞지만 불법촬영은 아니다?...〇〇차 〇〇팀장, 여직원 기숙사 무단침입 논란」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 (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의 혐의자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을 위반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p>위 기사는 여직원 기숙사 내 불법촬영 혐의자의 전 소속 직장 및 직책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p> <p>이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제2020-427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1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428호	전남일보	6월 19일	04면	여직원기숙사 '몰카' 의혹 〇〇 "사실 아니다" 부인	지역일간지
제2020-429호	호남신문	6월 19일	08면	〇〇자동차 여직원 기숙사 몰카 의혹 내사	지역일간지
제2020-430호	뉴스1코리아	6월 18일	지방면	광주 경찰, 〇〇차 여직원 기숙사 '몰카' 의혹 내사	뉴스통신
제2020-431호	광주in	6월 19일	교육·인권면	정의당 광주 "〇〇차 간부, 아간에 여성기숙사 무단 침입"	인터넷신문
제2020-432호	뉴스락 (NewsLock)	6월 19일	사회면	〇〇차 광주공장 간부, '여직원 기숙사' 몰카 설치?...시민단체, '〇〇차 은폐-능장대응'에 규탄	인터넷신문

▶ 제2020-427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1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433호	시사종합신문	6월 17일	오피니언면	[성명서] ○○차 ○○팀장 야간 여기숙사 무단침입,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인터넷신문
제2020-434호	아시아경제 닷컴	6월 17일	사회면	정의당 광주시당 "○○차 간부 여기숙사 무단침입 철저히 조사하라"	인터넷신문
제2020-435호	오늘경제	6월 18일	광주전남 취재본부면	정의당 광주시당, ○○차 ○○팀장 야간 여 기숙사 무단침입 철저한 조사 요구	인터넷신문
제2020-436호	인터넷 이뉴스투데이	6월 17일	전국(광주전남 취재본부)면	"○○차 ○○팀장, 야간 여 기숙사 무단침입 철저히 조사하라"	인터넷신문
제2020-437호	인터넷 전남일보	6월 18일	사회면	○○ 광주공장 여직원기숙사 '몰카' 의혹	인터넷신문
제2020-438호	NGTV	6월 18일	정치/행정면	정의당 광주시당, ○○차 ○○팀장 야간 여기숙사 무단침입,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0-439호	언론사명	(주)뉴스와사람들
대상보도	뉴스프리존 2020년 6월 11일 정치일반면 「윤석열 장모 “사문서 위조 혐의” 국민참여재판 신청 놓고 피고인 간 신경전...”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 (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의 혐의자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반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실명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2020-439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440호	국민뉴스	6월 12일	정치면	윤석열 장모 “국민참여재판 반대”, 동업자 안소현 “참여재판 변함없다”...네티즌 “350억 잔고 위조, 표창장 위조 중 죄질 나쁜거 개도 안다”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0-441호	언론사명	(주)인사이트컴퍼니
대상보도	인사이트 2020년 6월 7일 핫이슈면 「의붓아들 죽인 천안 계모 '인스타' 계정에서 찾아낸 소름 돋는 비밀」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 (차별 금지)		
권고사항	보도 과정에서 그 표현이 사안의 설명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한, 국적, 지역에 관한 세부 사항을 과도하게 보도하여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9살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계모가 조선족이라는 누리꾼들의 주장을 보도하였다. 이는 사안의 설명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출신지역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도하여 조선족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2020-441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442호	중부일보	6월 8일	15면	의붓아들 죽인 천안 계모 '인스타' 계정에서 찾아낸 소름 돋는 비밀	지역일간지
제2020-443호	투스타뉴스	6월 30일	사회면	천안 계모, 인스타그램에 숨겨진 '조선족 의혹'? 충격적 아동학대 행각까지 화두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0-444호	언론사명	(주)인사이트컴퍼니
대상보도	인사이트 2020년 6월 3일 사회면 「전남서 '할머니'들만 골라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검거됐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 (보도 윤리), 제13조 (성관련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침해하는 보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노인들을 상대로 성폭행한 용의자가 붙잡혔다고 보도하면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선정적 자료사진을 사용하였다. 이는 해당 내용을 선정적으로 묘사하여 사회적 법익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의결번호	제2020-445호	언론사명	(주)베이비타임즈
대상보도	베이비타임즈 2020년 5월 27일 산업면 「〇〇전자 직원, 〇〇역 〇〇〇빌딩서 극단선택 사망」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 (자살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나이대, 성별 및 근무했던 회사명, 위치, 부서 등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은 보도는 자살자 및 가족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2020-445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446호	SRT타임스	5월 27일	경제/라이프면	〇〇역 〇〇빌딩서 20대 여성 투신 사망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0-447호	언론사명	뉴스워치(주)
대상보도	뉴스워치 2020년 5월 28일 사회면 「[‘〇〇전자’ 女직원 사망 미스터리 ‘추적’] ‘엘리트’ 직원 왜 스스로 목숨 끊었나」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 (자살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자살 장소를 묘사하는 보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나이, 성별 및 근무했던 회사명, 위치, 부서 등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고 그가 건물에서 뛰어내린 지점 및 떨어져 쓰러진 지점 등의 현장사진을 여러 장 게재하여 자살 장소를 상세히 묘사하였다. 이와 같은 보도는 자살자 및 가족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1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의결번호	제2020-448호	언론사명	(주)인사이트컴퍼니
대상보도	인사이트 2020년 6월 3일 국제면 「남편은 ‘폭도’들에게 붙잡혀 폭행당하는 아내를 끝내 구하지 못했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6조 (폭력 묘사 등)		
권고사항	언론은 폭력 장면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미국에서 약탈자들이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호소하는 부부를 구타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아내가 폭행 당하는 영상을 여과 없이 게재하여 폭력 장면을 과도하게 노출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6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2020-448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3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449호	디스패처뉴스	6월 4일	세면	“약탈하지 말라”고 외쳤다가 집단 폭행 당한 백인 여성	인터넷신문
제2020-450호	인터넷 한국경제	6월 3일	국제면	“약탈하지 말라”는 백인 여성 무자비하게 폭행한 흑인들 [영상]	인터넷신문
제2020-451호	조선닷컴	6월 3일	국제면	[영상] 지금 뉴욕주에선, 약탈자들이 여성의 얼굴을..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0-452호	언론사명	국민일보(주)
대상보도	인터넷 국민일보 2020년 6월 19일 사회면 「[영상] “마스크 써달라” 했는데...폭행당한 뉴욕 한인직원」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6조 (폭력 묘사 등)		
권고사항	언론은 폭력 장면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미국의 한 상점에서 한인 직원이 고객에게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했다가 구타 당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폭행 영상을 여과 없이 게재하여 폭력 장면을 과도하게 노출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6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2020-452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453호	나우뉴스	6월 17일	국제면	마스크 쓰라니까 발길질·美 한인남성 인종차별 피해 잇따라	인터넷신문
제2020-454호	인사이트	6월 17일	핫이슈면	흑인 손님에게 '마스크' 싸달라고 했다가 폭행당한 한국인 청년 일바생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0-455호	언론사명	(주)인사이트컴퍼니
대상보도	인사이트 2020년 5월 29일 핫이슈면 「도움 요청하는 여학생 '스마트폰' 박살 내고 집단 폭행하는 15살 소년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6조 (폭력 묘사 등)		
권고사항	언론은 폭력 장면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중국에서 남학생들이 여학생을 집단 폭행하는 영상을 여과 없이 게재하여 폭력 장면을 과도하게 노출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6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의결번호	제2020-456호	언론사명	(주)인사이트컴퍼니
대상보도	인사이트 2020년 6월 17일 국제면 「전여친이 다시 안 만나주자 집에 몰래 숨어있다가 '무차별 폭행'한 남성」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6조 (폭력 묘사 등)		
권고사항	언론은 폭력 장면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베트남에서 한 남성이 데이트를 거부한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비록 일부 불리 처리를 하였으나 폭행 영상을 게재하여 폭력 장면이 과도하게 노출되었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6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의결번호	제2020-457호	언론사명	(주)인사이트컴퍼니
대상보도	인사이트 2020년 6월 15일 국제면 「밀렵꾼에 산 채로 ‘뿔’ 잘려 죽은 코뿔소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 (충격·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코뿔소가 뿔이 잘려 죽어있는 장면 등 잔인하고 비참한 모습의 사진을 게재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의결번호	제2020-458호	언론사명	(주)조선일보사
대상보도	조선닷컴 2020년 6월 29일 사회 일반면 「“제주 변호사, 내가 죽이라 했소” 시효 끝난 21년전 진실 드러나」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 (충격·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충격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1999년 제주에서 발생한 변호사 살인 사건을 보도하면서 혈흔이 담긴 당시의 현장사진을 게재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2020-458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459호	인터넷 제주新보	6월 28일	사회면	이○○ 변호사 피살 사건 ‘실체 밝혀지나’	인터넷신문
제2020-460호	이슈제주	6월 28일	정치면	20년 넘긴 살인의 추억, 재수사 가나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0-461호	언론사명	(주)서울신문사
대상보도	인터넷 서울신문 2020년 6월 7일 동남아·호주면 「이란 경찰 총격으로 차량에 불, 아프간 소년의 절규 ‘#물좀주세요」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 (총격·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이란 국경 경비요원들의 총격으로 인해 발생한 차량 화재사건을 보도하면서 화재차량 속 사람이 불에 타는 모습의 영상을 그대로 게재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의결번호	제2020-462호	언론사명	(주)헤럴드
대상보도	헤럴드POP 2020년 6월 9일 화제면 「‘효리네’ 길거리서 무차별 폭행당해 뇌진탕..응급상황」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 (기사 제목)		
권고사항	언론은 기사 본문에 부합하지 않거나 왜곡된 제목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효리네 민박’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한 모델이 최근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고 보도하면서 마치 이효리 부부가 무차별 폭행을 당한 당사자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왜곡된 제목을 사용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언론의 신뢰성을 저하시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의결번호	제2020-463호	언론사명	(주)뉴스1
대상보도	뉴스1코리아 2020년 6월 17일 정치면 「'전략적 공백' 주호영의 다음 수는...“18개 다주면 무얼 얻나”」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뉴스통신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 (여론조사 보도)		



의결번호	제2020-463호	언론사명	(주)뉴스1
권고사항	언론은 국민적 관심사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에는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등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국민적 관심사인 더불어민주당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관한 공부정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면서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등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하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는 독자들에게 해당 조사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판단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의결번호	제2020-464호	언론사명	(주)스포츠포스트
대상보도	sportschosun.com 2020년 6월 2일 생활면 「○○한방병원 ○한방병원 개원...700평 규모 교통사고 입원 치료 가능」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 (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특정 의료기관을 홍보하는 등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0호에 반하는 의료기관의 위치 정보 등을 게재하였고, 바이러인을 삽입하여 독자로 하여금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0호,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0호 및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2020-464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4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465호	베이비타임즈	6월 19일	건강·의료면	○○한의원 ○한방병원, 양·한방합진 진료 제공	인터넷신문
제2020-466호	뉴스워커	6월 10일	광주·전남면	[인터뷰] ○○○ 원장,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척추 분야 최고 권위자'	인터넷신문
제2020-467호	sportschosun.com	6월 10일	생활면	피부과전문 의 진료, '닥터스피부과' 광주점 개원	인터넷신문
제2020-468호	sportschosun.com	6월 2일	생활면	○○○병원, ○○○ 원장 영입으로 전문성 강화에 힘써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0-469호	언론사명	용원중(싱글리스트)
대상보도	싱글리스트 2020년 7월 1일 연예면 「“혼자있을 때 뭐해?” 김민아, 중학생 성희롱 논란→영상 삭제」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사인의 초상을 공개하여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특정 방송인 겸 기상캐스터가 미성년자 성희롱 논란에 휩싸였다고 보도하면서 해당 성희롱 피해자의 초상을 공개하였다. 이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볼 때 당사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 제2020-469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4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470호	인터넷 한국일보	7월 1일	SNS논문	김민아, 정부 유튜브 채널서 중학생에 성희롱?...“애한테 할 소리?” VS “단순유머”	인터넷신문
제2020-471호	포스트쉐어 (postshare)	7월 1일	뉴스픽면	“너 에너지 넘치는데..” 김민아 남중생한테 야한 질문한 뒤 상황	인터넷신문
제2020-472호	한강타임즈	7월 1일	연예면	김민아, 결국 선 넘었나?...유튜브서 중학생에 성희롱성 발언 논란	인터넷신문
제2020-473호	인터넷 스포츠서울	7월 1일	방송면	정부 유튜브 채널에서 중학생에게 “에너지 어디에 푸냐”는 김민아, 섹드립 논란[종합]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0-474호	언론사명	(주)디스패치뉴스그룹
대상보도	디스패치뉴스 2020년 7월 1일 Si면 「“팬티까지 뒤집어 썼다”...유명 탈북 유튜버에게 자위 영상 보낸 여성팬 (극혐주의)」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사인의 초상을 공개하여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한 여성 유튜버가 악성 여성 팬에게 노출사진과 성희롱 등의 충격적인 영상을 받았다고 공개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해당 여성 팬의 초상을 공개하였다. 이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볼 때 당사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의결번호	제2020-475호	언론사명	(주)뉴스스
대상보도	뉴스스 2020년 7월 14일 사회면 「'박원순 사망' 다시 불거진 아들 병역의혹...법정 설까」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뉴스통신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사인의 초상을 공개하여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장례식에 참석한 아들 박주신의 초상을 공개하였다. 비록 박 전 시장이 공적인물이고 해당 보도가 공적 관심 사안과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볼 때, 사인(私人)인 아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 제2020-475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7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476호	동아닷컴	7월 13일	사회면	“박원순 아들 증인신문 해달라”...병역의혹 제기 의사 요청	인터넷신문
제2020-477호	미디어데일	7월 14일	사회면	‘박원순 사망’ 다시 불거진 아들 병역의혹..법정 설까	인터넷신문
제2020-478호	아이뉴스24	7월 23일	사건사고면	법원, 故 박원순 아들 박주신 ‘병역의혹’ 증인신문 내달 26일 지정	인터넷신문
제2020-479호	이코리아	7월 23일	사회면	법원, 고 박원순 아들 박주신, 증인신문 기일 지정	인터넷신문
제2020-480호	인터넷 뉴스도마토	7월 23일	사회면	박원순 아들, 법정 선다...‘병역 비리 의혹’ 증인신문 결정	인터넷신문
제2020-481호	포쓰저널	7월 13일	사회면	“모두 안녕” 박원순 시장 영결식 엄수...화장 후 창병으로	인터넷신문
제2020-482호	뉴데일리	7월 11일	사회면	[현장] ‘박원순 아들’ 박주신 빈소 도착...굳은 표정으로 ‘침묵’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0-483호	언론사명	(주)충청타임즈
대상보도	인터넷 충청타임즈 2020년 7월 23일 종합11면 「청주시내 아파트 동대표 ‘갑질 횡포’」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0-483호	언론사명	(주)충청타임즈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적 정보를 공개하여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p>위 기사는 청주 시내 한 아파트가 동 대표의 갑질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해당 동 대표의 성, 나이 및 그가 거주 중인 아파트명, 동명 등을 공개하였다.</p> <p>이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당사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p> <p>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p>		

▶ 제2020-483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484호	충청타임즈	7월 24일	03면	아파트 동대표 '갑질 횡포'	지역일간지

의결번호	제2020-485호	언론사명	(주)중부매일신문
대상보도	인터넷 중부매일 2020년 7월 20일 사회면 「○○시, 축구협회 전 ○○○장 A씨 경찰 수사 의뢰」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 (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의 혐의자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반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p>위 기사는 유소년축구교실 운영 명목으로 ○○시로부터 받은 보조금 일부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의 전 소속 및 직책, 퇴직 시기 등을 공개하였다.</p> <p>이는 형사사건의 혐의자 등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보도한 것으로서,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p>		

▶ 제2020-485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486호	중부매일	7월 21일	07면	유소년축구교실 운영하더니 ... 보조금 5천만원 '꿀꺽'	지역일간지



의결번호	제2020-487호	언론사명	(주)뉴스와사람들
대상보도	뉴스프리존 2020년 7월 21일 사회일반면 「추 법무부장관, 탄핵발의에도 윤석열 장모·부인 자료 소신 검토」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 (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의 혐의자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반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실명을 공개하였다. 이는 형사사건의 혐의자 등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보도한 것으로서,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1항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의결번호	제2020-488호	언론사명	(주)조선일보사
대상보도	조선닷컴 2020년 7월 10일 사회 일반면 「성추행 고소한 차시장 비서 찾아라」 신상털기로 2차 가해 우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 (보도 윤리)		
권고사항	언론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침해하는 보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고소한 여직원에 대해 가해지는 인터넷 상 신상털기로 2차 가해가 우려된다고 보도하면서 해당 여직원의 신상을 추적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그대로 게재하였다. 이는 성폭력 사건에서 해당 여직원의 신상에 주목하게 하여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제1항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 제2020-488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6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489호	노컷뉴스	7월 10일	사회면	“박시장 前비서 찾아내자”...일부 네티즌 2차 가해	인터넷신문
제2020-490호	뉴데일리	7월 10일	사회면	“구역질” “기생충”... 與 지지자들, ‘박원순 고소인’에 막말, 2차 가해	인터넷신문
제2020-491호	인사이트	7월 10일	정치·사회면	‘성추행’으로 박원순 시장 고소한 여비서 신상 털며 2차 가해 중인 지지자들	인터넷신문
제2020-492호	인터넷 국민일보	7월 10일	시사면	법심판 대신 죽음 택한 박원순... 피해자 고통은 어쩌나	인터넷신문
제2020-493호	인터넷 중앙일보	7월 13일	사회면	“류호정 고소할까” “여기자협회 창X” 與 지지자들 막장 막말	인터넷신문
제2020-494호	인터넷 한국경제	7월 10일	사회면	“박원순은 ‘작업’ 당했다”...여비서 신상털기 2차가해 우려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0-495호	언론사명	이희선(뉴스에듀(newsedu))
대상보도	뉴스에듀(newsedu) 2020년 7월 9일 사회면 「박원순 추정 시신 발견... '미투' 의혹」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 (보도 윤리)		
권고사항	언론은 객관적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진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하여 독자를 혼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 그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되었다고 보도하였다. 이는 객관적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진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으로서 독자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제2항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의결번호	제2020-496호	언론사명	(주)여성신문사
대상보도	인터넷 여성신문 2020년 7월 10일 사회면 「박원순 고소인 찾아내자」 신상 터는 남성들... 2차 가해 심각」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 (차별 금지)		
권고사항	보도 과정에서 그 표현이 사안의 설명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한, 성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과도하게 보도하여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자의 신상을 터는 사람이 남성들이라 보도하였다. 사안의 설명에 직접적 관련이 없음에도 성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보도하는 것은 남성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제2항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의결번호	제2020-497호	언론사명	(주)일요신문사
대상보도	일요신문 2020년 7월 3일 월드면 「동성 성폭행 피해 미군들 “우린 ‘전쟁’에서 살아남은 생존자”」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0-497호	언론사명	(주)일요신문사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 (범죄 묘사)		
권고사항	언론은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 방법을 필요이상으로 설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미국의 부대 내 동성 성폭행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 수법을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제1항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 제2020-497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498호	일요신문	7월 6일	68면	15년 침묵, 10년 투쟁... 지워지지 않는 고통	주간지

의결번호	제2020-499호	언론사명	(주)소셜뉴스
대상보도	위키프리 2020년 7월 7일 월드먼 「대낮에 백화점 찾은 커플, 화장실서 성관계하다 딱 걸렸다 (+증거)」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 (성관련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기사는 베트남의 백화점 내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가진 커플이 화제라고 전하면서 해당 성관계 모습으로 보이는 사진을 게재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제1항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 제2020-499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500호	오픈 디스크스	7월 8일	월드뉴스면	백화점 화장실에서 대낮에 XX하다 '망신' 당한 커플 (사진)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0-501호	언론사명	(주)아시아뉴스통신
대상보도	아시아뉴스통신 2020년 7월 8일 연예/문화면 「BJ진위렌버핏」 극단적 선택 숨진 채 발견 “제 삶은 여기까지...”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뉴스통신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 (자살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자살을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해하도록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인터넷 방송 자키(BJ)의 자살 사건을 보도하면서 지인에게 메신저로 보낸 유언의 내용을 게재하였다. 해당 내용 중 일부가 독자로 하여금 자살을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해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3항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 제2020-501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30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502호	국제뉴스	7월 21일	연예면	[단독]진위렌버핏, 안타까운 선택 그 진실은 ?	뉴스통신
제2020-503호	내외뉴스통신	7월 9일	사회면	'BJ 진위렌버핏' 사망... 극단적 선택 추정	뉴스통신
제2020-504호	뉴스1코리아	7월 9일	사회면	'진위렌버핏' 유서 내용엔...스토킹당했던 김이브 "과거는 뒤로"	뉴스통신
제2020-505호	내외경제TV	7월 8일	방송/연예면	BJ 진위렌버핏 진현기, 마지막 메시지에...작년에도 극단적 선택 시도	인터넷신문
제2020-506호	동아닷컴	7월 8일	연예면	"같이 있어줬어야 했는데..." BJ 진위렌버핏 동료들 애도	인터넷신문
제2020-507호	디스패치뉴스	7월 9일	시면	'진위렌버핏' 유서 내용엔...스토킹 당했던 김이브 "과거는 뒤로"	인터넷신문
제2020-508호	마이데일리	7월 9일	연예면	[종합] 1세대 BJ 진위렌버핏, 극단적 선택 추정→"응원해준 이들에 미안해" 마지막 메시지	인터넷신문
제2020-509호	스타투데이	7월 9일	-	BJ 진위렌버핏(진현기) 사망, 극단적 선택 추정	인터넷신문
제2020-510호	싱글리스트	7월 9일	연예면	BJ 진위렌버핏(진현기), 사망 전 남긴 마지막 메시지 "마음 편안해지고 싶다"	인터넷신문
제2020-511호	엑스포츠뉴스	7월 8일	국내연예면	"억울함 풀어달라" BJ 진위렌버핏, 사망 충격...극단적 선택 추정 [종합]	인터넷신문
제2020-512호	오에스이엔(OSEN)	7월 8일	연예면	BJ 진위렌버핏, 극단적 선택 추정 사망→"가족과 팬들에 죄송하다"[종합]	인터넷신문
제2020-513호	위키트리	7월 8일	엔터면	[단독] 논란 끊이지 않았던 BJ 진위렌버핏 '극단적 선택' 했다	인터넷신문
제2020-514호	인사이트	7월 9일	핫이슈면	"00를 법의 심판 꼭 받게 해줘"...1세대 아프리카TV BJ 진위렌버핏 유서 공개	인터넷신문



▶ 제2020-501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30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515호	인터넷 국민일보	7월 8일	시사면	1세대 BJ 진위렌버핏 숨진 채 발견...“내 억울한 원혼 달래줘”	인터넷신문
제2020-516호	인터넷 금강일보	7월 8일	문화면	진위렌버핏 극단적 선택으로 생마감...김이브 청혼부터 로봉순과 동거까지 재조명	인터넷신문
제2020-517호	인터넷 데일리한국	7월 9일	연예면	진위렌버핏, 극단적 선택 전 남긴 유서 “장례식 웃으면서 해줘”	인터넷신문
제2020-518호	인터넷 디지털타임스	7월 8일	뉴스면	BJ 진위렌버핏 사망 충격... ‘극단적 선택’ 이유	인터넷신문
제2020-519호	인터넷 세계일보	7월 9일	연예면	사망한 유튜브 진위렌버핏이 마지막으로 언급한 유○○ 누구? “법의 심판 받게 해달라”	인터넷신문
제2020-520호	인터넷 스포츠동아	7월 8일	-	[종합] 진위렌버핏, 자택서 숨진 채 발견 “억울함 풀어달라”	인터넷신문
제2020-521호	인터넷 스포츠서울	7월 9일	-	‘1세대’ BJ 진위렌버핏 숨진 채 발견...유언장 발견	인터넷신문
제2020-522호	인터넷 아주경제	7월 9일	-	진위렌버핏 사망에 BJ 유신(유영기) 언급...왜?	인터넷신문
제2020-523호	인터넷 이데일리	7월 9일	사회면	BJ 진위렌버핏, 숨진 채 발견 “억울함 풀어달라” 그는 누구?	인터넷신문
제2020-524호	인터넷 전기신문	7월 8일	전기문화면	진위렌버핏(진현기) 사망, 동료 BJ 스톱킹·성희롱 하더니...“벗은 채 너 나 유혹하냐”	인터넷신문
제2020-525호	투스타뉴스	7월 8일	-	1세대 인터넷 방송인 진위렌버핏(진현기), 사망 소식 전해져 충격...양주산반달곰 등 지인들 추모방송	인터넷신문
제2020-526호	포스트쉐어 (postshare)	7월 9일	-	“꼭 심판받게 해줘...” 현재 밝혀진 BJ 진위렌버핏 유서 내용	인터넷신문
제2020-527호	허핑턴포스트 코리아(The Huffingtonpost Korea)	7월 9일	엔터테인먼트면	1세대 인터넷 방송인 진위렌버핏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인터넷신문
제2020-528호	헤럴드POP	7월 8일	방송면	[POP이슈]BJ 진위렌버핏, 극단적 선택 추정 “마음 편안해지고 싶다”(종합)	인터넷신문
제2020-529호	e머니에스 (e money S)	7월 8일	연예/스포츠면	“억울함 풀어달라”... 아프리카BJ 진위렌버핏 진현기 숨진 채 발견	인터넷신문
제2020-530호	e머니투데이 (e money today)	7월 9일	사회면	진위렌버핏, 유서에 ‘억울하다’...언급한 타 BJ는 ‘휴방’(종합)	인터넷신문
제2020-531호	OBC 더원방송	7월 9일	연예/스포츠면	‘1세대 BJ 진위렌버핏’ 극단적 선택 추정, 부친 한 아파트서 발견..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0-532호	언론사명	(주)인사이트컴퍼니
대상보도	인사이트 2020년 7월 6일 국제면 「접촉사고 나자 상대 ‘반려견’ 빼앗아 목줄 잡고 공중에 휘두르며 학대한 여성 (영상)」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6조 (폭력 묘사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가학적인 내용, 폭력 장면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캐나다의 한 여성이 접촉사고가 나자 상대방의 개를 던지고 휘두르는 등 학대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해당 영상을 그대로 게재하였다. 이는 가학적인 폭력 장면을 필요 이상으로 드러나도록 함으로써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6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의결번호	제2020-533호	언론사명	(주)인사이트컴퍼니
대상보도	인사이트 2020년 6월 30일 핫이슈면 「매일 아이 때리던 새아버가 실수로 닫지 않은 ‘20cm 문틈’으로 기적의 셔터 소리가 울려 퍼졌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6조 (폭력 묘사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가학적인 내용, 폭력 장면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베트남에서 계부가 아이를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그대로 게재하였다. 이는 가학적인 폭력 장면을 필요 이상으로 드러나도록 함으로써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6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 제2020-533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534호	디스패치뉴스	7월 1일	시면	3살 의붓딸 머리 내려치고 목조른 계부...현재 베트남서 난리난 아동학대 사건	인터넷신문
제2020-535호	인터넷 국민일보	7월 1일	국제면	목 졸리면서도 울지 못한 3살...계부의 충격 학대(영상)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0-536호	언론사명	(주)아시아뉴스통신
대상보도	아시아뉴스통신 2020년 7월 3일 연예/문화면 「(종합) AOA 권민아 탈퇴 원인으로 '지민' 언급...손목 사진 공개」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뉴스통신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 (충격·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지나친 충격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최근 가수 출신의 여성이 자해한 흔적이 담긴 손목 사진을 그대로 게재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의결번호	제2020-537호	언론사명	(주)디스패치뉴스그룹
대상보도	디스패치뉴스 2020년 7월 23일 세면 「"아이 차로 치고 바퀴로 밟고..." 안산 스쿨존서 벌어진 경악스러운 교통사고」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 (충격·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지나친 충격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안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이 아이를 치고 지나가는 교통사고 영상을 그대로 게재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 제2020-537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538호	위키투리	7월 23일	사회면	"보다 소리 질렀다..." 경기도 한 스쿨존서 순식간에 벌어진 사고 (영상)	인터넷신문
제2020-539호	인사이트	7월 23일	정치 사회면	스쿨존서 키톨드 타고 가다 차에 치여 '두 번'이나 밟혀 골반 으스스한 소녀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0-540호	언론사명	(주)헤럴드
대상보도	헤럴드POP 2020년 7월 6일 화제면 「장나라, 비행기에서 난동 피워... 결국 정신병원 행」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 (기사 제목)		
권고사항	언론은 기사 본문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왜곡된 제목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배우 장나라가 공황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에 대해 보도하면서 마치 기내 난동을 피우고 정신병원에 갔던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왜곡된 제목을 사용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언론의 신뢰성을 저하시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의결번호	제2020-541호	언론사명	아시아투데이(주)
대상보도	아시아투데이ASIATODAY닷컴 2020년 7월 26일 사회면 「[뉴스추적] 과연 수술실에 CCTV는 필요할까?」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 (여론조사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국민적 관심사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에는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등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국민적 관심사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관한 찬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면서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등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하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는 독자들에게 해당 조사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판단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 제2020-541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3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542호	수도일보	7월 31일	04면	김남국 의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토론회 개최	지역일간지
제2020-543호	인터넷 수도권일보	7월 30일	정치면	김남국 의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토론회 개최	인터넷신문
제2020-544호	아시아투데이 ASIATODAY	7월 27일	01면	수술실 CCTV, 권리인가 감사인가	지역일간지
제2020-545호	서울뉴스통신	7월 30일	정치면	김남국,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위한 토론회 개최	뉴스통신
제2020-546호	아시아뉴스통신	7월 30일	사회/사건/사고면	김남국 의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뉴스통신
제2020-547호	NSP통신	7월 30일	정치/사회면	김남국 의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토론회 개최	뉴스통신
제2020-548호	경기 인터넷 뉴스	7월 30일	국회면	김남국 의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인터넷신문
제2020-549호	경기탐뉴스	7월 30일	안산시면	김남국 의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인터넷신문
제2020-550호	경인투데이뉴스	7월 30일	국회/정치면	김남국 의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인터넷신문
제2020-551호	대한뉴스(인터넷)	7월 31일	정치면	김남국 의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인터넷신문
제2020-552호	메디칼타임즈	7월 30일	의료정책면	김남국 의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토론회 마련	인터넷신문
제2020-553호	서울경기일보	7월 30일	정치/행정면	김남국 의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위한 토론회 개최	인터넷신문
제2020-554호	스트레이트뉴스	7월 30일	사회면	김남국 의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토론회 개최	인터넷신문
제2020-555호	시민PRESS	7월 30일	정치경제면	김남국 의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인터넷신문
제2020-556호	인터넷 국민일보	7월 30일	시사면	김남국, 31일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토론회' 개최	인터넷신문
제2020-557호	인터넷 안산신문	7월 31일	정치면	김남국 의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인터넷신문
제2020-558호	인터넷 의학신문	7월 31일	의원·병원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동'...의협은 '반대'	인터넷신문
제2020-559호	인터넷 인천일보	7월 30일	정치면	김남국 의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인터넷신문
제2020-560호	인터넷 천지일보	7월 30일	전국면	김남국 의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인터넷신문
제2020-561호	인터넷 한국경제	7월 31일	사회면	환자권리 보호 vs 수술기피 조장...의료계 CCTV '진통'	인터넷신문
제2020-562호	탄천뉴스	7월 31일	정치면	김남국 의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인터넷신문
제2020-563호	한국농어촌방송	7월 31일	교통/환경면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논의 본격화...대한의사협회 반대	인터넷신문
제2020-564호	화성뉴스	7월 30일	경기도/수원시/화성시/오산시면	국회 김남국 의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위한 토론회 개최...수술실 CCTV 시범운영 사례발표와 실질적 실행 방안 모색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0-565호	언론사명	(주)머니앤밸류
대상보도	e머니에스(e money S) 2020년 7월 23일 정치면 「결사반대도, 찬성도 쉽지 않아...여권발 '천도론'에 통합당 공공」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 (여론조사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국민적 관심사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에는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등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국민적 관심사인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찬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면서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 일시 · 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등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하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는 독자들에게 해당 조사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판단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 제2020-565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6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566호	이데일리	7월 27일	05면	與, 부동산 해결·대선승리 '일석이조' 노림수... 정치적 활용 그치면 역풍	지역일간지
제2020-567호	인터넷 이데일리	7월 27일	정치면	[공공기관 이전 논란②] '균형발전·부동산·차기대선' 文대통령의 속내는?	인터넷신문
제2020-568호	충청투데이	7월 27일	05면	"행정수도 이전...결국 통합당 참여할 것"	지역일간지
제2020-569호	인터넷 주택건설신문	7월 22일	정치면	특별법 제출에 추진단까지...與, '행정수도 완성' 드라이브	인터넷신문
제2020-570호	대구광역일보	7월 23일	02면	與, '행정수도 완성' 드라이브...특별법에 추진단까지	지역일간지
제2020-571호	인터넷 대구광역일보	7월 22일	정치면	與, '행정수도 완성' 드라이브...특별법에 추진단까지	인터넷신문
제2020-572호	산경일보	7월 23일	03면	특별법 제출에 추진단까지...與, '행정수도 완성' 드라이브	지역일간지
제2020-573호	인터넷 산경일보	7월 22일	정치면	특별법 제출에 추진단까지..與, '행정수도 완성' 드라이브	인터넷신문
제2020-574호	울산신문	7월 23일	04면	민주당,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본격 드라이브	지역일간지
제2020-575호	인터넷 울산신문	8월 22일	정치면	민주당,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본격 드라이브	인터넷신문



▶ 제2020-565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6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576호	호남매일	7월 23일	03면	與 행정수도 이전 시동...특별법·추진단 설치	지역일간지
제2020-577호	인터넷 호남매일	7월 23일	정치면	특별법 제출에 추진단까지...與 '행정수도 완성' 드라이브	인터넷신문
제2020-578호	호남일보	7월 23일	02면	특별법 제출에 추진단까지...與 '행정수도 완성' 드라이브	지역일간지
제2020-579호	The대한일보	7월 23일	02면	특별법 제출에 추진단까지...與 '행정수도 완성' 드라이브	지역일간지
제2020-580호	인터넷 The대한일보	7월 22일	뉴스면	특별법 제출에 추진단까지...與 '행정수도 완성' 드라이브	인터넷신문
제2020-581호	뉴스스	7월 22일	정치면	특별법 제출에 추진단까지...與 '행정수도 완성' 드라이브	뉴스통신

의결번호	제2020-582호	언론사명	(주)네오뉴스
대상보도	<p>뉴스앤뉴스 2020년 7월 20일 정치면 「文대통령 “그린벨트, 미래세대 위해 보존”, 해제 ‘없던 일’로」 제하의 보도</p>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 (여론조사 보도)		
권고사항	<p>언론은 국민적 관심사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에는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등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p>		
이유	<p>위 기사는 국민적 관심사인 그린벨트 해제에 관한 찬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면서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 오차율, 응답률 등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하지 않았다.</p> <p>이러한 보도는 독자들에게 해당 조사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판단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p> <p>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p>		

▶ 제2020-582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583호	더팩트	7월 21일	정치면	[TF초점] 文대통령, '그린벨트 해제' 논란 진화...'태릉골프장'은?	인터넷신문
제2020-584호	인포맥스	7월 20일	부동산면	주택 공급대책 '백가쟁명' 시나리오...최종 카드 뭉개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0-585호	언론사명	(주)데일리메디
대상보도	데일리메디 2020년 7월 22일 의원/병원면 「○○병원, 확장 이전...전염병 관리 시스템 구축」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 (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p>위 기사는 특정 의료기관에 대한 홍보성 내용과 함께 의료기관의 이름, 의료인명, 위치 정보, 전경 사진 등을 상세하게 언급하고 바이라인을 삽입하였다.</p> <p>이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해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및 의료광고의 금지와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 제2항제10호,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0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p>		

▶ 제2020-585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31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586호	라포르시안	7월 22일	의약계·병원면	○○병원, ○○○역 근처로 확장 이전	인터넷신문
제2020-587호	메디팜헬스	7월 22일	의료·병원면	○○병원 ○○○역으로 확장 이전	인터넷신문
제2020-588호	엠디포스트 (MD POST)	7월 27일	병·의원면	○○병원 ○○○역으로 확장 이전	인터넷신문
제2020-589호	인터넷 의계신문	7월 21일	병원면	○○병원, ○○○역으로 확장 이전	인터넷신문
제2020-590호	인터넷 doctor W	7월 28일	뉴스면	○○병원, ○○○역으로 확장 이전	인터넷신문
제2020-591호	청년 의사	7월 28일	동정면	○○병원 ○○○역으로 확장 이전	인터넷신문
제2020-592호	코메디닷컴 (kormedi.com)	7월 27일	바이오워치면	○○병원, ○○○역으로 확장 이전... '클린 Hospital' 시스템 구축	인터넷신문
제2020-593호	헬스오	7월 27일	병원뉴스면	○○병원 ○○○역으로 확장 이전	인터넷신문
제2020-594호	헬스포커스뉴스	7월 25일	의료면	○○병원, ○○○역으로 확장 이전	인터넷신문
제2020-595호	Watcherdaily	7월 27일	의료계면	○○병원 ○○○역으로 확장이전	인터넷신문
제2020-596호	폴리뉴스 (polinews)	7월 18일	지방자치면	○ 정형외과 지난 7일 포항 최초의 의료전문빌딩 '○○○' 개원	인터넷신문
제2020-597호	경북매일	7월 8일	14면	"지역 최고 정형외과 전문병원 만들 것"	지역일간지



▶ 제2020-585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31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598호	인터넷 경북매일	7월 7일	라이프면	"지역 최고 정형외과 전문병원 만들 것"	인터넷신문
제2020-599호	경북일보	7월 9일	13면	꾸준한 첨단 의료 기법 연구 선진적·고품격 서비스 지향	지역일간지
제2020-600호	인터넷 경북일보	7월 8일	포항면	○○○ 원장, ○○○ 원장과 힘 모아 포항 ○○○동 ○○○ '○ 정형외과' 개원	인터넷신문
제2020-601호	브레이크뉴스대구 경북	7월 20일	사회면	선대 가업 이어 인술 펴는 ○○○ 원장, '○ 정형외과' 개원	인터넷신문
제2020-602호	인터넷 영남일보	7월 8일	지역면	젊은 전문의 3명이 포함 ○○○정형외과 개원	인터넷신문
제2020-603호	쿠키뉴스	7월 19일	대구경북면	선대 가업 이어 포항서 인술 펴는 ○○○ 원장의 '인생 2막'	인터넷신문
제2020-604호	프레스리안 (Pressian)	7월 19일	전국면	포항 정형외과 2세 '○○○', 독립 개원 성공	인터넷신문
제2020-605호	비즈니스	7월 22일	헬스면	[클릭! 의료기관 탐방]"의사-간호사 등 8명이 암환자 1명 전담 관리"	인터넷신문
제2020-606호	동아일보	7월 22일	C01면	"의사-간호사 등 8명이 암환자 1명 전담 관리"	중앙일간지
제2020-607호	동아닷컴	7월 22일	건강면	[클릭! 의료기관 탐방]"의사-간호사 등 8명이 암환자 1명 전담 관리"	인터넷신문
제2020-608호	부산닷컴	7월 13일	라이프면	[베스트 메디컬] ○○○안과	인터넷신문
제2020-609호	부산일보	7월 14일	17면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로 노인·백내장 '맞춤 치료'	지역일간지
제2020-610호	인터넷 남도일보	7월 2일	병원탐방면	평생 치아 주치의 자처한 부부 치과 의사	인터넷신문
제2020-611호	남도일보	7월 3일	S07면	평생 치아 주치의 자처한 부부 치과 의사	지역일간지
제2020-612호	인터넷 충청투데이	6월 24일	문화면	척추·관절 최고의 의료진... 최적의 맞춤치료 펼친다	인터넷신문
제2020-613호	충청투데이	6월 25일	08면	척추·관절 최고의 의료진... 최적의 맞춤치료 펼친다	지역일간지
제2020-614호	부산닷컴	7월 20일	라이프면	고난도 척추 내시경 수술·단계별 관절염 치료 '강점'	인터넷신문
제2020-615호	부산일보	7월 3일	17면	고난도 척추 내시경 수술·단계별 관절염 치료 '강점'	지역일간지
제2020-616호	국제뉴스	7월 6일	전국면	세종 충남대병원보다 한발 앞서 개원하는 ○○ 양방, 한방병원	뉴스통신

의결번호	제2020-617호	언론사명	(주)뉴스1
대상 보도	뉴스1코리아 2020년 8월 4일 지방면 「[영상]가평 주택가 침수로 고립된 치매노인 등 구조한 경찰관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뉴스통신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사인의 초상을 공개하여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경찰이 폭우로 고립된 주민을 구조했다고 보도하면서 구조 영상 속 수재민의 초상을 그대로 공개하였다. 이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볼 때 당사자의 초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의결번호	제2020-618호	언론사명	(주)경향신문사
대상 보도	인터넷 경향신문 2020년 8월 6일 사회면 「[경향포토]철원초교에 마련된 대피소」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사인의 초상을 공개하여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폭우로 침수 피해를 본 주민들이 임시 쉼터에 대피해 있다고 보도하면서 텐트 안에서 쉬고 있는 수재민의 초상을 공개하였다. 이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볼 때 당사자의 초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의결번호	제2020-619호	언론사명	(주)조선일보사
대상 보도	조선닷컴 2020년 7월 28일 사회면 「[단독] “한번 만지게 큰죄냐” 박원순 피해자 조롱 ‘클리앙’ 압수수색」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 (보도 윤리), 제4조 (성폭력피해자 보호)		



의결번호	제2020-619호	언론사명	(주)조선일보사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를 자세히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침해하는 보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이 자신을 비방하는 게시글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하면서 해당 여성을 조롱하는 게시글을 그대로 게재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피해상태나 정황에 대해 게시자가 추측 또는 상상의 내용을 여과 없이 공표한 것으로, 해당 여성에게 2차 가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 제2020-619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0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620호	조선일보	7월 29일	10면	“성추행 증거만 30개” 박원순 피해여성측, 인권위 직권조사 요청	중앙일간지
제2020-621호	데일리안	7월 29일	전체기사면	경찰, 클리앙·이토 등 압수수색…박원순 피해자 ‘2차가해’ 혐의	인터넷신문
제2020-622호	여원뉴스	7월 28일	못참겠다면	“한번 만진게 큰죄냐” 박원순 피해자 조롱 ‘클리앙’ 압수수색	인터넷신문
제2020-623호	위키트리	7월 28일	사회면	“씩 다 수사한다” 클리앙·FM코리아·디씨 유저들에 큰일날 소식 전해졌다	인터넷신문
제2020-624호	인터넷 국민일보	7월 28일	시사면	“비서도 즐겼겠지” 박원순 피해자 조롱 커뮤니티 압색	인터넷신문
제2020-625호	인터넷 일간스포츠	7월 28일	사회면	“한번 만진게 죄냐” 박원순 피해자 조롱 ‘클리앙’ 등 압수수색	인터넷신문
제2020-626호	인터넷 중앙일보	7월 28일	사회면	“한번 만진게 죄냐” 박원순 피해자 조롱 ‘클리앙’ 등 압수수색	인터넷신문
제2020-627호	인터넷 한국경제	7월 28일	사회면	“비서도 즐겼겠지” 박원순 피해자 조롱한 친여 커뮤니티 압수수색	인터넷신문
제2020-628호	인터넷 한국일보	8월 4일	사회면	‘박원순 피해자 2차 가해’ 논란 커뮤니티 회원들·줄줄이 경찰조사	인터넷신문
제2020-629호	허핑턴포스트코리아 (The Huffingtonpost Korea)	7월 28일	뉴스면	경찰이 “한 번 만진 게 죄냐”며 박원순 성추행 사건 피해자 조롱한 웹사이트들을 압수수색 중이다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0-630호	언론사명	(주)전남일보
대상 보도	인터넷 전남일보 2020년 8월 12일 오피니언면 「서양에도 '김여사' 여성혐오도 팬데믹?」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 (차별 금지)		
권고사항	언론은 성별을 이유로 편견적 표현을 삼가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우리나라의 '김여사'와 상응하는 단어가 서양에도 있다고 소개하면서 운전이 미숙하거나 운전태도가 좋지 않은 중년 여성운전자를 비하하는 '김여사'라는 표현을 여과 없이 사용하여 보도하였다. 이는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관념을 조장하는 편견적 표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제1항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 제2020-630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631호	전남일보	8월 12일	18면	서양에도 '김여사'... 여성 혐오도 '팬데믹'?	지역일간지

의결번호	제2020-632호	언론사명	(주)인사이트컴퍼니
대상 보도	인사이트 2020년 8월 6일 사건사고면 「“처음 본 남자가 제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며 눈알이 흘러내릴 정도로 구타했습니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6조 (폭력 묘사 등), 제17조 (충격·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가학적인 내용, 폭력 장면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잔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노상에서 발생한 무차별 폭행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당시 영상을 그대로 게시하여 가학적인 폭력 장면이 필요 이상으로 드러나도록 하였고, 부상을 입은 피해자의 사진을 여과 없이 게재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6조 및 제17조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의결번호	제2020-633호	언론사명	아이앤비넷(주)
대상보도	노트펫 2020년 7월 24일 사회면 「반려동물에 직접 주사놓으라고?’ 불법 조장 논란 기획재정부 SNS」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 (충격·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과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견주의 자가접종 후 쇼크사한 반려견에 대해 보도하면서 죽은 푸들의 혈흔 및 사체 사진을 그대로 게재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의결번호	제2020-634호	언론사명	(주)인사이트컴퍼니
대상보도	인사이트 2020년 8월 19일 국제면 「자기가 놓친 '강아지 목줄'에 발 걸려 쓰러진 할머니 보고도 그대로 도주한 12살 소녀」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 (충격·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지나친 충격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중국에서 길거리에 서 있던 한 할머니가 달려오던 강아지의 목줄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하면서 당시 영상을 그대로 게시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 제2020-634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635호	인터넷 국민일보	8월 20일	시사면	개 목줄 걸려 목숨 잃은 88살 中할머니...분노 부른 영상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0-636호	언론사명	(주)인사이트컴퍼니
대상보도	인사이트 2020년 7월 23일 사건사고면 「브레이크인 줄 알고 '액셀' 밟은 택배 트럭에 3살 아들 깔리자 2초 만에 엄마가 한 행동」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 (충격·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지나친 충격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노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보도하면서 택배 화물차에 3살 아이가 깔리는 사고 당시 영상을 그대로 게시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 제2020-636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637호	디스패처뉴스	8월 1일	세면	“3살 아들+아내가 택배 차량에 깔려 크게 다쳤는데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인터넷신문
제2020-638호	인터넷월요신문	7월 29일	산업면	“택배 차량이 아이를 덮쳤어요”...○○택배, 알고도 왜 수수하나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0-639호	언론사명	(주)헤럴드
대상보도	헤럴드POP 2020년 7월 31일 화제면 「현아, 수치심도 없나..남친과 난잡한 사진을」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 (기사 제목)		
권고사항	언론은 기사 본문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선정적인 제목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특정 여가수와 그녀의 남자친구가 속옷 화보를 찍었다고 보도하면서 기사 본문과 부합하지 않는 선정적인 제목을 사용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로 하여금 두 사람간에 모종의 난잡한 행위가 있었던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언론의 신뢰성을 저하시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의결번호	제2020-640호	언론사명	(주)조세금융신문
대상보도	조세금융신문 2020년 8월 13일 금융면 「'공매도금지' 시한 한달 남았다...찬반 대립 '팽팽'」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 (여론조사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국민적 관심사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는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등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국민적 관심사인 공매도 제도 존속에 관한 찬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면서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표본오차율, 응답률 등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하지 않았다. 이는 독자들에게 해당 조사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 제2020-640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5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641호	이투데이신문	8월 19일	03면	“개미 죽는다, 금지연장을” vs “외인 떠난다, 제도보완만”	지역일간지
제2020-642호	이투데이	8월 18일	증권·금융면	“공매도는 기울어진 운동장, 금지 연장해야” vs. “금지 장기화면 외국인 투자 줄 수도”	인터넷신문
제2020-643호	뉴스1코리아	8월 16일	금융/증권면	‘금지 연장?’ 정치 이슈된 공매도...고민 깊어진 금융당국	뉴스통신
제2020-644호	인터넷 세계일보	8월 16일	비즈면	이재명 “공매도 금지 6개월~1년 이상 추가 연장해야”	인터넷신문
제2020-645호	investchosun	8월 20일	FreeNews면	자본시장 뒤흔려가는데...‘공매도 금지’ 두고 정부는 표 계산만?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0-646호	언론사명	이향순(대전인터넷신문)
대상보도	대전인터넷신문 2020년 7월 30일 정치면 「강준현 의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실질적인 행정수도 이전 방안 논의」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 (여론조사 보도)		

의결번호	제2020-646호	언론사명	이항순(대전인터넷신문)
권고사항	언론은 국민적 관심사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는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등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국민적 관심사인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찬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면서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표본오차율, 응답률 등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하지 않았다. 이는 독자들에게 해당 조사결과와 신뢰성과 객관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 제2020-646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2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647호	충청신문	7월 31일	03면	"행정수도 완성·균형발전은 시대적 과제"	지역일간지
제2020-648호	인터넷 충청신문	7월 30일	정치면	"실질적인 행정수도 이전 방안 논의"	인터넷신문
제2020-649호	뉴스핌통신	7월 30일	대전·세종·충남면	강준현 의원 "행정수도 완성 시대적 요구 응답해야"	뉴스통신
제2020-650호	로컬투데이(LOCAL TODAY)	7월 30일	local전국면	"행정수도·국토균형발전 완성이란 시대적 요구에 응답해야"	인터넷신문
제2020-651호	세종방송	7월 30일	정치/행정면	행정수도완성 열망, 국회에서 재 점화	인터넷신문
제2020-652호	시사세종	7월 30일	세종시면	강준현 의원, 실질적인 행정수도 이전 방안 논의	인터넷신문
제2020-653호	인터넷 국토일보	7월 31일	지방종합면	강준현 의원 "행정수도와 국토균형발전 완성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응답해야"	인터넷신문
제2020-654호	인터넷 굿모닝충청	7월 30일	세종면	김주환 교수 "법률 제·개정만으로 (세종으로)수도 이전 가능"	인터넷신문
제2020-655호	인터넷 이뉴스투데이	7월 30일	세종취재본부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성황 속 개최	인터넷신문
제2020-656호	인터넷 충남일보	7월 30일	종합뉴스면	국회서 "행정수도·국토균형발전 완성" 한목소리	인터넷신문
제2020-657호	인터넷 충청일보	7월 30일	정치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개최	인터넷신문
제2020-658호	인터넷 투데이충남	7월 30일	정치면	[정치] 강준현 의원, "행정수도 완성시대적 요구에 응답해야"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0-659호	언론사명	(주)스포츠포스트
대상보도	sportschosun.com 2020년 8월 7일 생활면 「○○병원, 8월3일 ○○○ 피부과 신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 (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특정 의료기관에 대한 홍보성 내용과 함께 의료기관의 이름, 의료인명, 위치 정보 등을 상세하게 언급하고 바이라인을 삽입하였다. 이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해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및 의료광고의 금지와 금지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 제10호,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0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의결번호	제2020-660호	언론사명	(주)스포츠포스트
대상보도	sportschosun.com 2020년 9월 14일 연예면 「성매매 논란' 엄태웅, 5년만 SNS 재개→♥윤혜진도 응서...복귀 시동거나 [종합]」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사인의 초상을 공개하여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특정 연예인이 과거 성매매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을 보도하면서 미성년자 자녀의 초상을 함께 보도하였다. 이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볼 때 당사자의 초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 제2020-660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5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661호	뉴스웍스	9월 15일	연예면	'엄태웅♥ 윤혜진, '붕어빵 미모' 딸 ○○양과 강변 산책길...“하늘 무슨 일”	뉴스통신
제2020-662호	스타뉴스	9월 14일	방송면	'성매매 벌금' 엄태웅, 5년만 SNS 재개 "활동 복귀? 아직"[공식]	인터넷신문
제2020-663호	스타투데이	9월 15일	주요뉴스면	'엄태웅♥ 윤혜진, 딸 ○○과 똑같은 눈웃음...“산책중 하늘”	인터넷신문
제2020-664호	오에스이엔(OSEN)	9월 12일	방송면	엄정화, 울케 윤혜진+폭풍성장 조카 ○○과 '행복'... “이쁜이들” [종합]	인터넷신문
제2020-665호	조선닷컴	9월 14일	연예면	'성매매 논란' 엄태웅, 5년만 SNS 재개→♥윤혜진도 응서...복귀 시동거나 [종합]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0-666호	언론사명	뉴데일리(주)
대상보도	뉴데일리 2020년 9월 22일 포토면 「[포토] 행동하는자유시민, 추미애 정치자금법 및 사기죄 혐의로 고발(전문)」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사인의 성명을 공개하여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특정 시민단체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사기죄 혐의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보도하면서 추미애 장관 딸과 아들의 성명을 공개하였다. 이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볼 때, 비록 추미애 장관이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해당 보도가 공적 관심 사인과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사인(私人)인 이들의 성명을 공개한 것은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 제2020-666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2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667호	인터넷 시사포커스	9월 2일	시사포커스 TV면	[포커스TV] 신원식, 추미애 아들 부대장교 녹취록 공개...“보좌관 전화 왔었다” [전문]	인터넷신문
제2020-668호	내외뉴스통신	9월 2일	정치면	신원식 의원, 녹취록 공개...“추미애 보좌관 군부대에 전화했다”	뉴스통신
제2020-669호	뉴스핌통신	9월 2일	국회·정당면	[전문] 신원식, 추미애 아들 휴가 논란 녹취록 공개 “담당 대위, 秋 보좌관 전화받아”	뉴스통신
제2020-670호	더자유일보	9월 20일	자유논단면	조국, 김홍걸, 추미애 아들... 초엘리트들의 ‘특권의식’	인터넷신문
제2020-671호	데일리안	9월 2일	정치면	[전문] “추미애 보좌관 전화 받았다” 신원식, 추미애 아들 의혹 녹취록 공개	인터넷신문
제2020-672호	부산닷컴	9월 2일	정치면	野 추미애 아들 ‘황제휴가’ 의혹 녹취 공개 “秋 보좌관 전화 받았다”	인터넷신문
제2020-673호	아시아투데이ASIA TODAY닷컴	9월 2일	정치면	[전문] 신원식, 추미애 아들 담당 장교 녹취록 공개 “秋 보좌관 전화받았다”	인터넷신문
제2020-674호	위키트리	9월 2일	정치면	“결국 녹취록 공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대 휴가 문제 커졌다 (전문)	인터넷신문



▶ 제2020-666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2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675호	이투데이	9월 2일	정치·경제면	[전문]신원식 “추미애 아들, 황제 휴가 농단”... 부대 장교 통화 녹취록 공개	인터넷신문
제2020-676호	인터넷 금강일보	9월 13일	사회면	서○○ 의혹, 현모씨 실명공개 논란은 무엇?...추미애 “이제 진실의 시간”	인터넷신문
제2020-677호	인터넷 서울경제	9월 2일	사회면	[전문]추미애 장관 아들 담당 장교 녹취록...보좌관 전화왔나 묻자 “예”	인터넷신문
제2020-678호	인터넷 세계일보	9월 1일	정치면	추미애 “보좌관이 제 아들 휴가 연장 요청? 팩트체크도 안 된 발언... 단골메뉴”	인터넷신문
제2020-679호	인터넷 아시아일보	9월 2일	정치면	미래통합당 신원식 의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엽기적인 ‘황제휴가’는 조선시대 군정 문란도 울고 갈 현대의 국가문란 의혹이다”	인터넷신문
제2020-680호	인터넷 이데일리	9월 2일	정치면	[전문] 추미애 아들 복무 당시 장교 “보좌관 전화 받아”... 녹취 공개	인터넷신문
제2020-681호	인터넷 중앙일보	9월 2일	정치면	신원식 “추미애 보좌관이 전화” 녹취록 공개...추가 폭로도 경고	인터넷신문
제2020-682호	인터넷 한국경제	9월 2일	정치면	[전문] 추미애 아들 軍 관계자 녹취록...“보좌관이 직접 전화”	인터넷신문
제2020-683호	직설	9월 3일	-	“보좌관 전화왔나?” “예” 추미애 아들 논란 녹취록 공개[전문]	인터넷신문
제2020-684호	쿠기뉴스	9월 2일	정치면	신원식, 추미애 아들 ‘황제휴가’ 녹취록 공개... “秋 보좌관, 휴가 연장 문의했다” [전문]	인터넷신문
제2020-685호	팬앤드마이크	9월 28일	정치면	보좌관에게 부대 장교와 연락 부탁 없다더니...탄로난 추미애의 ‘거짓말말말’	인터넷신문
제2020-686호	CBC뉴스	9월 2일	이슈면	신원식,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관련 녹취록 공개 [전문]	인터넷신문
제2020-687호	e클로벨이코노믹	9월 13일	종합면	현모씨, 휴가 미복귀 의혹제기 진실은?... “추미애 아들 서○○ 의혹제기는 가짜뉴스 가능성”	인터넷신문
제2020-688호	ilyoseouli	9월 2일	국회/정당면	[추미애 아들 병역 논란 증언록全文] 녹취록 “병가 10일, 근거 없다”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0-689호	언론사명	추광규(인터넷뉴스신문고)
대상보도	인터넷뉴스신문고 2020년 8월 26일 사회면 「백은종, 윤석열 인터뷰 시도를 ‘무단침입’ 보도한 언론들 맹비난」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 (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의 혐의자 등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조국 전 장관의 딸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건물에 들어가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당한 방송사 기자의 초상을 공개하여 그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이는 형사사건의 혐의자 등에 대한 익명보도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의결번호	제2020-690호	언론사명	(주)머니투데이
대상보도	e머니투데이(e money today) 2020년 9월 3일 사회면 「“아프다 하면 더 좋다며”...20명 이상 성폭행 사범대 준비생 처벌 청원」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 (성폭력피해자 보호)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보도하거나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가 언급한 가해자의 가학적인 발언 및 행동 일부를 기사 제목 및 본문에서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였다. 이는 성폭력피해자 보호에 미흡한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의결번호	제2020-691호	언론사명	김도성(저스트저널)
대상보도	저스트저널 2020년 8월 16일 뉴스면 「광화문 집회, ‘문재인 탄핵·나라가 니꺼냐’ 경찰 괴잉진압 ‘사망’... ‘팬티’ 차림 차량 돌진」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 (보도 윤리),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의결번호	제2020-691호	언론사명	김도성(저스트저널)
권고사항	언론은 객관적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진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하여 독자를 혼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인의 초상을 공개하여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p>위 기사는 지난 8월 15일에 광화문 집회 참가자가 경찰버스에 끼여 사망하였다고 보도했으나 경찰의 당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결과, 버스는 움직임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p> <p>비록 사망 의혹설을 보도할 수 있다 하더라도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보도하여 독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도 윤리 준수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볼 때, 비록 집회 참가자라 하더라도 버스에 끼인 사고 당시의 모습을 부각하여 보도하는 것은 당사자의 초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p> <p>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제2항 및 제1조1항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p>		

의결번호	제2020-692호	언론사명	(주)펜앤드마이크
대상보도	펜앤드마이크 2020년 8월 16일 사회면 「사진으로 다시 보는 광복절 집회... “국민은 위대하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사인의 초상을 공개하여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p>위 기사는 지난 8월 15일에 열린 광화문 집회에 대해 보도하면서 경찰버스에 끼인 상태와 바닥에 쓰러진 상태의 집회 참가자 초상을 공개하였다.</p> <p>이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볼 때, 비록 집회 참가자라 하더라도 사고 당시의 모습을 부각하여 보도하는 것은 당사자의 초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p> <p>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p>		

▶ 제2020-692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693호	뉴스코리아 월드	8월 15일	일반뉴스면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경찰버스에 시인 2명 끼여 병원 이송	인터넷신문
제2020-694호	인터넷 파이낸스투데이	8월 16일	뉴스 일반면	광화문시위 중 시민이 경찰버스에 낀 사고, “후속 조치는?”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0-695호	언론사명	(주)서울신문사
대상 보도	나우뉴스 2020년 8월 29일 국제면 「[여기는 호주] '호주판 김여사'의 살벌한 역주행 (영상)」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 (차별 금지)		
권고사항	언론은 성별을 이유로 한 편견적 표현을 삼가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호주에서 음주 상태로 역주행한 여성운전자에 대해 보도하면서 기사제목에 운전이 미숙하거나 운전태도가 좋지 않은 중년 여성운전자를 비하하는 '김여사'라는 표현을 여과 없이 사용하였다. 이는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관념을 조장하는 편견적 표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제1항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의결번호	제2020-696호	언론사명	정성길(인터넷 시사투데이)
대상 보도	인터넷 시사투데이 2020년 8월 28일 종합면 「'오륙남'이 문제...50·60 남성, 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난동 최대 민폐자」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 (차별 금지)		
권고사항	언론은 성별, 나이를 이유로 한 편견적 표현을 삼가야 하며, 보도 과정에서 그 표현이 사안의 설명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한, 성별, 나이에 관한 세부 사항을 과도하게 언급하여 편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가 시행 중임에도 마스크 미착용자의 대중교통 탑승제한과 관련된 마찰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사건의 피의자 상당수가 50~60대 남성이라고 보도하면서 이들을 지칭하는 신조어인 '오륙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50~60대 남성에 대해 위생관념이 젊은층보다 소극적일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인용보도하였다. 이는 특정 나이대 남성에 대한 편견적 표현으로 독자에게 부정적 관념을 심어주어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 제2020-696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9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697호	세계일보	8월 28일	04면	대중교통 노마스크 마찰 절반인 '오륙남'	중앙일간지



▶ 제2020-696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9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698호	무등일보	9월 10일	19면	가족과 탄 엘리베이터, 노마스크 '오륙남'이 타려 한다면	지역일간지
제2020-699호	인터넷 무등일보	9월 9일	오피니언면	[무등칼럼] 가족과 탄 엘리베이터, 노마스크 '오륙남'이 타려 한다면	인터넷신문
제2020-700호	산경일보	8월 28일	06면	'마스크 거부' 대중교통 독불장군 오륙남	지역일간지
제2020-701호	인터넷 산경일보	8월 27일	사회면	'마스크 거부' 대중교통 독불장군 오륙남	인터넷신문
제2020-702호	뉴스시스	8월 27일	사회면	"마스크 안쓸란다"...대중교통 최대 독불장군은 '오륙남'	뉴스통신
제2020-703호	인터넷 이데일리	8월 28일	사회면	'지하철 마스크 싸움' 영상 퍼져...또 '오륙남'	인터넷신문
제2020-704호	허핑턴포스트코리아 (The Huffingtonpost Korea)	8월 28일	뉴스면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거부하고 폭행 사건 일으킨 이들은 '오륙남'이다	인터넷신문
제2020-705호	e머니투데이 (e money today)	8월 27일	사회면	버스·지하철서 "마스크 쓰기 싫다" 행패...오륙남은 왜 그럴까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0-706호	언론사명	(주)세계일보
대상보도	인터넷 세계일보 2020년 8월 27일 사회면 「'오륙남'이 문제... 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난동 등 최대 민폐자는 50~60대 남성」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 (차별 금지), 제16조 (폭력 묘사 등)		
권고사항	언론은 성별, 나이를 이유로 한 편견적 표현을 삼가야 하며, 보도 과정에서 그 표현이 사안의 설명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한, 성별, 나이에 관한 세부 사항을 과도하게 언급하여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언론은 폭력 장면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p>위 기사는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행패를 부려 경찰에 검거된 피의자 대부분이 50~60대 남성이라고 보도하면서 이들을 지칭하는 신조어인 '오륙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50~60대 남성에 대해 위생관념이 젊은층보다 소극적일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인용 보도하였다. 이는 특정 나이대 남성에 대한 편견적 표현으로 독자에게 부정적 관념을 심어주어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p> <p>한편 위 기사는 50대 남성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을 폭행하는 모습의 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는 폭력 장면을 필요 이상으로 드러나도록 한 것으로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p> <p>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제1항, 제10조의2제2항, 제16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p>		

의결번호	제2020-707호	언론사명	(주)에스비에스
대상 보도	SBS 2020년 8월 27일 8시뉴스 프로그램 「“마스크 써 달라”...이 말에 지하철서 난동 부린 승객」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방송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6조 (폭력 묘사 등)		
권고사항	언론은 폭력 장면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p>위 기사는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을 구타하고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보도하면서 폭력장면이 포함된 영상을 게시하였다.</p> <p>이는 폭력 장면을 필요 이상으로 드러나도록 한 것으로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p> <p>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6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p>		

▶ 제2020-707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8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708호	YTN	8월 28일	-	“마스크 써달라” 요구하자 슬리퍼 벗어 폭행	방송
제2020-709호	노컷뉴스	9월 16일	사회면	[영상] ‘노마스크’ 지하철서 슬리퍼 난동 50대, 구속 기소	인터넷신문
제2020-710호	디스패치뉴스	8월 27일	세면	“마스크 써달라” 무자비한 폭행 사건 일어난 오늘자 2호선 (영상)	인터넷신문
제2020-711호	인사이트	9월 28일	사건사고면	지하철서 마스크 착용 요구하자 ‘슬리퍼’로 뺨 때리는 50대 남성(영상)	인터넷신문
제2020-712호	인터넷 일요시사	8월 28일	일요시사TV면	<일요시사TV> ‘지하철 격투’ “마스크 좀 써주세요” 했더니 반응이...	인터넷신문
제2020-713호	인터넷 중앙일보	8월 28일	사회면	[영상]지하철 마스크 폭행男 구속 “24년간 조울증약 먹었다”	인터넷신문
제2020-714호	인터넷 한스경제	8월 30일	사회면	[영상] ‘지하철 마스크 싸움’ 논란...경찰 “마스크 미착용 대중교통 이용자, 곧바로 처벌”	인터넷신문
제2020-715호	CBC뉴스	8월 28일	이슈면	지하철 마스크 싸움, 경찰 현행범 체포 소동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0-716호	언론사명	(주)소셜뉴스
대상보도	위키트리 2020년 8월 28일 사회면 「“마스크 미착용 지적 반자...” 승객 폭행한 ‘슬리퍼남’ (+영상)」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6조 (폭력 묘사 등),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폭력 장면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언론은 사인의 초상을 공개하여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을 구타하고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보도하면서 해당 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는 폭력 장면을 필요 이상으로 드러나도록 한 것으로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폭행 영상에서 가해자 및 일반 시민들의 초상이 공개되었는바, 이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볼 때 당사자의 초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6조 및 제1조제1항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 제2020-716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717호	인터넷 한국경제	8월 28일	사회면	출근길 지하철 싸움 화제...마스크 착용 요구하자 난동 [영상]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0-718호	언론사명	서유주(뉴스포인트)
대상보도	뉴스포인트 2020년 9월 5일 사회면 「○대생 인터뷰, ‘디지털 교도소’에 신상 공개된 ○대생 사망... “생전 억울함 호소”」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 (자살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성범죄자 등의 신상정보를 임의로 공개하는 웹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된 후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의 성명, 나이 및 소속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은 보도는 자살자 및 가족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의결번호	제2020-719호	언론사명	(주)조선일보사
대상 보도	조선닷컴 2020년 8월 22일 사회면 「'○○대교 수호천사'의 극단 선택」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 (자살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자살 시도자 200여 명을 구해 상을 받은 바 있는 한 경찰 간부가 자살했다고 보도하면서 그의 소속, 직위, 나이, 근무 이력 및 수상명 등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은 보도는 자살자 및 가족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 제2020-719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720호	여원뉴스	8월 22일	사회면	○○서 간부 숨진 채 발견...성추행 들어나자 극단선택?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0-721호	언론사명	(주)제민일보
대상 보도	인터넷 제민일보 2020년 8월 24일 Culture면 「권영찬, 112 신고 “김호중 향해 네 XX 곱게 갈아서 먹여주겠다” 진인한 협박 때문에…」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6조 (폭력 묘사 등)		
권고사항	언론은 언어폭력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특정 가수가 협박을 당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해당 협박글 캡처사진을 상세히 게재하였다. 이는 언어폭력적 내용이 담긴 캡처사진을 필요 이상으로 드러나도록 한 것으로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6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 제2020-721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722호	아시아뉴스통신	10월 5일	사회/사건/사고면	[단독]권영찬 교수, 미스터트롯 '김호중 협박카피' 경찰에 고발장 접수..추기자료 80장	뉴스통신
제2020-723호	인터넷 전기신문	8월 21일	전문화면	권영찬, 112 신고 감행...왜? "김호중 향해 네 XX 굵게 갈아서 먹여주겠다" 끔찍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0-724호	언론사명	(주)디스패치뉴스그룹
대상보도	디스패치뉴스 2020년 9월 15일 4면 「"굉음이 들렸다"...미쳤다는 말까지 나온 어제자 부산 포르쉐 블랙박스 영상 공개」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 (충격·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지나친 충격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부산 해운대구 도심에서 과속으로 질주하던 자동차가 오토바이, 버스 등과 충돌하는 사고 당시 영상을 그대로 게시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이들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 제2020-724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2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725호	뉴스1코리아	9월 15일	지방면	[영상] 해운대 '광란의 질주' 포르쉐..7중 추돌사고 블랙박스 영상	뉴스통신
제2020-726호	뉴스1	9월 15일	부산면	'해운대 광란의 질주' 포르쉐 운전자는 대마 피웠다(종합)	뉴스통신
제2020-727호	로톡뉴스	9월 16일	이슈면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와 해운대 포르쉐 사고의 공통점 '증거 인멸 시도', 처벌은?	인터넷신문
제2020-728호	위키트리	9월 15일	사회면	순식간에 부산 해운대 난장판 만든 포르쉐..충격 현장 공개됐다	인터넷신문
제2020-729호	인터넷 국민일보	9월 15일	전체기사면	해운대 7중 추돌 포르쉐 운전자, 대마초 흡입 후 '환각 질주'	인터넷신문
제2020-730호	인터넷 매일신문	9월 15일	사회면	[영상] 광란의 해운대 포르쉐..7중 추돌 직전에 사고 2번 더 내	인터넷신문

▶ 제2020-724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2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731호	인터넷 세계일보	9월 15일	사회면	해운대 '광란의 질주'이유는 대마 흡입?...포르쉐 안에서 통장 60여개 우르르[영상]	인터넷신문
제2020-732호	인터넷 한국경제	9월 15일	사회면	해운대 '광란질주' 포르쉐...알고 보니 대마 흡입 [영상]	인터넷신문
제2020-733호	조선닷컴	10월 14일	사회면	대마초 질주, 해운대 포르쉐 운전자 구속...법원, 영장발부	인터넷신문
제2020-734호	조선비즈	9월 15일	사회면	해운대 '광란의 질주' 포르쉐...대마 흡입 후 환각 운전	인터넷신문
제2020-735호	채널e뉴스	9월 18일	사회면	대마초 흡입후 해운대 7중 추돌사고 낸 포르쉐 운전자 '구속'	인터넷신문
제2020-736호	e머니투데이 (e money today)	9월 16일	사회면	'대마 환각 질주' 해운대 포르쉐, 빼들린 블랙박스엔... '이상행동' (종합)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0-737호	언론사명	(주)뉴스1
대상 보도	뉴스1코리아 2020년 9월 1일 국제면 「[영상]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상황...환자 몸에서 나온 1.2m 뱀」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뉴스통신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 (충격·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지나친 충격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러시아 한 여성의 몸에서 뱀이 나왔다고 보도하면서 여성의 입을 통해 뱀을 꺼내는 영상을 그대로 게시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이들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 제2020-737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738호	뉴스핑크	9월 3일	인류면	러시아 여성 몸속에서 1m 넘는 뱀 줄줄이 나와 충격 (영상)	인터넷신문
제2020-739호	인터넷 일간스포츠	9월 1일	국제면	[영상]뱀이 왜 거기서..몸에서 나온 1.2m 뱀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0-740호	언론사명	(주)소셜뉴스
대상보도	위키트리 2020년 8월 26일 월드면 「“오토바이 운전자가 개를 줄에 묶어 질질 끌고가고 있어요” (영상)」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 (충격·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지나친 충격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중국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개를 줄에 묶어 차도를 따라 끌고가는 영상이 공개됐다고 보도하면서 해당 영상을 그대로 게시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이들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의결번호	제2020-741호	언론사명	(주)광주미디어
대상보도	광주in 2020년 9월 11일 문화·미디어면 「구례 사람들, 섬진강 수해에 죽은 소들의 영혼을 달래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 (충격·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지나친 충격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구례에서 수해로 죽은 소들을 위한 위령제를 지냈다고 보도하면서 소 사체 사진을 그대로 게재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이들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의결번호	제2020-742호	언론사명	(주)소셜뉴스
대상보도	위키트리 2020년 9월 22일 월드면 「“유명 브랜드 소스에서 동물 ‘사체’가 나왔습니다” (사진)」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 (충격·혐오감)		

의결번호	제2020-742호	언론사명	(주)소셜뉴스
권고사항	언론은 지나친 충격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p>위 기사는 중국 최대 조미료 업체의 굴소스에서 박쥐 사체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굴소스 제품에서 박쥐 사체가 나온 장면을 그대로 게재하였다.</p> <p>이는 일반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이들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p> <p>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p>		

▶ 제2020-742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9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743호	뉴스스	9월 22일	국제일반면	中 유명 굴소스제품서 박쥐사체 나와?..관련업체 “블랙컨슈머 벌인 일”	뉴스통신
제2020-744호	나우뉴스	9월 16일	토픽면	[여기는 중국] 굴소스 통 안에서 박쥐 사체 동등... “거의 다 먹었는데”	인터넷신문
제2020-745호	동아닷컴	9월 22일	국제면	유명 굴소스제품서 박쥐사체 나와?...관련업체 “블랙컨슈머 벌인 일”	인터넷신문
제2020-746호	디스패치뉴스	9월 18일	ALL면	“3개월동안 굴소스 먹다가 발견” 바닥에서 나온 충격적인 정체	인터넷신문
제2020-747호	인터넷 국민일보	9월 22일	국제면	중국 유명 굴소스에서 나온 ‘온전한’ 박쥐 사체의 진실	인터넷신문
제2020-748호	인터넷 세계일보	9월 22일	비즈면	“유명 조미료업체 생산 굴소스에서 박쥐 사체 나왔다고요?”	인터넷신문
제2020-749호	토티뉴스	9월 22일	국제면	중유명 굴소스서 나온 박쥐 사체...알고보니 ‘블랙컨슈머’의 짓?	인터넷신문
제2020-750호	e글로벌이코노믹	9월 23일	글로벌비즈면	중국, 굴 소스제품에서 박쥐 사체...제조업체 “블랙컨슈머 소행”	인터넷신문
제2020-751호	e머니투데이 (e money today)	9월 22일	국제경제면	‘간장 구더기 · 굴소스 박쥐’ 사진에 발칵...中 업체의 반격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0-752호	언론사명	김경민(족구뉴스)
대상보도	족구뉴스 2020년 9월 14일 연예면 「오인혜 시상식 노출?, 어마어마한 축구공 가슴?, 입은거 맞아?!, 근황, 심정지 이유?... '안타까워」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 (기사 제목)		
권고사항	언론은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제목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한 배우가 자택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고 보도하면서 그가 과거 영화제 개막식 참석 당시 입었던 의상과 관련하여 지나치게 선정적인 제목을 사용하였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의결번호	제2020-753호	언론사명	(주)헤럴드
대상보도	헤럴드POP 2020년 9월 16일 화제면 「이효리, 돈 문제로 결국..남편 이상순 공식입장」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 (기사 제목)		
권고사항	언론은 기사 본문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왜곡된 제목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한 가수가 SNS 상에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이 많이 와서 고민 끝에 SNS 계정을 삭제했고 이를 두고 그의 남편이 사이버 세상에서 벗어난 것을 축하했다고 보도하면서 마치 그의 금전 문제로 인해 배우자가 공식입장을 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왜곡된 제목을 사용하였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의결번호	제2020-754호	언론사명	(주)데일리안
대상보도	데일리안 2020년 9월 7일 「재난지원금, 국민 분열 도화선 될라...청와대 '이재명 파장' 촉각」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 (여론조사 보도)		

의결번호	제2020-754호	언론사명	(주)데일리안
권고사항	언론은 국민적 관심사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는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 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등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면서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표본오차율, 응답률 등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하지 않았다. 이는 독자들에게 해당 조사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의결번호	제2020-755호	언론사명	(주)경향신문사
대상보도	인터넷 경향신문 2020년 9월 15일 정치면 「민주당, 야당의 '독감 무료접종 확대' "검토하겠다"... '통신비 지금 반대' 때문?」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 (여론조사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국민적 관심사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는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 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등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정부의 통신비 전 국민 지급안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보도하면서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표본오차율, 응답률 등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하지 않았다. 이는 독자들에게 해당 조사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 제2020-755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9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756호	국민일보	9월 23일	종합면	없던 일 된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최재성이 밀어붙였다	중앙일간지
제2020-757호	인터넷 국민일보	9월 23일	시사면	없던 일 된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최재성이 밀어붙였다	인터넷신문



▶ 제2020-755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9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758호	아시아투데이 ASIATODAY	9월 21일	03면	통신비 vs 독감백신... 내일 결판	지역일간지
제2020-759호	아시아투데이 ASIATODAY닷컴	9월 20일	정치면	통신비 vs 독감 백신...4차 추경 22일 본회의 처리 막판 진통	인터넷신문
제2020-760호	노컷뉴스	9월 17일	정치면	속도전 4차 추경...통신비-독감 접종 '빅딜 협치' 될까	인터넷신문
제2020-761호	더팩트	9월 14일	정치면	민주당, '통신비 지원' 여론 악화에 우왕좌왕...박범계 "무료 접종? 절충 가능"	인터넷신문
제2020-762호	시사저널e	9월 14일	기업면	"통신비 2만원 정책 비용이면 코로나 위기 항공사 4년은 버텨"	인터넷신문
제2020-763호	인터넷 시민사회신문	9월 15일	정보통신 /과학면	"전국민 통신비 지급은 철회해야"	인터넷신문
제2020-764호	e머니투데이 (e money today)	9월 14일	정치면	주호영 "황희, 윤리위 제소... '통신비 2만원 철회가 작은 위로"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0-765호	언론사명	(주)참언론
대상보도	인터넷 시사N(시사인) 2020년 8월 20일 사회면 「진주의료원 진 자리에 다시 피어난 공공병원」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 (여론조사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국민적 관심사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는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조사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등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면서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조사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등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하지 않았다. 이는 독자들에게 해당 조사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의결번호	제2020-766호	언론사명	(주)경향신문사
대상 보도	인터넷 경향신문 2020년 8월 28일 토요일판면 「안익태 공과 평가 과정도 없이…매번 ‘진영 갈등’에만 머물러」 제하의 보도		
매체 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 (여론조사 보도)		
권고 사항	언론은 국민적 관심사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는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 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등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애국가 교체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면서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등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하지 않았다. 이는 독자들에게 해당 조사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의결번호	제2020-767호	언론사명	(주)뉴스1
대상 보도	뉴스1코리아 2020년 9월 25일 사회면 「사실상 구제 요청한 의대생…국민 반대 여론 누그러질까」 제하의 보도		
매체 구분	뉴스통신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 (여론조사 보도)		
권고 사항	언론은 국민적 관심사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는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 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등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의대생에게 국가고시 실기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추가로 주는 것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보도하면서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등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하지 않았다. 이는 독자들에게 해당 조사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 제2020-767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768호	전북일보인터넷신문	9월 9일	사회일반면	의대생 국시거부 철회 움직임...“집단행동 그만” 목소리 거세져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0-769호	언론사명	(주)광주일보사
대상보도	인터넷 광주일보 2020년 9월 29일 경제종합면 「[○○○요양병원] 호텔 같은 병원 ... 행복의 길 끝까지 동행합니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 (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p>위 기사는 특정 의료기관에 대한 홍보성 내용과 함께 의료기관의 이름, 의료인명, 위치 정보, 전경 사진 등을 상세하게 언급하고 바이라인을 삽입하였다.</p> <p>이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해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및 의료광고의 금지와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 제10호,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0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p>		

▶ 제2020-769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8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770호	광주일보	9월 29일	19면	호텔 같은 병원 ... 행복의 길 끝까지 동행합니다	지역일간지
제2020-771호	인터넷 충청타임즈	9월 9일	경제면	'○○○병원'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新도약	인터넷신문
제2020-772호	충청타임즈	9월 10일	04면	'○○○병원'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新도약	지역일간지
제2020-773호	안산인터넷뉴스	9월 25일	안산뉴스면	○○○ 의료재단 ○○병원 신관 개관식	인터넷신문
제2020-774호	경인매일	9월 28일	12면	○○○ 의료재단 '○○○병원 신관 개관식' 개최	지역일간지
제2020-775호	부산닷컴	9월 24일	라이프면	[한방소식] ○○한방병원 대구○○점 9월 28일 개원	인터넷신문
제2020-776호	메디컬투데이	9월 17일	의료면	○○○한방병원, 코스터 안심페이 적용	인터넷신문
제2020-777호	부산닷컴	8월 31일	라이프면	부산 통합면역암센터 ○○한방병원 확장 개원 2주년 맞아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0-778호	언론사명	(주)굿메이커스
대상보도	포스트쉐어(postshare) 2020년 10월 26일 뉴스 & 이슈면 「이재용 딸이 '삼성 스마트폰' 안 쓴다는 증거 (+사진 추가)」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사인의 초상 및 성명을 공개하여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한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딸의 초상 및 성명을 공개하였다. 이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볼 때, 비록 이재용 부회장이 공적 인물이고 해당 보도가 공적 관심 사안과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사인(私人)인 그 딸의 초상 및 성명을 공개한 것은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 제2020-778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5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779호	인사이트	10월 27일	사회면	이제 막 16살 된 이재용 딸 보고 여초 커뮤 회원들이 보인 반응	인터넷신문
제2020-780호	인터넷 충청리뷰	10월 26일	사회면	이재용 딸 이○○, 올해 나이는? 서예지 님은꼴+아이폰 사용 '화제'	인터넷신문
제2020-781호	족구뉴스	10월 26일	연예면	이재용 딸 이○○ 인스타, 비키니?, 금발미녀들과 아찔한 몸매 노출?..얼마나 예쁘길래?..'난리'	인터넷신문
제2020-782호	한국면세뉴스	10월 26일	핫뉴스면	이재용 딸 이○○ 누구? 아이폰 쓰던 2004년생	인터넷신문
제2020-783호	e-주간시흥	10월 26일	전체기사면	이재용 딸 이○○, 서예지 님은꼴 외모 '화제' 올해 나이는?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0-784호	언론사명	(주)조선일보사
대상보도	조선닷컴 2020년 10월 28일 연예면 「"남편이 입양딸들 잘 챙겨"..이아현, 3번째 이혼 후에도 씩씩」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의결번호	제2020-784호	언론사명	(주)조선일보사
권고사항	언론은 사인의 초상 및 성명을 공개하여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p>위 기사는 특정 배우가 세 번째 이혼을 했다고 보도하면서 입양된 미성년 자녀의 초상 및 성명을 게재하였다.</p> <p>이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볼 때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p> <p>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p>		

▶ 제2020-784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1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785호	오에스이엔(OSEN)	10월 28일	연예면	“남편이 입양딸들 잘 챙겨”..이아현, 3번째 이혼 후에도 씩씩[종합]	인터넷신문
제2020-786호	조이뉴스24	10월 27일	연예면	‘세번째 이혼’ 이아현, ‘동지탈출3’ 출연 재조명... “가족 제일 좋은 피난처” 고백	인터넷신문
제2020-787호	enews24	10월 27일	연예일반면	‘3번째 이혼’ 이아현, 2년전 행복했던 가족 방송..대중들도 마음이 아리다[종합]	인터넷신문
제2020-788호	sportschosun.com	10월 27일	연예면	[종합]이아현, 세번째 남편과 8년만 이혼...2년전 단란했던 가족방송 ‘재조명’	인터넷신문
제2020-789호	스포티비뉴스	10월 27일	TV연예면	“가슴으로 낳은 딸들”...이아현, 세 번 결혼 실패에도 쏟아지는 응원 메시지[종합]	인터넷신문
제2020-790호	뷰어스	10월 27일	핫이슈면	이아현, 인스타그램 딸 생일 축하에 남편 모습 없었다	인터넷신문
제2020-791호	인사이트	10월 27일	비즈니스면	이아현, 세 번째 남편과 8년 만에 파경... “올해 이혼”	인터넷신문
제2020-792호	인터넷 데일리한국	10월 28일	연예면	이아현, 세 번째 이혼 전 ‘동지탈출’ 재조명... “자상했던 남편”	인터넷신문
제2020-793호	인터넷 서울경제	10월 27일	TV방송면	이아현, 세 번째 남편과 결혼 8년 만에 이혼	인터넷신문
제2020-794호	인터넷 천지일보	10월 27일	연예면	이아현 공식입장, 딸 생일에... 남편은 없었다	인터넷신문
제2020-795호	인터넷 한국정경신문	10월 27일	문화면	3번째 이혼 맞은 이아현, 인스타그램 딸 생일 축하..남편 모습 없었다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0-796호	언론사명	추광규(인터넷뉴스신문고)
대상보도	인터넷뉴스신문고 2020년 10월 23일 정치면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김광진 저격하다 도리어 ‘무식’ 지적 받아」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사인의 초상을 공개하여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p>위 기사는 조수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자신의 SNS에 김광진 청와대 청년비서관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마스크를 끼지 않은 사진을 올리면서 이들을 비판하는 내용을 게시했으나 해당 사진이 2019년도 상반기에 촬영된 것임이 밝혀져 오히려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위 기사는 문제가 된 사진 속 김광진 비서관의 지인 초상을 그대로 게재하였다. 이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볼 때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p> <p>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p>		

▶ 제2020-796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797호	뉴스프리존	10월 23일	정치면	‘매우 거친 입’ 국힘 조수진, 김광진·김남국에 시비 걸다 ‘대망산’ 당한 이유!	인터넷신문
제2020-798호	플러스코리아타임즈	10월 23일	종합뉴스면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김광진 저격하다 도리어 ‘무식’ 지적 받아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0-799호	언론사명	김도성(저스트저널)
대상보도	저스트저널 2020년 10월 10일 뉴스면 「나영이 ‘조두순 60년형’ 요구, 판사 ‘심신미약’ 12년 선고...검사 ‘아동성폭력 특별법’ 난 몰라」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 (성폭력피해자 보호), 제12조 (범죄 묘사)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보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이상으로 언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p>위 기사는 조두순 사건을 보도하면서 과거 가해자의 포악하고 잔인한 범행수법을 상세히 묘사하였고 성폭력피해자의 피해상태 등을 자세히 보도하였다.</p> <p>이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미흡한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p> <p>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p>		



의결번호	제2020-800호	언론사명	뉴데일리(주)
대상보도	뉴데일리 2020년 10월 7일 사회면 「도대체 ○○○대학에 무슨 일이?...○○직 직원, 교내서 또 극단적 선택」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 (자살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최근 2년 내 특정 대학의 직원 2명이 자살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자살자의 소속, 근무부서, 직무, 정신과 치료 이력 등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은 보도는 자살자 및 가족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의결번호	제2020-801호	언론사명	(주)뉴스1
대상보도	뉴스1코리아 2020년 10월 27일 지방면 「경찰 “백신접종 고교생 극단적 선택”...유족 “억울한 죽음” 청원」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뉴스통신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 (자살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에 사용된 약명 또는 치사량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경찰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는 자의 죽음을 보도하면서 부검결과에서 검출된 약명과 치사량을 언급하였다. 이는 자살 수단에 대한 구체적 보도로 모방 자살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1항제3호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 제2020-801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30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802호	MBN	10월 28일	MBN 프레스룸 프로그램면	[MBN프레스룸] 음독이나, 백신이나, 소년의 사망 원인 논란	방송
제2020-803호	OBS경인TV	10월 29일	-	인천 고교생 ‘독극물 구매’...온라인에 버젓이	방송
제2020-804호	YTN	10월 27일	사회면	[나이트포커스]한색 입자 백신 안전하지만 ‘전량 폐기’...이유는?	방송
제2020-805호	UPI뉴스통신	10월 28일	사회면	독극물인데...“○○○ 파는 곳 80군데 넘어”	뉴스통신
제2020-806호	노컷뉴스	10월 28일	사회일반면	“인천 고교생 사망...독감 백신 음모론은 틀렸다”	인터넷신문

▶ 제2020-801호와 법의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30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807호	데일리스포츠월드	10월 27일	이슈면	독감 접종 후 사망 인천 10대, 부검서 '○○○' 검출...유족 "자살 억울" 청원	인터넷신문
제2020-808호	디스패치뉴스	10월 27일	ALL면	독감백신 맞은 17세 고교생, 사망 원인 ○○○ 뭐길래?	인터넷신문
제2020-809호	매경닷컴	10월 27일	사회면	[종합] '백신 사망' 고교생, 극단 선택?...유족 "그럴 리 없다" 靑 청원	인터넷신문
제2020-810호	머니데일리	10월 27일	사회/문화면	독감접종 10대, 사망 이유가 '○○○ 검출' 때문?...유족 측 "억울함 풀어달라"	인터넷신문
제2020-811호	문화저널21	10월 27일	사회면	백신사망 17세 고교생...위에서 독극물 검출	인터넷신문
제2020-812호	부산닷컴	11월 2일	-	"독감 주사 맞고 사망한 어머니, 원인 밝혀달라" 유족 국민청원	인터넷신문
제2020-813호	아시아타임즈	10월 28일	정치사회면	경찰 "백신 접종 뒤 숨진 고교생 독성물질 구입"...형 "극단선택으로 몰아"	인터넷신문
제2020-814호	아이뉴스24	10월 27일	사건사고면	독감백신 맞고 숨진 고교생 '○○○' 과다검출...유족 "극단 선택 아냐"	인터넷신문
제2020-815호	이투데이	10월 27일	사회면	'독감백신 맞은 뒤 돌연 사망한 고교생' 유족 "진실 규명 해달라" 국민 청원	인터넷신문
제2020-816호	인천in	10월 27일	사회면	백신 접종 후 숨진 고교생 부검서 독극물... '극단적 선택' 놓고 공방	인터넷신문
제2020-817호	인터넷 국민일보	10월 28일	전체기사면	○○○ 판매처 80곳 이상, 청소년도 쉽게 구매 가능했다	인터넷신문
제2020-818호	인터넷 매일신문	10월 27일	사회면	독감접종 후 사망 17세, '○○○' 과다검출... "자살 아냐"	인터넷신문
제2020-819호	인터넷 서울신문	10월 27일	사회면	질병청 "사망 10대, 부검 결과 독감백신과 관계 없어"	인터넷신문
제2020-820호	인터넷 세계일보	10월 27일	사회면	경찰은 '극단 선택' 쪽으로... 독감 접종 후 사망 10대 시신서 ○○○ 차사랑 검출	인터넷신문
제2020-821호	인터넷 이데일리	10월 28일	사회일반면	'백신 사망' 17세 의문... "○○○, 청소년 사이 알려져"	인터넷신문
제2020-822호	인터넷 중앙일보	10월 27일	사회면	백신사망 고교생에 나온 ○○○, 中유치원생 죽인 그 독극물	인터넷신문
제2020-823호	인터넷 크리스천투데이	10월 27일	일반면	"백신 접종 후 사망, ○○○ 중독 믿을 수 없어"	인터넷신문
제2020-824호	인터넷 한국정경신문	10월 27일	사회면	독감백신 사망 VS ○○○ ○○○ 검출 설전 "차사랑 독극물 쉽게 구할 수 있냐"	인터넷신문
제2020-825호	인터넷 한스경제	10월 27일	사회면	독감접종 10대, 사망 이유가 '○○○ 검출' 때문?...유족 측 "억울함 풀어달라"	인터넷신문



▶ 제2020-801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30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826호	인터넷 헤럴드경제	10월 27일	사회일반면	백신 접종 뒤 숨진 고교생 형 “독극물 자살로 모니 억울”	인터넷신문
제2020-827호	조선닷컴	10월 27일	사회면	숨진 고교생 형 “동생사망과 백신 무관? 억울하다” 청원	인터넷신문
제2020-828호	조이뉴스24	10월 28일	라이프&면	‘독감백신 사망’ 고교생, ○○○ 검출...형 “극단적 선택 아니다”	인터넷신문
제2020-829호	토티타뉴스	10월 28일	이슈면	[종합]○○○, 누구나 구입 가능? “17세 소년 사망, 독감백신 관련 無에 무계”...경찰, 직접 구매 확인 ‘김현정 뉴스쇼’	인터넷신문
제2020-830호	헬스타파	10월 28일	이슈면	독감백신 17세 A군 부검서 ○○○ 검출...유가족 “억울하다”	인터넷신문
제2020-831호	e머니에스 (e money S)	10월 28일	사회면	경찰 “백신접종 후 사망 고교생, ○○○ 직접 구매 확인”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0-832호	언론사명	(주)헤럴드
대상보도	헤럴드POP 2020년 9월 28일 화제면 「김구라, 재혼하더니 또 이혼 언급..현재 아내 어찌라고」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 (기사 제목)		
권고사항	언론은 기사 본문을 왜곡한 제목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한 방송인이 마치 현재 아내와 이혼을 하려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제목을 사용하였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의결번호	제2020-833호	언론사명	(주)헤럴드
대상보도	헤럴드POP 2020년 10월 26일 화제면 「박명수, 결혼 생활 12년만 이혼 언급..충격」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 (기사 제목)		
권고사항	언론은 기사 본문을 왜곡한 제목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한 방송인이 마치 이혼하려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제목을 사용하였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의결번호	제2020-834호	언론사명	(주)씨비에스아이
대상보도	노컷뉴스 2020년 10월 2일 정치면 「“개천절집회 자제하라”던 野…드라이브스루는 괜찮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 (여론조사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국민적 관심사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는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 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등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드라이브 스루'를 이용한 집회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면서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등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하지 않았다. 이는 독자들에게 해당 조사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 및 「언론중재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의결번호	제2020-835호	언론사명	(주)뉴스1
대상보도	뉴스1코리아 2020년 10월 23일 정치면 「라임·옵티머스 일파만파…야권 특검법 공조 배수의진 먹힐까」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뉴스통신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 (여론조사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국민적 관심사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는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 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등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면서 조사 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등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하지 않았다. 이는 독자들에게 해당 조사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 및 「언론중재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 제2020-835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836호	위클리서울	10월 23일	정치면	특검법 VS 공수처, 서늘한 여의도의 가을	인터넷신문
제2020-837호	e머니에스(e money S)	10월 23일	-	라임·옵티머스 일파만파…야권 특검법 공조 배수의진 먹힐까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0-838호	언론사명	(주)의학신문사
대상보도	인터넷 의학신문 2020년 10월 27일 의원·병원면 「“의사국시 문제 해결, 의료대란 막아야 한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 (여론조사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국민적 관심사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는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 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등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의사시험 재응시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면서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등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하지 않았다. 이는 독자들에게 해당 조사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 제2020-838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4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839호	디지털의사신문	10월 27일	의료뉴스면	“의사시험 재응시 찬성 여론은 응급·중증 환자들의 목소리”	인터넷신문
제2020-840호	사이언스엠디	10월 27일	의료면	의사국시 미응시, 의료대란 막아야한다	인터넷신문
제2020-841호	격주간 의료정보	10월 27일	건강정보·칼럼면	대한신경과학회, 의사 국가고시 미응시 해결 촉구 성명서	인터넷신문
제2020-842호	인터넷 헤럴드경제	10월 15일	식품면	의사 국가고시 필기시험 접수한 의대생들... ‘재응시 기회달라’ 의미?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0-843호	언론사명	(주)매일신문사
대상보도	인터넷 매일신문 2020년 10월 7일 사회면 「[○○○한방병원] 우리 몸은 하나의 유기체... ‘○○○한방병원」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 (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의결번호	제2020-843호	언론사명	(주)매일신문사
이유	<p>위 기사는 특정 의료기관에 대한 홍보성 내용과 함께 의료기관의 이름, 의료인명, 위치 정보 등을 상세하게 언급하고 바이라인을 삽입하였다.</p> <p>이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해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및 의료광고의 금지와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0호,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0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p>		

▶ 제2020-843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3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844호	매일신문	10월 7일	보건/의료면	면역체계 바탕한 치료 필라테스·고주파 활용	지역일간지
제2020-845호	NSP통신	10월 7일	사회/단체면	○○한방병원, ○○ ○○거리에 72병상 규모 개원	뉴스통신
제2020-846호	인터넷 충남신문	10월 15일	탐방·인터뷰면	○○ 다시 태어나다!	인터넷신문
제2020-847호	충남일보	10월 15일	14면	“건강한 본래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지역일간지
제2020-848호	인터넷 충남일보	10월 22일	종합뉴스면	[인터뷰] ○○한방병원 ○○○ 병원장, “건강한 본래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인터넷신문
제2020-849호	인터넷 환경미디어	10월 26일	보건/안전면	○○○병원, 11월 개원·관절클리닉 통해 평택인공관절 솔루션 제안	인터넷신문
제2020-850호	인터넷 주간시사매거진	9월 28일	건강면	“건강한 팔,다리를 위하여!”...관절질환이란?	인터넷신문
제2020-851호	헤모필리아 라이프	10월 12일	경제일반면	○○○병원, 10월 개원, 관절·척추 치료 초점	인터넷신문
제2020-852호	메디컬투데이	9월 28일	의료면	○○한방병원, 척추관절질환 ‘통합협진’ 실시… 첨단 장비로 환자 치료 시작	인터넷신문
제2020-853호	세계비즈	9월 28일	의약면	○○한방병원 개원” ‘한·양방협진’ 암통합면역치료 진행할 것”	인터넷신문
제2020-854호	인터넷 매일신문	10월 21일	사회면	[○○○병원] 손, 발, 관절, 척추 등 신속한 수술 특성화 병원	인터넷신문
제2020-855호	매일신문	10월 21일	보건/의료면	손·발·관절 치료 특화 대기 최소화 신속 수술	지역일간지
제2020-856호	부산닷컴	10월 8일	라이프면	[한방소식] ○○한방병원 울산점 10월 8일 개원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0-857호	언론사명	김경민(족구뉴스)
대상보도	족구뉴스 2020년 11월 2일 연예면 「박지선 사망, 이유?. 오빠 박○○?, 결혼? 아버지..진실이 뭐길래? ‘안타까워」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사인의 성명을 공개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p>위 기사는 유명 개그우먼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그녀의 오빠 성명을 공개하였다. 이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볼 때, 비록 자살한 개그우먼이 유명인이라 하더라도 사인(私人)인 그 오빠의 성명을 공개한 것은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p> <p>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의결번호	제2020-858호	언론사명	(주)세계일보
대상보도	인터넷 세계일보 2020년 11월 26일 연예면 「“난 미국, 아들은 엄마와 한국” 유키스 출신 일라이, 11세 연상 지연수와 결혼 6년 만에 이혼」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사인의 초상을 공개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p>위 기사는 특정 방송인 부부가 이혼한다고 보도하면서 미성년 자녀의 초상을 게재하였다. 이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볼 때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p> <p>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 제2020-858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1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859호	뉴스엔	11월 26일	-	“연애까지 10년” 일라이·지연수 이혼·7개월전 6주년 자축 ‘안타까워’(종합)	인터넷신문
제2020-860호	디지털조선일보	11월 26일	연예면	‘11살 차 연상연하 부부’ 일라이·지연수, 결혼 6년 만에 파경...“현재 따로 살고 있다”	인터넷신문

▶ 제2020-858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1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861호	매일안전신문	11월 27일	연예면	일라이X지연수, 타투까지 새기더니 결국... '안타까운 11살 연상연하 부부'	인터넷신문
제2020-862호	스타투데이	11월 26일	주요 뉴스면	일라이·지연수 결혼 6년만 이혼 발표, 누리꾼 반응 보니...	인터넷신문
제2020-863호	오에스이엔 (OSEN)	11월 27일	연예면	일라이·지연수, 5개월전 결혼 6주년 축하했는데... 이혼 발표→SNS 사진 삭제[종합]	인터넷신문
제2020-864호	인터넷 서울신문	11월 26일	스타 요즘면	일라이, '11살 연상' 지연수와 이혼 "아들은 엄마와 한국에 거주"	인터넷신문
제2020-865호	인터넷 스포츠경향	11월 26일	연예면	[전문] 일라이·지연수, 이혼	인터넷신문
제2020-866호	인터넷 스포츠서울	11월 26일	연예면	'유키스' 일라이와 파경, 지연수는 누구?	인터넷신문
제2020-867호	인터넷 영남일보	11월 26일	연예면	지연수와 이혼 알린 일라이 "난 미국, 아이와 엄마는 한국에"	인터넷신문
제2020-868호	조선닷컴	11월 27일	연예면	일라이·지연수, 5개월전 결혼 6주년 축하했는데... 이혼 발표→SNS 사진 삭제	인터넷신문
제2020-869호	TV Daily (티브이데일리)	11월 27일	방송면	일라이·지연수, 6년 만에 파경+심경 고백...이틀째 관심ing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0-870호	언론사명	(주)에이지미디어
대상보도	포쓰저널 2020년 11월 24일 사회면 「윤석열 장모 최○○ '요양병원' 기소...윤 총장-김건희는 불기소」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 (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명과 나이를 공개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실명과 나이를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이는 형사사건의 피의자 등에 대한 익명보도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제2020-870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4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871호	뉴스프리존	11월 24일	사회면	요양급여 '나랏돈' 23억 챙긴 윤석열 장모 기소	인터넷신문
제2020-872호	미디어인뉴스	11월 24일	공정사회면	윤석열 장모 기소에 조국 "감경·관계자 감찰·수사 필요" ...언론에 대한 경계도	인터넷신문
제2020-873호	국민뉴스	11월 25일	뉴스종합면	요양급여 '나랏돈' 23억 통크게 챙긴 윤석열 장모 기소... 부인 불법합참금 수수 의혹, 000모터스 관련 주가 조작 사건 계속 수사중	인터넷신문
제2020-874호	인터넷 굿모닝충청	11월 20일	정치면	황희석 "윤석열 부인 회사 후원기업들... '뒷거래' 없었을까?"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0-875호	언론사명	(주)소셜뉴스
대상보도	위키트리 2020년 11월 9일 엔터면 「'30살 남자' 돈 뜯어낸 걸그룹 멤버, 카톡 대화까지 뽐뽐했다 (제보+증거)」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 (범죄사건 보도 등),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고소고발 사건의 구체적 내용 및 사적 통신내용 등을 공개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특정 가수의 성명 및 초상을 공개하여 그가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실을 보도하였다.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확정되지 않은 혐의를 보도한 것은 독자들로 하여금 피고소인이 실제 관련 범죄를 행한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사기 피해를 주장하는 남성과 특정 가수 간 사적대화가 담긴 통신내용 캡처본을 공개하였다. 이는 「헌법」 제18조에 근거하여 볼 때, 당사자 일방의 통신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 및 제1조제2항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의결번호	제2020-876호	언론사명	(주)뉴스
대상보도	뉴스시스 2020년 11월 11일 지방면 「유흥주점서 마약 매매·투약 일삼은 베트남인 8명 검찰 송치」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뉴스통신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5조 (마약 및 약물보도)		

의결번호	제2020-876호	언론사명	(주)뉴스스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마약의 명칭, 구입가격, 사용방법, 환각적 효능 등을 상세히 보도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마약의 명칭, 구입가격, 사용방법, 환각적 효능 등을 상세히 보도하였다. 이는 독자에게 마약 사용의 동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5조제1항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제2020-876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9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877호	아시아일보	11월 12일	13면	목포해경, 마약류 투약 매매 베트남 선원 등 구속	지역일간지
제2020-878호	호남일보	11월 12일	11면	유형주점서 마약 매매·투약 일삼은 베트남인 8명 검찰 송치	지역일간지
제2020-879호	The대한일보	11월 12일	04면	마약 매매·투약 베트남인 8명 검찰 송치	지역일간지
제2020-880호	서울뉴스통신	11월 12일	전국면	목포해경, 마약류 투약·매매 베트남 선원 등 구속	뉴스통신
제2020-881호	열린뉴스통신	11월 11일	호남면	목포해경, 신종 마약류 투약... 베트남 선원 구속	뉴스통신
제2020-882호	뉴스프리존	11월 11일	호남면	목포해경, 마약류 투약·매매 베트남 선원 등 3명 구속	인터넷신문
제2020-883호	로컬투데이 (LOCAL TODAY)	11월 11일	사회면	목포해경, 마약류 투약 및 판매한 베트남 선원 3명 구속	인터넷신문
제2020-884호	빅데이터뉴스 (TheBigData)	11월 11일	사회면	목포해경, 마약류 투약·매매 베트남 선원 등 구속	인터넷신문
제2020-885호	아시아경제닷컴	11월 11일	사회면	목포해경, 마약류 투약·매매 베트남 선원 구속	인터넷신문
제2020-886호	인터넷 남도미디어	11월 11일	사회면	유형주점서 마약 매매·투약 일삼은 베트남인 8명 검찰 송치	인터넷신문
제2020-887호	인터넷 매일일보	11월 11일	전국면	목포해경, 마약류 투약·매매 베트남 선원 등 구속	인터넷신문
제2020-888호	인터넷 목포시민신문	11월 12일	사회면	목포서 외국인 '마약 노래홀' 일명타진...20대 베트남인 팔고 집단투약 알선	인터넷신문
제2020-889호	인터넷 스포츠서울	11월 11일	최신뉴스면	목포해경, 마약류 투약·매매 베트남 선원 구속	인터넷신문
제2020-890호	인터넷 시민일보	11월 12일	사회면	목포해경, 마약류 투약·매매 베트남 선원 등 구속	인터넷신문
제2020-891호	인터넷 아시아일보	11월 11일	호남면	목포해경, 마약류 투약·매매 베트남 선원 등 구속	인터넷신문
제2020-892호	인터넷 에너지경제	11월 11일	정치사회면	목포해경, 마약류 '집단 투약·매매'한 베트남 선원 8명 체포	인터넷신문



▶ 제2020-876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9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893호	인터넷 이뉴스투데이	11월 11일	전국면	목포 유흥업소에서 대마초 마약 집단 투약한 베트남인 등 3명 구속	인터넷신문
제2020-894호	인터넷 일간투데이	11월 12일	호남면	목포해경, 마약류 투약·매매 베트남 선원 등 구속	인터넷신문
제2020-895호	인터넷 전남중앙신문	11월 16일	사회종합면	목포해경, 마약류 투약·매매 베트남 선원 등 구속	인터넷신문
제2020-896호	인터넷 천지일보	11월 12일	전국면	목포해경, 마약류 투약·매매 베트남 선원 등 구속	인터넷신문
제2020-897호	인터넷 호남매일	11월 12일	사회면	유흥주점서 마약 매매·투약 일삼은 베트남인 8명 검찰 송치	인터넷신문
제2020-898호	인터넷 호남일보	11월 11일	사회면	유흥주점서 마약 매매·투약 일삼은 베트남인 8명 검찰 송치	인터넷신문
제2020-899호	전남뉴스	11월 11일	사회면	목포해경, 마약류 투약·매매 베트남 선원 등 구속	인터넷신문
제2020-900호	전남인터넷신문	11월 11일	목포면	목포해경, 마약류 투약·매매 베트남 선원 등 구속	인터넷신문
제2020-901호	쿠쿠뉴스	11월 12일	전국면	목포해경, 신종마약 투약·매매 일당 무더기 검거	인터넷신문
제2020-902호	daily sisamagazine	11월 12일	전국면	목포해경, 마약류 투약·매매 베트남 선원 등 구속	인터넷신문
제2020-903호	GBS방송	11월 11일	사회면	목포해경, 마약류 투약 매매 베트남 선원 등 구속	인터넷신문
제2020-904호	내외뉴스통신	11월 11일	전국면	목포해경, 마약류 투약·매매 베트남 선원 등 구속	뉴스통신
제2020-905호	뉴스인전남	11월 11일	사회면	목포해경, 마약류 매매 베트남 선원 등 8명 검거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0-906호	언론사명	(주)한경닷컴
대상보도	인터넷 한국경제 2020년 11월 10일 사회면 「같이 걷던 남녀 느닷없이 주먹질·발길질...부산 지하상가 영상 확산 [영상]」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6조 (폭력 묘사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폭력적인 영상이 게시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부산의 한 지하상가에서 남녀가 서로를 폭행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해당 영상을 그대로 게시하였다. 이는 가학적인 폭력 장면을 필요 이상으로 드러나도록 한 것으로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6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의결번호	제2020-907호	언론사명	(주)소셜뉴스
대상보도	위키트리 2020년 11월 11일 경제면 「야구선수 출신이 길거리서 한 남자를 장애인으로 만드는 장면 (보배드림 영상)」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6조 (폭력 묘사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폭력적인 영상이 게시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한 남성이 함께 술을 마시던 야구선수 출신 남성으로부터 폭행당해 장애인이 된 사건을 보도하면서 폭행 모습이 담긴 영상을 그대로 게시하였다. 이는 가학적인 폭력 장면을 필요 이상으로 드러나도록 한 것으로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6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제2020-907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3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908호	동아닷컴	11월 18일	사회면	[영상] "전직 야구선수에게 폭행 당해 남편, 지적장애인 돼" 청원에 '부글'	인터넷신문
제2020-909호	인사이트	11월 12일	핫이슈면	"남편이 전직 야구 선수에게 한대 맞고 쓰러져 IQ 55 '지적장애인' 됐습니다"	인터넷신문
제2020-910호	인터넷 서울신문	11월 16일	사회면	남편이 장애인됐는데...전직 야구선수 '징역 1년' [이슈픽]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0-911호	언론사명	(주)에프이타임스
대상보도	F.E TIMES(F.E 타임스) 2020년 11월 4일 FAM ISSUE면 「1자로 펼쳐진 고양이 창자... '김해 나래공원 길고양이 학대 사건' 엄중수사 촉구」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 (충격·혐오감)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는 사진이 게재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한 공원에서 고양이 사체와 함께 창자가 발견됐다고 보도하면서 사체와 창자 사진을 게재하고 발견 당시 모습을 묘사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이들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제2020-911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912호	비즈니스	11월 3일	최신뉴스면	길고양이 사체 옆에 분홍빛 끈 자세히 보니 고양이 창자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0-913호	언론사명	(주)에프이타임스
대상보도	F.E TIMES(F.E 타임스) 2020년 11월 13일 FAM ISSUE면 「부천서 새끼고양이 토막난 채 발견…동물권단체 케어 “살해범을 찾습니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 (충격·혐오감)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는 사진이 게재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고양이 사체 훼손 사건을 보도하면서 해당 사체 사진을 게재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이들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의결번호	제2020-914호	언론사명	(주)인사이트컴퍼니
대상보도	인사이트 2020년 11월 7일 동물면 「양털 농장 주인이 어린 양의 ‘고환’을 마취없이 잘라내는 이유」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 (충격·혐오감)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는 영상이 게시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양질의 양모를 얻고자 양의 항문 주위 부분을 도려내는 시술이 마취 없이 잔인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해당 시술 영상을 그대로 게시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이들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의결번호	제2020-915호	언론사명	(주)인사이트컴퍼니
대상보도	인사이트 2020년 11월 15일 사건사고면 「“브레이크 대신 엑셀을..” 인도 돌진한 대구 제네시스 ‘할머니 운전자’ (영상)」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 (충격·혐오감)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독자가 충격과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영상이 게시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대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건을 보도하면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3명의 보행자가 부상을 입는 모습의 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이들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제2020-915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916호	위키트리	11월 16일	엔터면	“76세 할머니 운전자가 사람들...” 현재 논란 중인 블랙박스 영상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0-917호	언론사명	(주)인사이트컴퍼니
대상보도	인사이트 2020년 11월 9일 국제면 「“마당에서 자다가 배 아파서 갠 여성의 배 속에서 뱀이 나왔습니다” (영상)」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 (충격·혐오감)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독자가 충격과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영상이 게시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러시아에 사는 한 여성의 몸에서 뱀이 나왔다고 보도하면서 여성의 입을 통해 뱀을 꺼내는 영상을 그대로 게시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이들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의결번호	제2020-918호	언론사명	줌미디어(주)
대상보도	뉴시안 2020년 10월 19일 사회면 「외국인 건보료 안내고 '먹튀'...최근 5년간 69억원」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 (기사 제목)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기사 본문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제목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위 기사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부정수급자가 국외 체류자임에도 외국인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제목을 사용하였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의결번호	제2020-919호	언론사명	이데일리(주)
대상보도	인터넷 이데일리 2020년 11월 1일 정당면 「멈출 생각 없는 추미애, “불편한 진실 직시할 때까지”」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 (여론조사 보도)		
권고사항	대상보도에 여론조사의 조사위탁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등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위 기사는 교체해야 할 국무위원회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면서 조사위탁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등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하지 않았다. 이는 독자들에게 해당 조사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의결번호	제2020-920호	언론사명	(주)뉴스1
대상보도	뉴스1코리아 2020년 11월 28일 정치면 「野 ‘법치문란 국조’ 카드로 여권 정조준...정국 주도권 공략」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뉴스통신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 (여론조사 보도)		

의결번호	제2020-920호	언론사명	(주)뉴스1
권고사항	대상보도에 여론조사의 조사외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등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면서 조사외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등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하지 않았다. 이는 독자들에게 해당 조사결과에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제2020-920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921호	매일신문	11월 27일	01면	'K-방역' 흔들려도 당정은 탄침만	지역일간지
제2020-922호	인터넷 매일신문	11월 26일	정치일반면	'K-방역' 흔들려도... '윤석열 찍어내기' 올인하는 文정부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0-923호	언론사명	대경일보(주)
대상 보도	인터넷 대경일보 2020년 11월 19일 기획특집면 「든든한 지역 건강지킴이'○○○병원」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 (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기사와 광고를 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이 기재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특정 의료기관에 대한 홍보성 내용과 함께 의료기관의 이름, 의료인명, 위치 정보, 전경 사진 등을 상세하게 언급하고 바이라인을 삽입하였다. 이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해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의료광고의 금지와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0호,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0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제2020-923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2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0-924호	대경일보	11월 20일	11면	든든한 지역 건강지킴이'○○○병원'	지역일간지
제2020-925호	경북탐뉴스	11월 27일	구미면	【탐방】 든든한 지역 건강지킴이 '○○○병원'	인터넷신문
제2020-926호	디트news24	11월 26일	의료계면	○○○병원, 증축 확장...정형외과 단일과 최대 규모	인터넷신문
제2020-927호	대전투데이	11월 27일	07면	○○○병원, 28일 '증축 확장 기념식' 개최	지역일간지
제2020-928호	인터넷 충남일보	11월 26일	사회면	○○○병원, 28일 '증축 확장 기념식' 개최	인터넷신문
제2020-929호	인터넷 영남일보	11월 17일	건강면	○○○병원, 척추·골격 국내최고 수준 '전국구 명성'	인터넷신문
제2020-930호	영남일보	11월 17일	17면	○○○병원, 척추·골격 국내최고 수준 '전국구 명성'	지역일간지
제2020-931호	세계비즈	11월 5일	의약면	○○○정형외과 오픈... "일시적 치료 NO, 근본 원인 개선에 중점"	인터넷신문
제2020-932호	메디컬투데이	11월 5일	의료면	○○○정형외과 개원... "최신 장비 도입·맞춤형 치료 제공"	인터넷신문
제2020-933호	메디컬투데이	11월 12일	의료면	○○○병원 개원... "관절·척추 질환 비수술 재활 중점"	인터넷신문
제2020-934호	헬스조선	11월 12일	헬스케어면	○○○병원 개원... "관절·척추 질환 비수술 재활 중점"	인터넷신문
제2020-935호	인터넷 국제신문	11월 16일	뉴스면	○○○병원, 관절·척추센터 전문의료진 포진... 환자 개인별 맞춤 서비스 각광	인터넷신문

언론중재위원회 서울 및 지역사무소 안내

서울

- * 주소 : (04520)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 * 대표전화 : 02) 397-3114
- * 상담전화 : 02) 397-3000, 3010, 3100, 3110
- * 홈페이지 : www.pac.or.kr
- * 블로그 : blog.naver.com/pac3083
- * 페이스북 : www.facebook.com/pacnews

지역

부산

(48223)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739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빌딩 6층
☎ 051) 759-7083-4 / FAX 051) 759-7093

대구

(41256)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89
대구무역회관 1402호
☎ 053) 763-0020~1 / FAX 053) 763-0242

광주

(6194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10
우체국보험회관 5층
☎ 062) 676-0360~1 / FAX 062) 676-0362

대전

(34125)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61
대전 MBC 8층
☎ 042) 525-0778-9 / FAX 042) 525-0768

경기

(16488)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경기문화재단 8층
☎ 031) 211-9027, 9022 / FAX 031) 212-0223

강원

(2427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6 무림빌딩 8층
☎ 033) 255-2878-9 / FAX 033) 255-2872

충북

(28625)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4
엔젤번호사빌딩 404호
☎ 043) 286-8081, 8083 / FAX 043) 286-8084

전북

(5496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빌딩 405호
☎ 063) 288-0010, 0981 / FAX 063) 288-0980

경남

(51457)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95번길 5 보고빌딩 601호
☎ 055) 263-1780, 1787 / FAX 055) 263-1769

제주

(6322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01
다모양빌딩 3층
☎ 064) 722-3328, 3352 / FAX 064) 726-3201

2020 시정권고 사례집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제작 2021년 4월 30일

발행 2021년 4월 30일

편저 언론중재위원회 심의실 심의1팀

발행기관 언론중재위원회

제작 (주)계문사 02)725-5216

- 이 책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이 책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국민과 언론의 귀와 눈이 되는
언론중재위원회